

질적특성을 고려한 건축 · 도시공간정책의 방향설정을 위한 연구
Study on Establishment of Directions
to Architectural and Urban Spatial Policy in Consideration of Qualitative Features

김상호 Kim, Sang Ho
김진욱 Kim, Jin Wook
김영현 Kim, Young Hyun
이민우 Lee, Min Woo

(a u r i

질적특성을 고려한 건축·도시공간정책의 방향설정을 위한 연구

Study on Establishment of Directions

to Architectural and Urban Spatial Policy in Consideration of Qualitative Features

지은이: 김상호, 김진욱, 김영현, 이민우

펴낸이: 은영태

펴낸곳: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출판등록: 제385-2008-0005호, 인쇄: 2009년 2월 26일, 발행: 2008년 12월 31일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 아크로타워 B동 301호

전화: 031-478-9600, 팩스: 031-478-9609

<http://www.auri.re.kr>

가격: 8,000원, ISBN: 978-89-93216-18-9, 978-89-93216-17-2(세트)

발간물번호: AURI-기본-2008-7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진

- ▮ 연구책임 김상호 · 연구위원

- ▮ 연구진 김진욱 · 부연구위원
 김영현 · 연구원
 이민우 · 연구원

- ▮ 연구심의위원 안건혁 · 서울대학교 교수
 박철수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연구요약

서론

2008년 6월에 발효된 건축기본법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기존의 공급중심의 개발정책에서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와 함께 고도 경제성장을 발판으로 성숙한 사회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중심에서 공공중심으로의 가치관 전환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공공생활환경의 질적 충족이 건축·도시분야의 시급한 정책과제로 대두되었다. 나아가 문화수준과 디자인경쟁력이 새로운 국가 경쟁력으로 인식되는 시대를 맞이하여 건축활동에 대한 기본철학도 일정수준의 품질확보에서 한걸음 나아가 품격을 추구하는 시대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전환기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 새로운 제도와 법령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도를 재편하는 노력을 경주해야하고,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공간의 창출과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문화적, 기술적 수준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건축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적인 건축정책의 방향타 역할을 할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실제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시에 활용할 수 있는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지침(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전략계획으로서의 건축정책기본계획

건축·도시분야는 관련주체가 다양하고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한 반면에 정책실현을 통한 혁신의 효과를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건축정책은 부처간 예산이 분리되고, 칸막이식 예산집행으로 통합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시설간 연계 등 시너지효과가 미흡하였다. 이로 인해 동일 또는 인접한 부지내에서 여러 관련주체들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설간 연계가 부족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부처별로 추진하는 지자체 지원사업 중에서도 그 성격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지자체별 지원의 편중과 중복지원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축정책기본계획은 향후 5년(2009~2014년)간 건축기본법에 의거하여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하는 법정계획이자 건축기본법에 따라 구성되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의 건축정책 심의·조정, 시책을 종합하고 체계화하는 범부처적인 실천계획으로서 기존의 지방자치단체별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건축관련 사업에 대해 체계적인 예산운영과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계획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2.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역할과 추진체계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모법인 건축기본법에서는 계획의 공간적·내용적 범주와 수립주체에 따라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 지역건축기본계획으로 구분하여 역할을 설정하고 있다. 건축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은 국가 전체의 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대하여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건축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기본계획 내용을 포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지역건축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되는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에 부합하고, 각 지역의 건축적 특화를 위해 그 지역의 현황 및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수립주체, 공간적 범위에 따라 광역건축기본계획, 기초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할 외에 건축정책기본계획이 가져야 할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제시한다.

첫 번째로는 건축·도시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건축, 도시)디자인 정착』을 위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전략적 정책수단이 필요하며, 현재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미래의 세대에 남겨줄 문화적 자산을 보호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지니고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국토환경디자인 관리체계를 정비하기 위함이다. 건축정책은 전 국토의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대상으로 하며, 지금까지 개발과 관리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어 온 국토환경에 대해 디자인의 개념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책분야이다.

세 번째는 건축문화 진흥정책을 통한 국가의 품격 향상을 위함이다. 잘 디자인된 건축물과 공간환경은 도시의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 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는 공공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중심으로 좋은 디자인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해야하며, 이를 통해 도시와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선도적인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야 한다.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건축기본법에서는 건축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정책위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두가지의 주요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건축·도시 관련사업에 통합 조정자로서 부처별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간 연계·조정 of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 특히 중앙부처에서 직접 추진하는 건축·도시 관련사업과 달리 중앙부처의 지원을 받아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성격이 뚜렷이 구분되지 않고 지역별로 중복되거나 지역적인 편중이 심하여 중앙부처의 사업에 대한 연계·조정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5년 단위로 수립·시행되는 건축정책기본계획과 지역건축기본계획을 심의·조정함으로써 건축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점검해야 한다. 또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명확한 관계설정을 통해 건축정책의 구체적인 실행수단과 통합적인 관리를 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3. 선진국의 건축정책 사례 분석

우리나라의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천수단 확보를 위한 운영체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먼저 건축정책을 국가 주요정책으로 정착시킨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성공적인 건축정책을 통해 국가의 문화, 산업적 위상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국가들로는 영국과 네덜란드, 독일, 핀란드 등 유럽연합의 국가들을 예로 들 수 있다.

영국은 1999년부터 매년 건축정책 추진현황을 정리한 연간보고서를 발간하고, 2년에 한번씩 전략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2000년에 발행된 ‘좀 더 나은 공공건축물, 미래를 위한 자랑스러운 건축유산’을 시작으로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보고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1997년 세계 최초로 국가 건축정책을 시행한 국가로 20년 이상의 장기적 국가비전을 설정하고 단계별로 중기적 정책을 추진하는 전략적 틀을 구축한 것이 특징인데 1단계의 기반구축을 시작으로 2단계의 영역확장, 3단계의 시범프로젝트 운영을 거쳐 현재는 4단계 건축정책계획으로 건축정책과 문화정책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스코틀랜드는 국가차원에서 건축과 디자인 관련정책을 자문하는 A+DS(Architecture and Design Scotland, 건축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사업계획에 참여함으로써 우수한 디자인을 장려하고, 매년 디자인 리뷰를 통한 지원과 관련연구 및 홍보활동 등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기타 여러 국가도 2000년을 전후하여 국가건축정책 추진과 그 성공에 고무되어 세계적으로 건축에 관한 각종 정책서를 경쟁적으로 발간하기 시작하면서 계속적으로 건축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의 다양한 건축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국토환경디자인 강화」, 「건축경쟁력 향상」, 「건축문화의 진흥」 부문으로 구분하여 국가별 시행하고 있는 주요내용들을 정리하였다.

4. 건축·도시분야의 정책이슈 발굴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방향설정과 구체적인 전략(과제)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건축정책 추진현황에 대한 분석과 병행하여 우리의 건축·도시가 처한 현실과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외부전문가와 내부연구진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수차례에 걸친 워크숍을 통해 현안을 중심으로 도출된 정책이슈를 부문별로 정리하고 있다.

먼저 건축·도시 관련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정책아젠다에 대해 건축기본법에서 명시한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분류에 따라 11개 항목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추진전략과 중점추진과제, 세부실천과제의 형태로 정리하였다.

5.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지침 방향 설정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선행해야 할 일은 계획수립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일이다. 전담조직은 계획수립 주체인 국토해양부의 주무부서 담당관과 계획수립에 관한 용역을 진행하는 연구팀이 합동으로 팀을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축정책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추진전략과 실행과제의 도출을 담당할 전문가 TF팀을 구성해야 하는데 계획수립에 참여할 전문가 풀은 건축·도시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로 대학교수, 국책연구소 연구원, 건축사, 도시계획가, 엔지니어링업체 종사자, 관련 학·협회 종사자 등을 총망라하여 누락되는 분야가 없도록 충분한 인원으로 풀을 구성하여야 한다.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절차는 선진국의 전략계획에 관한 분석내용과 우리나라의 유사

법정 기본계획의 구조에 관한 분석결과 도출한 건축정책기본계획의 구조적 틀을 중심으로 단계별 진행과정을 정리하였다.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한 건축현황 조사는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추진배경과 수립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며 건축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항목은 건축기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향후 관련부처인 통계청과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건축관련 통계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 활용 가능한 현황조사 항목으로 「법·제도현황」, 「교육·문화·홍보 현황」, 「산업체계 현황」, 「물리적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지표를 제시하였다.

지역건축기본계획은 건축정책기본계획과 거의 동일한 수립절차를 거치게 되지만, 기존 계획체계, 수립 대상범위, 수립주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국가 건축정책기본계획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지역 도시체계에서 건축정책의 방향을 검토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최종적인 목표인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 및 지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안)을 별책의 형태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건축정책, 건축기본법, 건축정책기본계획, 건축정책위원회, 지역건축기본계획

차례

I. 서론	2
1. 연구의 배경	2
1) 연구의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5
1) 내용적 범위	5
2) 시간적 범위	6
3) 공간적 범위	6
3. 연구의 수행방법	8
1) 문헌자료 조사분석	8
2) 법령 및 제도 검토	8
3) 관련 계획 및 수립지침 분석	8
4) 전문가 토론회를 통한 정책아젠다 발굴	9
5) 현장조사	9
6) 건축관련 통계자료 조사	9
7) 선행연구 및 논문 검토	10
8) 연구 수행 흐름도	11

II. 연구내용	14
1. 전략계획으로서의 건축정책기본계획	14
1)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성격 규정	14
(1) 건축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체계적 접근의 필요성	14
(2) 중기 법정계획으로서의 건축정책기본계획	15
(3) 건축정책기본계획이 전략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하는 이유	16
(4) 성공적인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제조건	18
2) 외국의 전략계획 수립현황	19
(1) 미국의 정부성과평가법	19
(2) 정부성과평가법에 규정한 전략계획의 핵심요소들	20
(3) 미국 연방정부의 전략계획 사례	21
(4) 미국 지방정부의 전략적 도시계획 사례	23
(5) 미국식 전략계획을 도입한 외국의 사례	23
(6) 미국식 전략계획의 성공요소	24
3) 우리나라의 기본계획 수립현황	25
(1) 법정 기본계획의 현황	25
(2) 기본계획의 구성체계	28
4) 전략계획으로서 건축정책기본계획의 구성체계	29
(1) 계획수립시 고려해야할 기본원칙	29
(2) 계획의 핵심요소에 대한 이해	30
(3) 건축정책기본계획의 구성체계 설정	32

2.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역할과 추진체계	34
1) 근거법령인 건축기본법에 대한 이해	34
2)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역할	35
(1) 건축도시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	35
(2) 국토환경디자인 업그레이드를 위한 정책추진	39
(3) 건축문화 진흥정책을 통한 국가의 품격 향상	40
3) 건축정책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41
(1) 건축도시 관련사업의 통합조정자 역할	41
(2) 주요 건축도시 관련정책에 대한 심의·조정	45
(3) 건축정책위원회와 건축정책기본계획의 관계설정	47
3. 선진국의 건축정책 사례 분석	49
1) 선진국의 건축정책 추진 현황	49
(1) 유럽연합의 건축정책에 관한 개괄	49
(2) 건축정책의 운영 및 추진체계	54
2) 선진국의 건축정책 내용분석	60
(1) 국토환경디자인 강화 정책	60
(2) 건축경쟁력 향상 정책	64
(3) 건축문화 진흥 정책	66

4. 건축·도시분야의 정책이슈 발굴	69
1) 건축기본법을 통한 정책 키워드의 도출	69
2) 전문가대상 워크숍을 통한 정책이슈 도출	72
(1) 워크숍의 개요	72
(2) 발굴된 정책아젠다의 분류	72
(3)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정책이슈	73
3) 건축·도시분야 정책이슈의 분류 및 정리	81
(1) 정책이슈의 분류를 위한 정책분야의 선정	81
(2) 정책분야별 정책이슈 배분기준 설정	82
(3) 정책분야별 정책이슈의 정리	82
5.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지침 방향 설정	87
1)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지침 방향	87
(1) 계획수립 전담팀의 구성	87
(2) 전문가 TF팀의 구성 및 운영	87
(3) 추진주체별 역할 분담	90
(4) 계획수립 범위 및 소요기간	92
(5)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내용	93
(6) 정책수립을 위한 건축현황 조사항목 설정	96

2) 광역(광역·기초)건축기본계획의 수립지침 방향	101
(1)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목적	101
(2) 지역건축기본계획의 범위 및 소요기간 산정	102
(3)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항목	103
(4)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주체 선정 및 공론 형성	108
(5)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정책목표 설정	108
(6) 지역건축기본계획의 내용 및 구성체계	109

III. 결론112

• 참고문헌	116
1) Netherland	118
2) Finland	118
3) Scotland	118
4) England	119
5) Germany	119
6) 기타	119
• Summary	121
• 부록 : 유사 법정기본계획 현황	129
1) 기본법에 의한 계획 현황	130
2) 부처별 일반 법률에 의한 계획 현황 및 주요내용	136

3) 계획 부문별 목차 구성	145
(1) 국토·환경·도시 부문	145
(2) 기술·정보·건설 부문	147
(3) 물류·SOC 부문	149
(4) 인적·자원·문화 등 인문학 부문	151

- 별책 :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지침

표 차례

〈표 I -1〉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5
〈표 II -1〉 정부성과평가법의 주요 내용	20
〈표 II -2〉 부처별 법정 국가기본계획 현황	26
〈표 II -3〉 기본법에 근거한 법정 기본계획 현황	26
〈표 II -4〉 부처별 건축·도시 관련사업 현황	42
〈표 II -5〉 관련부처 지원사업의 유사성 : 마을만들기 관련사업	44
〈표 II -6〉 영국의 건축정책 추진현황	50
〈표 II -7〉 네덜란드의 건축정책 현황	51
〈표 II -8〉 스코틀랜드의 건축 정책 현황	52
〈표 II -9〉 기타 국가들의 건축정책 현황	53
〈표 II -10〉 건축기본법에 명시된 건축정책의 방향	70
〈표 II -11〉 건축기본법에 명시된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71
〈표 II -12〉 정책분야별 정책이슈의 배분	82
〈표 II -13〉 정책분야별 추진전략(안) 제시	83
〈표 II -14〉 국토환경디자인분야의 정책이슈	84
〈표 II -15〉 건축경쟁력분야의 정책이슈	85
〈표 II -16〉 건축문화분야의 정책이슈	86

〈표 II-17〉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 건축기본조사	96
〈표 II-18〉 법·제도적 통계지표 현황	97
〈표 II-19〉 교육·문화·홍보관련 통계지표 현황	98
〈표 II-20〉 산업체계 관련 통계지표 현황	99
〈표 II-21〉 건축관련 물리적 통계지표 현황	100
〈표 II-22〉 지역의 건축관련 사업현황 : 경기도의 사례(4대 분야 25개 과제)	105
〈표 II-23〉 지역의 건축현황에 관한 통계 : 주택종류별 보급률(예)	106
〈표 II-24〉 지역의 건축관련 기초조사 항목	107

그림 차례

〈그림 I-1〉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시간적 범위	6
〈그림 I-2〉 건축정책기본계획의 공간적 범위	7
〈그림 I-3〉 연구 수행 흐름도	11
〈그림 II-1〉 전략목표와 실행목표의 연계	22
〈그림 II-2〉 기본계획의 구성체계	28
〈그림 II-3〉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전략적 구성체계(안)	33
〈그림 II-4〉 건축기본법의 구성체계	35
〈그림 II-5〉 건축기본법의 국토환경디자인 FRAMEWORK	39
〈그림 II-6〉 청사시설과 교육시설에 대한 부처별 투자현황('06년기준)	43
〈그림 II-7〉 부처별로 개별적 사업추진에 따른 시너지효과 미흡 사례	43
〈그림 II-8〉 건축정책위원회의 역할 : 건축·도시 관련사업의 통합조정	45
〈그림 II-9〉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의한 건축정책의 심의·조정	46
〈그림 II-10〉 건축정책위원회와 건축정책기본계획의 관계	48
〈그림 II-11〉 네덜란드 건축정책의 단계별 추진전략	54
〈그림 II-12〉 네덜란드 국가건축가 조직체계	55
〈그림 II-13〉 스코틀랜드 건축정책의 추진체계	56
〈그림 II-14〉 스코틀랜드 건축디자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체계	57

〈그림 II-15〉 영국 국가건축위원회(CABE) 조직체계	58
〈그림 II-16〉 프랑스 건축·도시계획·환경위원회(CAUE) 조직체계	59
〈그림 II-17〉 네덜란드의 3차건축정책계획('00~'04)에서 추진된 대형 시범프로젝트 사례 ..	63
〈그림 II-18〉 전문가 TFT 구성 기본방향	88
〈그림 II-19〉 전문가 TFT의 운영체계	90
〈그림 II-20〉 계획수립 추진주체별 역할분담	91
〈그림 II-21〉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절차	95
〈그림 II-22〉 중점과제와 실천과제의 도출 흐름도	96
〈그림 II-23〉 지역건축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설정을 위한 고려사항	109

I.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수행방법

(a u r i

서론

1 연구의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 지속가능한 건축도시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의 전환

2008년 6월에 발효된 건축기본법의 본격 시행으로 기존의 개발과 공급중심 정책에서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와 함께 고도 경제성장을 발판으로 성숙한 사회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중심에서 공공중심으로의 가치관 전환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공공생활환경의 질적 충족이 건축·도시분야의 시급한 정책과제로 대두되었다. 나아가 문화수준과 디자인경쟁력이 새로운 국가경쟁력으로 인식되는 시대를 맞이하여 건축활동에 대한 기본철학도 일정수준의 품질확보에서 한걸음 나아가 품격을 추구하는 시대로 전환되었다.

□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공공성 증대를 위한 정책의 발굴 및 추진

우리의 일상적인 건축물 및 공간환경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공간인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는 공적 공간이며 장차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문화적 자산으로서 공공적인 가치를 지닌다. 건축물이 지닌 미적 요소와 문화적 풍부함은 도시의 이미지 형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문화산업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는 도시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주요 평가지표로 인식되는 추세이다.

건축물 자체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주변공간과의 조화와 도시경관에 대한 배려를 공익으로 규정하고 있는 해외 선진국에서는 환경과 문화에 있어 건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각종 건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따라서 우리도 국민의 일상적 생활공간이면서 사회·문화적 자산이 되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공공적 가치를 사회전반에 정착시킬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실천적인 건축정책을 통한 건축·도시환경의 문화적 가치 실현

건축정책은 공적인 영역에서 추진하는 건축·도시관련 정책의 골격과 목표를 정의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확보하여 국민의 자산을 보호하고 현존하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가치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 새로운 제도와 법령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도를 재편하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공간의 창출과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문화적, 기술적 수준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건축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체제 마련

건축기본법에 명시한 5년 단위 법정기본계획인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우리의 건축·도시가 처한 현실에 바탕을 둔 정책아젠다의 발굴이 선행되어야 하며, 나아가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정책과제를 바탕으로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정책과제 등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틀로써 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 본 연구는 '08년 6월에 발효된 건축기본법에 근거하여 '09년부터 수립 시행 예정인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고, 계획수립을 위한 틀로써 수립지침(안)을 개발하기 위해 기획됨
- ※ 건축기본법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5년마다 건축정책기본계획(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시행)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지역건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연구의 목적

□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성격과 역할 규명

건축정책기본계획의 근거법령인 건축기본법과 기타 국토환경 관련법령에 대한 조사·분석을 토대로 계획의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여야 하며, 건축기본법 이외에 국내의 여타 기본법 등에 의해 수립되는 유사 법정기본계획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성격과 형식을 도출한다.

□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이론적 토대 확보

우리의 건축이 처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건축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건축·도시분야 현황에 관한 기초조사 항목을 도출하고, 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 담아야 할 정책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건축·도시분야 관련전문가를 대상으로 정책아젠다를 발굴하여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또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관련 정책기본계획에 대한 내용과 구조적 틀을 분석하여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적 틀을 전략계획으로 설정하고, 전략계획의 내용과 수립지침을 분석하여 계획수립을 위한 구체적 방법을 모색한다.

□ 계획 추진주체의 역할 정립과 국가와 지역계획간 관계 설정

건축기본법에 대한 심층적인 내용 분석을 토대로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추진 주체가 되는 건축정책위원회의 관계 및 역할을 정립하고, 건축기본법과 여타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가에서 수립되는 국가계획과 지역에서 수립되는 광역 또는 기초계획의 관계를 설정한다.

□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의 개발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본격 수립에 대비한 사전연구의 일환으로 계획 수립시 활용 가능한 지침(안)을 작성하여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계획의 구성체계에 대해 검토한 후 추진주체와 수립범위, 소요기간을 설정하고, 수립절차(방법)와 정책비전 및 목표설정 방법 등을 제시한다.

연구의 범위 2

1) 내용적 범위

건축정책기본계획의 근거 법령인 건축기본법의 구성체계와 내용,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추진체계 등 계획수립 지침 작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며, 건축정책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관련전문가 대상 건축정책아젠다 발걸을 통해 건축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명시한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을 포함한 건축의 진흥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검토를 진행한다.

〈표 1-1〉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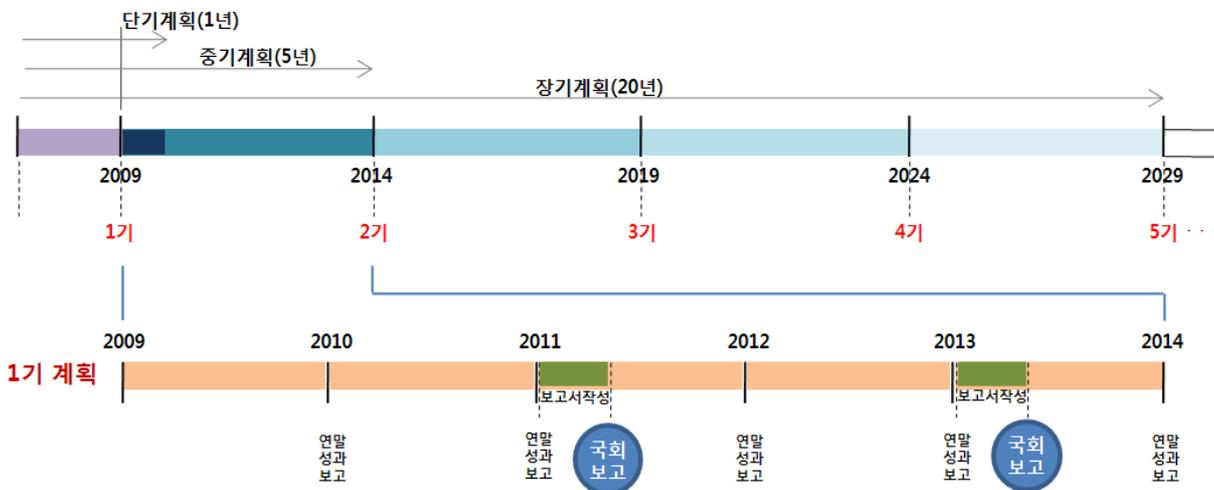
건축기본법 제11조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건축의 품격 및 품질 향상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 •지역의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대책 •우수한 설계기법 및 첨단건축물 등 연구개발 •건축분야 전문인력의 육상지원 및 관리방안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 •건축문화 기반구축 •건축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및 선도시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에 대한 건축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우수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국토·도시·건축 기록자료 구축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유사 법정 기본계획(국내의 여타 기본법, 진흥법 등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계획을 비롯하여 건축도시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국토환경에 관한 각종 기본계획)의 현황 및 구성체계와 내용을 분석하고, 유럽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건축정책과 영국 및 미국의 전략계획 현황, 추진방법,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 분석하여 체계화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지침 작성을 위하여 국내외의 각종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수집하고, 그 구성체계와 내용을 분석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될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추진 체계 및 수립지침(안)은 중앙정부에서 수립하는 건축정책기본계획과 지자체의 지역건축기본계획(광역 및 기초)을 포괄하여 구성하게 된다.

2) 시간적 범위

건축정책기본계획의 근거법령인 건축기본법은 2008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계획에 대한 심의·조정을 담당할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2008년 12월에 정식 출범하였다. 건축정책기본계획은 5개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1차 계획은 2009~2014년이 목표연도가 되며 연차별 목표와 중장기적 계획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계획수립을 위한 지침(안)은 본격적인 계획수립에 앞서 2008년까지 개발이 완료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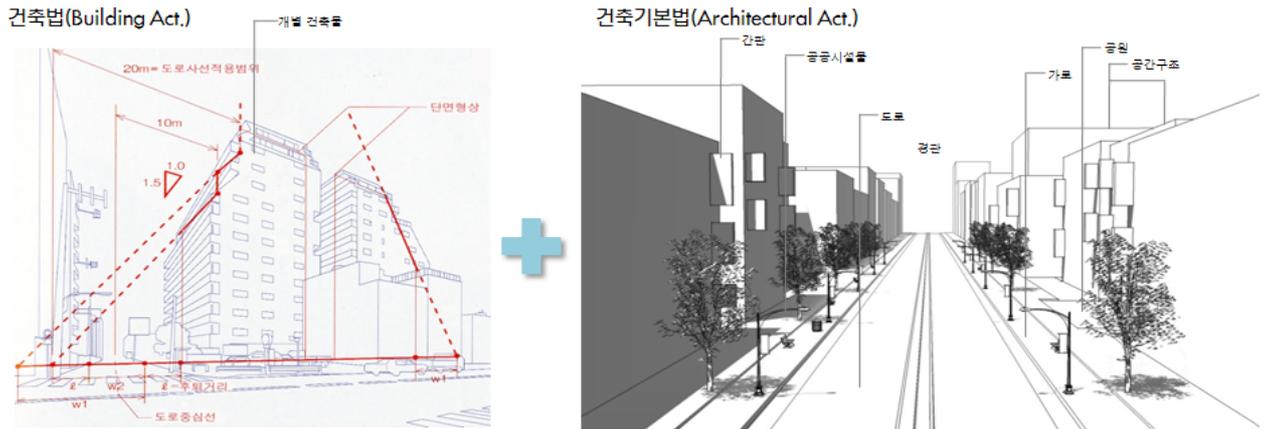
〈그림 1-1〉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시간적 범위

3) 공간적 범위

건축기본법에서는 법 적용대상이 되는 건축의 범위를 건축물과 공간환경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대상도 개별건축물과 그 주변의 공간구조 및 경관까지를 포괄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축도

시분야의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구체적인 정책의 대상으로 설정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구 분	공간적 범위
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건축기본법 제3조 제1항)
공간 환경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 공공공간 및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구조: 공간을 이루는 방식(배치, 구성 등) •공공공간: 공공이 소유한 공간, 시설물(가로, 공원, 광장, 고가도로 등) •경관: 공간전반의 모습, 이미지(자연, 인공요소, 주민의 생활상 등) (건축기본법 제3조 제2항)



<그림 1-2> 건축정책기본계획의 공간적 범위

3 연구의 수행방법

1) 문헌자료 조사분석

건축기본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보고서와 법제정 과정에서 참고한 각종 보고서와 참고자료를 분석하여 법제정의 이론적 배경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국내외의 기본계획에 관한 정책제안과 연구자료 등을 수집·분석하여 전략계획으로서의 기본계획의 이론적 틀을 마련한다.

인터넷을 이용한 국내외 정책동향 조사 및 정책이슈 발굴을 진행하고, 국내 관련기관이 보유한 건축정책 관련 문헌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며, 외국의 건축정책 관련자료의 수집 및 번역을 통해 건축정책의 방향과 정책아젠다를 도출·정리한다. 정부에서 수립·시행중인 유사 법정 기본계획, 중장기계획, 종합계획 등에 대해서도 그 구성체계 및 내용을 분석한다.

2) 법령 및 제도 검토

건축기본법의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와 건축정책기본계획과 건축정책위원회의 관계, 국가계획과 지역계획간의 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진행한다. 나아가 국가차원에서 수립·시행되고 있는 각종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가 되는 여타 기본법(안)의 구성체계 및 내용에 대해 분석하며, 건축정책기본계획과 관련분야 여타 계획간의 관계와 역할을 정립하기 위하여 국토환경 관련법령(국토기본법,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경관법, 건축법, 주택법 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다.

3) 관련 계획 및 수립지침 분석

기본법에 근거하여 부처별로 시행중인 각종 법정 기본계획에 대해 계획 내용의 구성방식과 추진체계를 조사하고, 계획수립 지침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또한 공간계획으로 수립하는 국토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경관계획의 내용 및 구성체계에 대한 조사·분석을 진행한다. 전략계획으로 수립하는 과학기술기본계획, 여성정책기본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등의 내용 및 구성체계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한다.

미국의 정부성과평가법에 의해 수립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전략계획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계획의 내용 및 구성체계, 수립지침(계획수립의 원칙)을 파악한다. 미국의 전략계획에 대해서는 국가과학위원회, 에너지성(DOE), 환경보호청 등의 정부부처와 함께 뉴욕시, 덴버시 등 지자체의 전략계획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4) 전문가 토론회를 통한 정책아젠다 발굴

건축·도시 전 분야에 걸쳐 수립하게 될 건축정책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상하고 계획수립 체계 등을 파악하기 위한 건축정책 방향설정 작업의 일환으로 관련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건축정책 아젠다를 도출한다.

5) 현장조사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건축정책 추진사례가 전무한 국내의 상황을 감안하여 선도적인 건축정책 추진을 통해 건축과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한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정책추진 현장조사를 진행하며 단계별로 체계적인 건축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통일 후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베를린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건축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독일의 현황파악을 위한 현장조사도 실시한다.

6) 건축관련 통계자료 조사

건축정책기본계획의 건축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자료의 확보를 위해 통계청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건축·도시관련 기존 통계자료의 존재여부와 새로운 통계자료 구축 필요성, 각종 설문조사의 실시방법 등에 대해 검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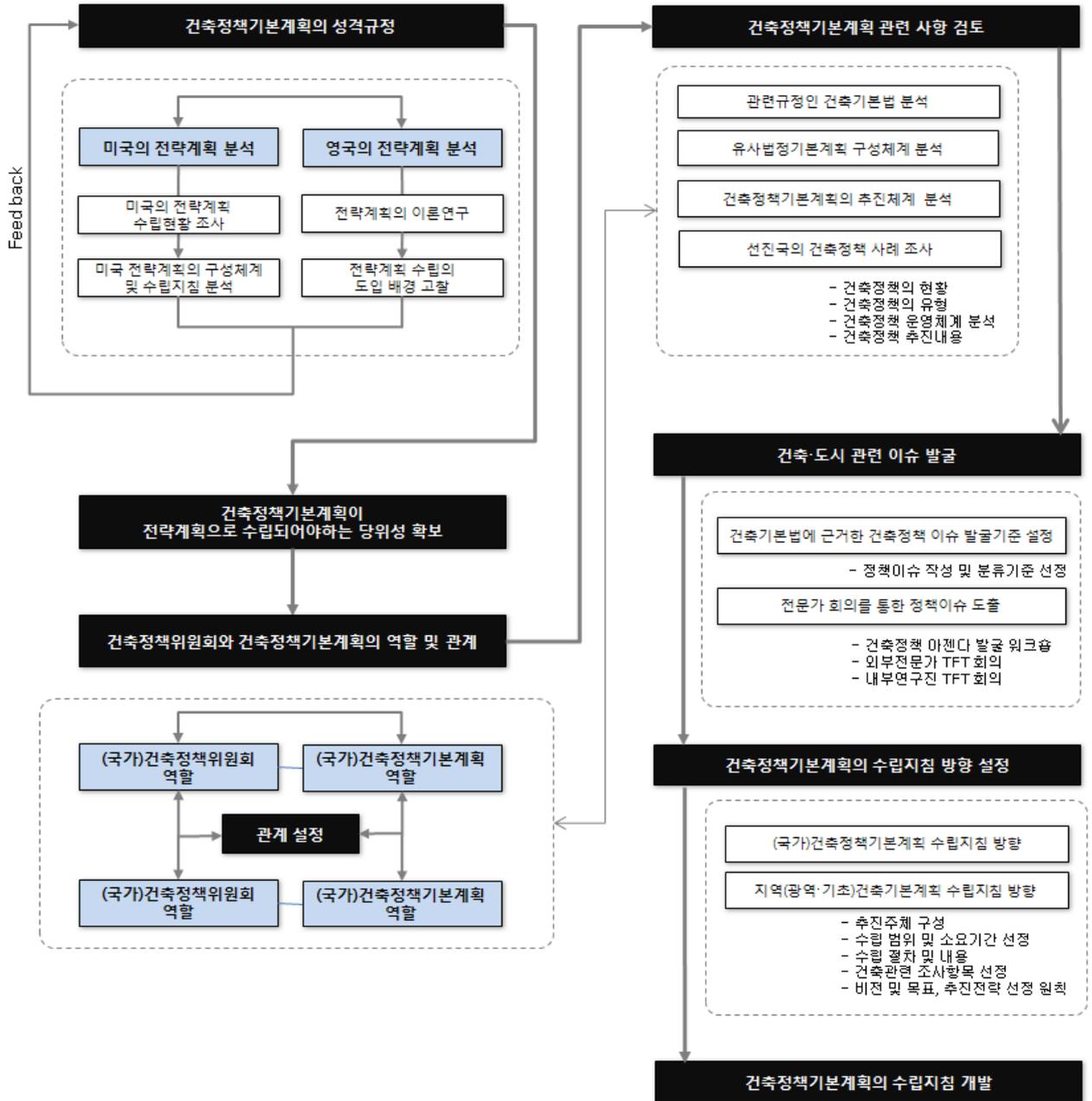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건축관련 통계자료 구축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의 건축관련 행·재정 현황과 건축관련 일반통계, 현재 추진중인 건축관련 사업 등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실시한다.

7) 선행연구 및 논문 검토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현황을 조사하였는데 건축도시분야에서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시점이 대개 2000년 이후의 일로 최근까지는 건축정책이 별도의 학문분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관련분야의 체계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기존의 건축정책을 다룬 연구 또는 제안은 초기 정책도입 단계에서의 방향 검토가 주를 이루어 건축정책의 중요성과 그 도입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며, 구체적인 건축정책의 내용과 장기적 정책계획에 대해 심도있게 고찰한 연구는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적인 건축정책의 방향타 역할을 할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구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실제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에 활용할 수 있는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지침(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8) 연구 수행 흐름도



<그림 1-3> 연구 수행 흐름도

II.

연구내용

1. 전략계획으로서의 건축정책기본계획
2.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역할과 추진체계
 3. 선진국의 건축정책 사례 분석
 4. 건축·도시분야의 정책이슈 발굴
5.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지침 방향 설정

(a u r i

연구내용

1

전략계획으로서의 건축정책기본계획

1)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성격 규정

(1) 건축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체계적 접근의 필요성

건축·도시분야는 관련주체가 다양하고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한 반면에 정책실현을 통한 혁신의 효과를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공공건축을 예로 들면, 건축·도시전반을 다루는 국토해양부를 시작으로 교육시설은 교육과학기술부, 정부청사는 행정안전부, 문화·전시·공연·체육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 재외공관은 외교통상부, 병영시설은 국방부 등 거의 모든 정부부처가 관련되어 있으며, 지역의 공공건축에 대한 실질적인 건설·유지·관리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다. 또한 미술관·박물관·기념관 등의 특정 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자체의 외관적 완성도와는 별개로 시설물을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콘텐츠가 미비하여 시설물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방자치체의 시행과 함께 경쟁적으로 추진되어 온 대규모 청사의 건설이나 지역의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시도되는 무분별한 전시·컨벤션시설의 건설은 지역간의 불균형 또는 중복투자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부처간 예산의 분리와 칸막이식 예산집행으로 통합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며 이로 인해 시설간 연계 등 시너지효과가 미흡한 것도 문제이다. 예를 들어 동일 또는 인접한 부지내에서 여러 관련주체들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설간 통합운영이나 동선의 연결 등 연계가 부족한 사례 발생하고 있으며 부처별로 추진하는 지자체 지원사업 중에서도 그 성격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지자체별 지원의 편중과 중복지원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건축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체계적인 건축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2) 중기 법정계획으로서의 건축정책기본계획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 제정된 건축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5년 단위의 중기 법정계획으로 다음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

향후 5년(2009~2014년)간 우리나라의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범정부적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하는 건축분야의 최상위 국가 정책계획

- 건축기본법에 의거하여 5년 단위로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하는 **법정계획**
- 시도별로 의무적으로 수립되는 광역건축기본계획과 시·군·구별로 필요에 따라 수립되는 기초건축기본계획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건축분야의 **최상위 기본계획**
- 건축기본법에 따라 구성되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의 건축정책의 심의·조정, 시책을 종합하고 체계화하는 **범부처적인 실천계획**
- 기존의 지방자치단체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건축관련 사업에 대해 체계적인 예산운영과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계획**

이상의 성격 규명을 바탕으로 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는 중장기적인 건축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전략과 과제, 시범사업 등이 일정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3) 건축정책기본계획이 전략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하는 이유

『전략』¹⁾이라는 용어는 주요 목표, 정책, 그리고 행동을 긴밀한 실체로 “연결”하는 계획을 의미하며, 『전략적 계획』²⁾이란 주변 환경, 자원 그리고 장기적인 효과를 반영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방법을 채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략계획은 단순한 예측과정이 아닌 예측된 내용들과 미래의 청사진이 실행될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하나의 과정³⁾으로 이해해야 하며, 『전략계획의 수립』은 미래를 예측하는 프로세스가 아니라, 예측된 내용들이 실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프로세스이다.

그 동안 우리의 국토환경에 대한 관리는 도시계획의 틀 속에서 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체계적인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그 공간적 범위에서 계획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 최근에는 부처별 사업영역의 확대와 전문화 추세에 따라 국토환경에 대한 건축·도시관련 사업이 부처별, 지방자치단체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부처별 유사사업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예산운용, 사업에 대한 목표의식이 부족한 단편적인 정책 시행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건축·도시분야에서의 전략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국가차원에서 뚜렷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 세부적인 실천을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를 제시하여 사업에 대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인 선택을 의미한다.

영국의 경우에도 1940년대 전후 도시재건을 위해 지역별 개발계획과 공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지역간의 극심한 경제격차와 불균형이 발생하여 1965년도에는 국가차원에서의 전략계획 수립을 시도⁴⁾한 예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각 지자체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축·도시 관련계획 및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기존의 계획체계에 대한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중앙부처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단계에 도달하였다.

- 1) ‘전략’이라는 용어의 어원은 군사전략에서부터 유래되었다. 전략은 문자 그대로 “장군의 용병술”을 의미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전략은 “계획된 행동을 위한 목적과 임무”를 제공해주는 “지향적인 의사 결정” 기능으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몇 가지 핵심적인 원칙에 집중하여 목표에 대한 명확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Quinn, J. B. 1995. Strategies for change: some useful definitions. In The strategy process, H. Mintzberg, J. B. Quinn and S. Ghoshal, London: Prentice Hall, p.5
- 3) Steiner, G. A. 1997. Strategic planning: a step-by-step guide. New York: Free Press Paperbacks, p.15.
- 4) 영국의 초기 전략계획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통합된 계획수립의 메커니즘이 부재한 때문으로 분석됨, Peter Hall, "Evolution of strategic planning and regional development, p.24.

건축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구성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16개 중앙부처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부처간 협의를 통한 정책조정과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을 심의·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법적으로 구축된 상태이다.

따라서 건축의 공공성 구현이라는 건축기본법의 이념과 부처간 정책조정이라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본질적인 취지에 부합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체계적인 계획 메커니즘을 통해 수립될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지역건축기본계획은 반드시 전략적인 접근방법을 통한 전략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반면에 이러한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개 다음과 같은 문제점⁵⁾이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관련계획과 수립주체간의 관계 변화

- 계획수립 방식에서 기본틀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될 경우 기존의 계획수립 주체를 해체하고 새로운 시스템에 적합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러한 변화에 따른 혼란 발생 가능성이 있다.⁶⁾

○ 새로운 계획방식에 의한 의사결정 및 권력관계의 변화

- 전략계획은 기존의 계획방식과는 다른 협력적인 의사결정 패턴을 요구하며 이에 따른 기존 조직내에서의 권력관계 변화와 자원배분 형태의 변화를 초래한다.

○ 계획의 운용에 따른 새로운 갈등의 도출 가능성

- 기존의 관련 정책 시행 정부부처 또는 기관에 대해 전략계획의 입안자가 새로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권력 충돌의 가능성이 있고, 장기적 관점의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계획의 성격상 기존의 단기적이고 실적위주의 관리에 익숙한 조직에서는 성과에 대한 불확신과 이로 인한 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새롭게 제정된 법(건축기본법)과 전략계획(건축정책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기존의 제도와 체제내에서 어떠한 위상을 지니며, 여타 계획과의 역할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Steiner, G. A. 1997. Strategic planning: a step-by-step guide. New York: Free Press Paperbacks, pp.96-101.

6) 스타이너는 최악의 경우에 관계가 악화되어 좌절, 오해, 불안전성을 증가시키는 잠재적인 문제 요인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음(Steiner, G. A. Strategic planning, 1997)

○ 결과에 대한 실패위험을 우려하고,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

- 계획이란 “잠재적인 실패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잘못된 전략이 채택될 경우 그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새로운 계획방식의 도입시에는 결과의 실패위험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일부 계획 수립 입안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덜 도전적이고 덜 혁신적인 전략을 도출할 가능성이 있다.

(4) 성공적인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제조건

앞에서 설명한 전략계획 수립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적절한 분석도구를 사용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현실에 근거한 추진전략과 추진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⁷⁾ 나아가, 단순히 현황에 근거한 선형적인 예측으로 미래를 전망하면 그릇된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획수립 과정에서 항상 관련전문가들을 충분히 참여시켜 활발한 토론을 통한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도록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계획수립이 완료되고, 시행과정을 통해 애초의 예측과는 달리 기획했던 것만큼 성과가 도출되지 못하더라도 계획입안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없어야 한다.

모든 상황이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한 전략계획이 효과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채택된 전략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이를 바탕으로 한 끊임없는 학습과정이 필요하다.⁸⁾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변화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계획수립에 참여한 구성원들이 체계적인 학습조직으로 구성되고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학습조직을 구축함으로써 정책의 관리자와 의사결정권자는 지속적으로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으면서 성공적인 계획 달성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전략계획으로 수립되는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기존의 공간계획 위주의 도시계획 체계와는 달리 장기적 전략 중심의 새로운 틀을 지니게 되는데 중앙부처의 계획입안자를 비롯해 기존의 공간계획 방식에 익숙한 관련전문가들조차도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략계획으로서

7) Steiner, G. A. 1997. Strategic planning: a step-by-step guide. New York: Free Press Paperbacks, pp. 287-298.

8) Geus, A.P. de 1999. Planning as learning. In Harvard Business Review on managing uncertainty. Cambridge, MA: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pp. 54-56. (각색)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대해 관련 이해당사자들간에 공감과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시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나아가, 관련전문가를 비롯한 일반국민들도 건축정책기본계획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책입안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개방적인 협의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계획의 실패요인을 최소화하는데 효과적이다. 나아가서는 새로운 계획의 도입으로 인한 불안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계획의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형화된 접근법에서 탈피하여 보다 창의적인 계획수립기법의 개발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외국의 전략계획 수립현황

(1) 미국의 정부성과평가법

1990년대 이후 미국은 정부 혁신을 위해 공공부문의 성과관리를 통한 정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그 일환으로 행정부문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993년에 정부성과법(Government Performance Results Act: GPRA)을 제정하였다.

성과평가법은 공공사업의 성과평가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재정의 낭비를 방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연방정부 내의 모든 행정기관은 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의회와 대통령산하 관리예산실(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OMB)에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전략계획에 따라 매년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2001년 이후부터는 그 평가결과를 예산 배정에 연계토록 규정하고 있다.

〈표 II-1〉 정부성과평가법의 주요 내용

구분	세부규정
전략계획의 수립과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정부 산하의 각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기관별 사업과 활동에 대한 전략계획을 수립·제출 - 전략계획의 수립주기는 계획을 제출하는 회계연도로부터 최소 5년 이상의 기간을 포함하되 3년마다 수정
전략계획의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의 주요 기능과 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미션(Mission)을 제시 - 기관의 주요 기능과 운영을 위한 목표와 목적, 결과물(Goals, Objectives & Outcomes)을 제시 - 목표와 목적의 달성 방법: 운영과정, 기술기법, 인적·물적자원, 자원 등 (How Achieved?)을 제시 - 계획상의 목적과 목표, 결과물의 관계(How Related?) - 해당기관을 둘러싼 외적 요인: 기관의 목표와 목적 달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 기관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Key External Factors)의 규명 - 계획상의 목표와 목적을 수립·수정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 평가(Program Evaluations) 관련 사항
성과계획 수립과 연차별 성과 보고서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계획과 부합되는 개별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연간 성과계획 (Performance Plan) 수립: 성과목표, 객관적이며 양적이고 측정가능한 목적, 목표와 목적의 달성수단, 성과지표, 측정가치의 입증수단 등을 포함 - 해당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프로그램의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정부성과평가법에 규정한 전략계획의 핵심요소들

전략계획은 해당 기관의 종사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수행하고자 하는 미션과 그에 대한 목적을 생각하고 그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생각하도록 도와주는 방향타의 역할을 한다. 기관의 성격이나 규모 등에 따라 다양한 전략계획 프로세스가 존재하지만 정부성과평가법상에서는 이러한 서로 다른 전략계획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다음과 같은 6가지 공통요소를 반드시 지니도록 권장하고 있다.

○ 미션(Mission)

- 전략계획의 수립주체에게 주어지는 임무에 관한 것으로 조직에는 몇 가지 미션이 존재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왜 해야 하는가?” 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된다.

○ 현황분석(Situation Analysis)

- 해당 조직이 처한 주변 환경의 탐색에 관한 것으로 주어진 미션의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의 처한 위치는 어디인가?”, “우리의 세상은 어떠하며 우리의 미래는 또한 어떠한 것인가?” 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된다. 이를 좀 더 구체화하면 “우리의 고객은 누구인가?”, “우리의 계획은 무엇을 가정하고 있는가?”, “우리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과 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으

로 정의된다.

○ **비전, 전략적 목표(Vision, Strategic Goals and Objectives)**

- 해당 조직이 성취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결과물을 나타내며,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그곳에 도달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의 핵심적인 성과지표(KPI, Key Performance Indicator)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구체화된다.

○ **전략적 이슈(Strategic Issues)**

- 해당 조직이 처한 현재의 상황과 도달하고자 하는 비전 사이의 차이점에 관한 것으로 “우리가 넘어야 할 장애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정리된다.

○ **전략(Strategies)**

- 해당 조직이 비전을 달성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별이는 구체적인 활동경로를 말하며 “어떤 활동의 방향과 진로를 선택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구성된다.

○ **프로그램 계획(Program Plan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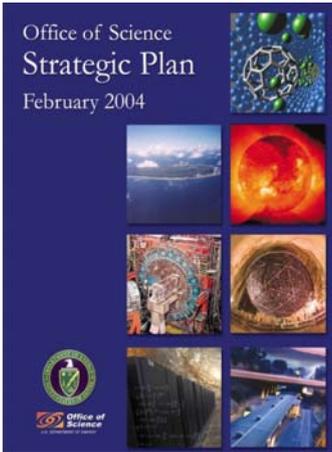
- 해당 조직이 채택한 전략을 구체적인 활동으로 변환하기 위한 계획을 말하며 구체적인 업무나 과제의 형태로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미국 연방정부의 전략계획 사례

□ 국가과학위원회(Office of Science) 전략계획

국가과학위원회의 전략계획은 20년 주기로 수립되는 계획으로 2004~2023년 동안 미국의 국가, 경제, 에너지 안보를 진전시키고, 과학적인 성과를 이루어 내기 위한 계획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7대 목표와 전략(Goals and Strategies)을 수립하고,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추진해야 할 7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각 목표와 전략별로는 20년 이상의 장기적인 스케줄(Strategic Timeline)을 설정하고 연차별로 성과를 측정·관리하고 있다.

□ 에너지성(Department of Energy) 전략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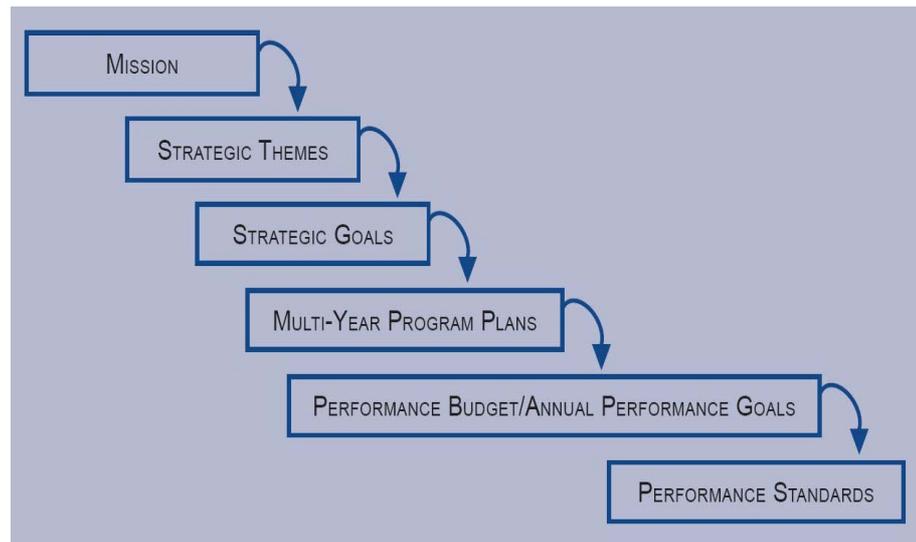


국가과학위원회 전략계획



에너지성 전략계획

미국 에너지성의 전략계획은 일상적인 에너지안보와 핵안전, 과학을 통한 기술혁신을 위한 계획으로 전략적 주제별 도전과 전략목표, 구체적 전략, 외적 요인 등을 기술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5개의 전략주제별로 도전과 4-5개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의 전략목표 달성에 관련된 다양한 외적 요인을 기술하고 있다. 전략적 목표와 연차별 실행목표와의 연계를 위해 중장기적 전략 목표의 달성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 목표를 별도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II-1〉 전략목표와 실행목표의 연계

□ 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전략계획

미국 환경보호청의 전략계획은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전략목표로 깨끗한 공기와 글로벌 기후변화, 깨끗하고 안전한 물, 토양의 보전 및 복원 등 5대 전략목표를 선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5대 전략목표(Goals)별로 다시 3~6개의 목적(Objectives)을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환경보호가 주는 경제적 영향도를 참고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사회적 비용과 편익분석을 전략계획에 포함시키고, 미래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도 제안하고 있다.

(4) 미국 지방정부의 전략적 도시계획 사례

□ 뉴욕시 전략적 도시계획

2002~2007년을 계획년도로 기회의 국제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친근한 도시, 주요 부지의 디자인 개선, 수변과 공공 오픈스페이스에 대한 환경개선, 도시디자인혁신 등을 전략목표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전략계획으로 맨하탄지역의 저층부 개발, 교통시스템 개선, 허드슨 야드 마스트플랜, 도시디자인 개선, 부도심 업무지구의 활성화, 수변공간의 재생과 공공 오픈스페이스의 활성화, 양호한 주택의 보급, 다목적 이용의 촉진, 주민정체성 보호, 지속가능성과 디자인 증진 등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 덴버시 교통체계중심(TOD)의 전략계획

TOD의 성공을 위한 전략적 목표로 지역적 효율성의 추구, 다양한 선택의 가능성, 가치중심의 접근, 장소만들기, 지역의 상징성 확보 등 5가지를 설정하였으며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도시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특정지구에 대한 정책을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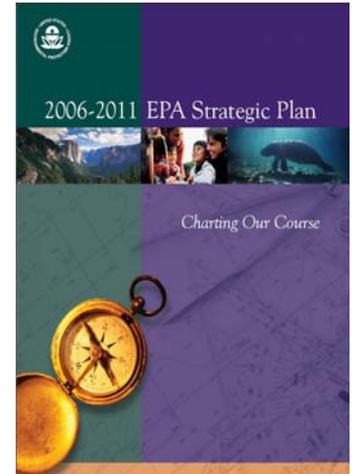
뉴욕시 전략적 도시계획

도시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발전계획과 역주변계획, 구획화계획, 교통체계구역화계획, 주차공간확보전략, 교통체계개선을 위한 재단설립, 다양한 계층의 주택마련 계획, 공영주택지 재생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정지구를 대상으로 각 구역(정류장)별 TOD의 유형, 시장성, 우선순위 선정 등을 제시하여 정책적으로 대응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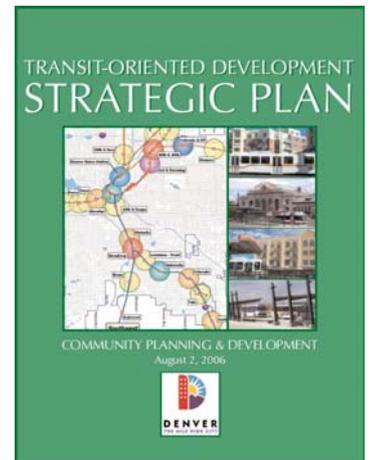
(5) 미국식 전략계획을 도입한 외국의 사례

□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ICT 전략계획

2006년에 작성된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의 ICT 전략계획은 주정부의 정보기술과 통신기술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전략계획으로 계획의 목표로는 기술서비스에 대한 투자확대와 이용자 편의서비스의 증대,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정부의



에너지성 전략계획



덴버시 교통체계중심 전략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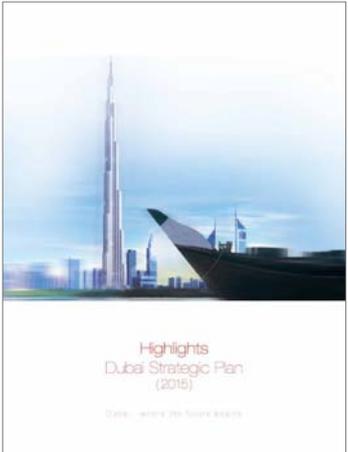
뉴사우스웨일즈 ICT 전략계획

전자서비스 확대, ICT 총비용 절감(효율성 증대) 등을 설정하였다. 핵심전략에 대해서도 별도의 투자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의 개선,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ICT 비용절감, 관련기준과 표준의 정비, ICT거버넌스의 구축을 최상위 투자우선순위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 UAE 두바이 전략계획

목표연도를 2007~2015년으로 설정하였으며 국제적인 도시로 도약한 두바이의 발전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인적자원을 강화하고, 경제적 발전과 정부의 근대화를 촉진할 목적으로 경제발전, 사회발전, 인프라와 환경, 안전과 정의, 정부분야의 5가지 부문에서 전략적 목표와 실천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발전의 목표는 2015년까지 매년 11%씩 GDP성장으로 44,000불에 도달하고자 하며, 사회발전 목표는 국가정체성 보존과 커뮤니티의 결속력 강화, 사회참여 증대, 질 높은 교육기회 제공, 의료복지 시스템개선, 문화환경 강화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인프라와 환경 목표는 자연자원 보전 및 분배, 에너지·전력·물에 대한 충분한 공급, 통합적 교통시스템 구축, 지속가능한 환경의 유지 등이 있다.

(6) 미국식 전략계획의 성공요소



두바이 전략계획

□ 전략계획 수립주체의 중요성

계획수립을 위한 자료수집과 정보의 분석은 관련전문가나 하위의 공무원들이 수행하지만 해당 기관의 미션을 정의하고,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개발하는 작업은 반드시 핵심 관리자가 주체가 되어 이루어진다.

□ 전략계획 수립과정에 대한 중시

전략계획을 수립할 때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관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보다 현안문제의 해결이 더 시급하게 여겨지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 별도의 장소에서 쾌적하고 안락하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넉넉하게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

□ 미래 전망의 불확실성과 위협요소에 대한 인지

미래 전망은 언제나 어긋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상세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거나 상세한 미래예측을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으며, 매년 전략계획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변화된 사회환경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략계획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전략계획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때

에도 외부의 전문가를 적극 참여시켜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통찰하고 계획을 보완한다.

□ 전략계획과 예산편성, 성과평가와의 연계

전략계획이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과 예산편성, 성과평가 등 후속 과정과 확실한 연계를 이루지 못하면 지속적인 실행이 어려우며 예기치 못한 문제점에 봉착하였을 때 쉽게 용도폐기되는데 성과평가를 통한 예산편성과의 연계를 통해 실천력을 담보하고 있다.

□ 최고 관리자의 의지

전략계획 수립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관리자 들의 능력과 의지가 중요한데 최고 관리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재의 사회가 처한 위기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정확한 방향을 지시해 주는 것이 성공적인 전략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3) 우리나라의 기본계획 수립현황

(1) 법정 기본계획의 현황

우리나라 정부에서 현재 수립·시행하고 있는 법정 계획은 기본법에 근거한 기본계획과 일반 법률에 의한 종합계획, 발전계획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부처별로 존재하는 기본법은 48개에 달하며 기본법에 의한 관련계획 44개와 관련계획을 지원하는 실천계획 49개가 수립·시행 중이다. 일반 법률에 의해서도 법정계획 33개가 수립·시행 중이다. 이와같이 기본법과 일반 법률에 의해 수립되는 법정 계획을 모두 합하면 126개의 계획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는 국토해양부가 가장 많은 8개의 기본법을 운용중이며, 지식경제부(5개)와 행정안전부(5개), 교육과학기술부(4개), 문화체육관광부(4개)의 순으로 기본법을 보유하고 있다.

〈표 II-2〉 부처별 법정 국가기본계획 현황

소관부처	기본법	계	기본법에 의한 계획	기본법에 따른 기타 실천계획	일반법률에 의한 계획
국무총리실	1	4	1	2	1
공정거래위원회	1	2	1	1	-
국가보훈처	1	2	1	1	-
교육과학기술부	4	7	4	2	1
국방부	2	6	2	4	-
국토해양부	8	37	7	13	17
기획재정부	3	1	1	-	-
노동부	2	2	2	-	-
농림수산식품부	2	5	2	2	1
문화체육관광부	4	8	3	4	1
법제처	1	2	1	1	-
보건복지가족부	4	7	4	3	-
여성부	2	4	2	2	-
지식경제부	5	16	5	6	5
행정안전부	7	12	6	5	1
환경부	1	11	2	3	6
계	48	126	44	49	33

〈표 II-3〉 기본법에 근거한 법정 기본계획 현황

소관부처	기본법	기본계획	수립기간	수립주체	위원회	기타 실천계획
국무총리(1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	3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성과관리전략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체평가계획
국토해양(8건)	건설산업 기본법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제3차 : 2008~2012)	5	국토해양부장관	건설산업발전심의회	연차별 계획
	건축기본법	건축정책기본계획	5	국토해양부장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지역건축정책위원회)	지역건축기본계획
	국토기본법	국토종합계획 (제4차 : 2000~2020)	20	국토해양부장관	-	도종합계획 지역계획 (수도권발전계획, 광역권개발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물류정책 기본법	국가물류기본계획 (2001~2020)	10 (5)	국토해양부장관	물류정책위원회	연도별 시행계획 지역물류기본계획

소관 부처	기본법	기본계획	수립 기간	수립주체	위원회	기타 실천계획
	지속가능 발전기본법	국가지속가능발 전 기본전략	20	정부	국가지속가능발 전위원회 (지방지속가능발 전위원회)	국가이행계획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 본계획 (제1차 : 2006~2010)	5	국토해양부장 관	철도산업위원회	철도산업구조개 혁기본계획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	-	토지이용규제심 의위원회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해양수산발전기 본계획	10	정부	해양수산발전위 원회	-
교육과학기술 (4건)	과학기술기본 법	과학기술기본계 획 (제2차 : 2008~2013)	5	교육과학기술 부장관	국가과학기술위 원회	
문화체육관광 (4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 부장관	한국문화산업진 흥위원회	세부시행계획(문 화산업 각 분야별 및 기간별로 계획수립)
지식경제 (5건)	에너지기본법	국가에너지기본 계획 (2003~2012)	5	지식경제부장 관	국가에너지위원 회	지역에너지계획(사·도지역에너지 계획은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수립·시행)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 수립
행정안전 (5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안전관리기 본계획 (제1차 : 2005~2009)	5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행정안전 부)	중앙안전관리위 원회 지역안전관리위 원회 (사·도 및 사·군·구)	사·도안전관리계 획 사·군·구안전관리 계획 5년마다 사·군·구 재난예·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환경 (1건)	환경정책 기본법	국가환경종합계 획 (2006~2015)	10	환경부장관	중앙환경보전자 문위원회	

●●●●● 이하 생략

공정거래위원회(1), 국가보훈처(1), 국방부(2), 기획재정부(2), 노동부(2), 농림수산식품부(2), 법제처(1), 보건복지가족부(4), 여성부(2)

* 세부 현황은 [부록 1]를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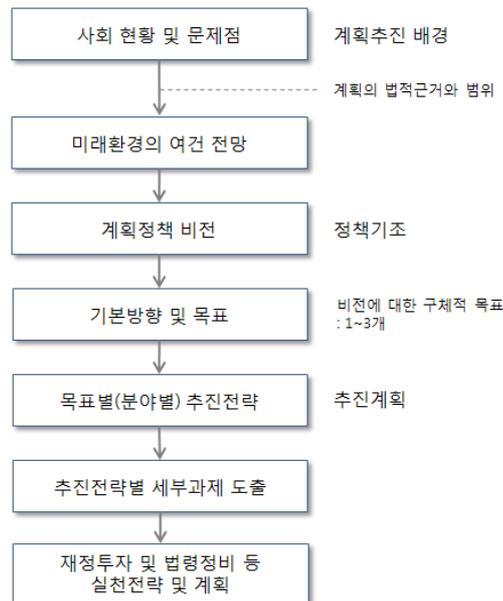
(2) 기본계획의 구성체계

126개의 법정 계획을 성격별로 구분을 하면 종합계획, 정책계획, 기본계획, 전략계획, 발전계획, 운용계획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되지만 계획의 구성체계는 일정한 틀 속에서 계획되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법정 기본계획의 구성체계는 대개 계획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미래환경의 여건 전망, 비전 및 목표설정, 목표별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재정투자 및 법령정비 등 실천계획의 5단계로 구성되어 미국식 전략계획의 틀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계획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은 비전 및 목표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조사로 이전 계획의 성과, 사회의 요구, 패러다임 변화 등 계획의 추진배경을 다루고 있으며 현황분석과 함께 해외동향 조사를 통해 미래환경에 대한 여건 및 전망을 구성하고, 이는 곧 계획의 기본방향과 비전을 제시해주는 기준이 된다. 계획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비전 및 목표설정은 달성도,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설정되는 것이 특징이다.

선정한 목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도출하고 추진전략에 따라 세부적인 추진과제를 도출하며 실천계획은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액션에 초점을 맞추며 일정과 예산투입 등이 포함된 형태로 작성된다.



〈그림 II-2〉 기본계획의 구성체계

4) 전략계획으로서 건축정책기본계획의 구성체계

(1) 계획수립시 고려해야할 기본원칙

□ 계획의 수립주체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전략을 개발하는 과정에는 해당 부처의 핵심주체들이 반드시 참여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여야 하며, 현황자료의 수집과 동향분석, 보고서 작성 등을 담당할 관련 전문가와 협업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춰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는 핵심적인 임무에 핵심주체들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도록 한다.

□ 계획의 기간 및 범위

중기계획으로 5년간이 목표연도로 설정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10~20년의 시간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⁹⁾ 시간적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관련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국민들은 시간적 흐름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별 계획의 목적과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그 결과를 평가 또는 점검할 수 있게 된다.

□ 계획수립을 위한 소요기간

새로운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은 기존의 계획을 수정하는 것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계획수립이 익숙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학습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새로운 전략계획 수립은 대개 6~9개월이 걸리는 장기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구성원이 바뀌는 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의 경우에는 계획 과정에 가능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계획수립팀의 효율적인 역할 배분

계획수립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조직은 5~7명의 연구팀과 부처의 관리자들 로 이루어진 2~3명의 지원팀이 가장 이상적이다.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도시 전반의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므로 효율적인 계획수립을 위해 전략계획의 내용과 성격별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검토내용을 총괄하는 팀을 구성하여 운용할 것을 권장한다. 전략계획 수립기간 중 계획수립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은 폭넓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브레인스토밍 회의에 참여하고, 3~5명으로 구성된 핵심그룹은 전략계획 수립과정과 최종 계획에 대한 초안 작성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전 과정에 상시 관여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9) 미국의 에너지성(DOE) 전략계획 수립지침에서는 계획 기간을 최소 10년, 장기 계획을 40년의 틀로 설정하고 있음

□ 계획수립 과정에서의 참여방식

전략적 목표와 핵심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은 반드시 업무현장을 벗어나 모든 핵심관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며 현장업무에서 벗어나 전략적 목표와 전략 수립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을 전략계획 수립과정에 참여시키면 계획수립 과정의 생산성과 효율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다.

□ 결과물의 형태

계획수립 전담팀에서는 부처내의 일선 조직이나 관련부처, 지자체 등에서 수행하게 될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예산 계획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지침을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최종결과물에는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요약본이 제공되는 것이 좋으며, 요약본은 대략 10페이지를 넘지 않고 서술방식도 개조식 등 단순한 형식을 채택한다. 요약본에는 계획수립 전담팀에서 작업한 주요 결과물로서 핵심적인 현황분석 요소들, 그리고 핵심적인 전략목표와 성과지표, 구체적인 전략에 대한 요약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계획의 검토 및 수정

전략계획은 현시점에서의 최선의 계획이란 사실을 이해하고, 미래사회의 새로운 기회와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계획의 내용에 대해서는 1년에 1번씩 검토가 필요¹⁰⁾하며 계획에 대한 검토가 가능한 자주 이루어질수록 있도록 계획수립 전담팀을 상시 운영하거나 필요시 운용 가능한 형태로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연차별 계획내용 검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항은 사회의 변화에 따른 요구의 변화, 법규·경제·기술 등의 변화양상에 대한 현황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핵심전략의 수정이며 이를 조직내에 피드백 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2) 계획의 핵심요소에 대한 이해

□ 미션에 대한 정의(Mission Statement)

미션을 정의하는 것은 임무를 명확히 설정해 주는 작업으로 직무가 명확히 규정되면 업무의 폭이 좁아지고 주어진 업무에 집중하여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

10) 건축기본법 제15조에서는 건축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년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건축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시행할 예정임

행할 수 있게 된다. 미션은 계획수립 전담팀과 핵심관리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집중토론을 통해 함축된 의미로 표현되는데 대개 “우리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하는가?” 라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술한다.

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는 정책의 수혜자가 특정기관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국민이 되며 계획수립에도 16개 전 부처가 관여하기 때문에 부처별로 개별적인 미션을 정의하는 작업은 생략할 수도 있다.

□ 현황 분석(Situation Analysis)

건축의 현황은 현재 우리의 건축·도시분야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분석기법들이 적용된다.

- 동향 파악 : 시장의 요구, 인구통계,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변화와 전망, 예산편성, 조직구조와 역할의 변화, 기술적 개선과 진부화, 시설물의 노화와 현대화, 고령화 등
- 강점과 약점 : 강점이란 우리가 진정으로 잘하는 것은 무엇이며 이것을 더욱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반면에 약점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질적인 장애요인이 되는 문제점들로 정의
- 벤치마킹 :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벤치마킹은 외적인 경쟁자와의 비교를 의미하며, 건축정책에서는 해외의 정책사례가 벤치마킹 대상이 됨

□ 비전의 설정

계획수립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지향점 내지는 성공적인 전략을 통해 전략적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의 미래의 우리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능한 희망적이고 진취적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용어를 선택하여 간결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 전략적 목표¹¹⁾

목표는 우리가 어떤 수단을 동원하여 도달하고자 하는 최종점 또는 계획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우리가 달성하기를 바라는 어떤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전략적 목표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 성취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데 성취도의 측정은 대개 핵심성과지표를 통해 이루어진

11) 전략계획가들은 목표(Goals)와 목적(Objectives)을 구분하여 사용하는데 관례상 “목표”를 보다 폭넓은 의미의 최종점, “목적”을 계획기간 중에 성취하고자 하는 최종점으로 구분하여 서술함. 이러한 관점에서 중장기적(5년 ~ 20년) 계획기간 중에는 전략 목적이라는 용어가 더 적당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목표와 목적을 구분없이 혼용하므로 여기서는 목적과 목표를 구분하지 않고 목표로 서술함

다.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관련부처가 많고 추진하고자 하는 전략과제가 건축·도시 전 분야에 광범위하게 걸쳐 있기 때문에 성과지표의 관리는 중점 추진과제 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전략적 이슈

전략이슈는 “우리가 원하는 곳에 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핵심적인 장애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 우리의 구체적인 활동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전략이슈는 현황분석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처한 문제점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과제)을 도출하는 과정의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전략(과제)의 도출

전략이란 우리가 정해진 목표를 향해 나아가거나 어떤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취해야 할 방향을 유도해주는 구체적인 활동을 의미하며 수년 동안 유지되는 지침(가이드)의 역할을 하므로 연차별로 수행되는 단일 프로젝트나 프로그램과 구분되며 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진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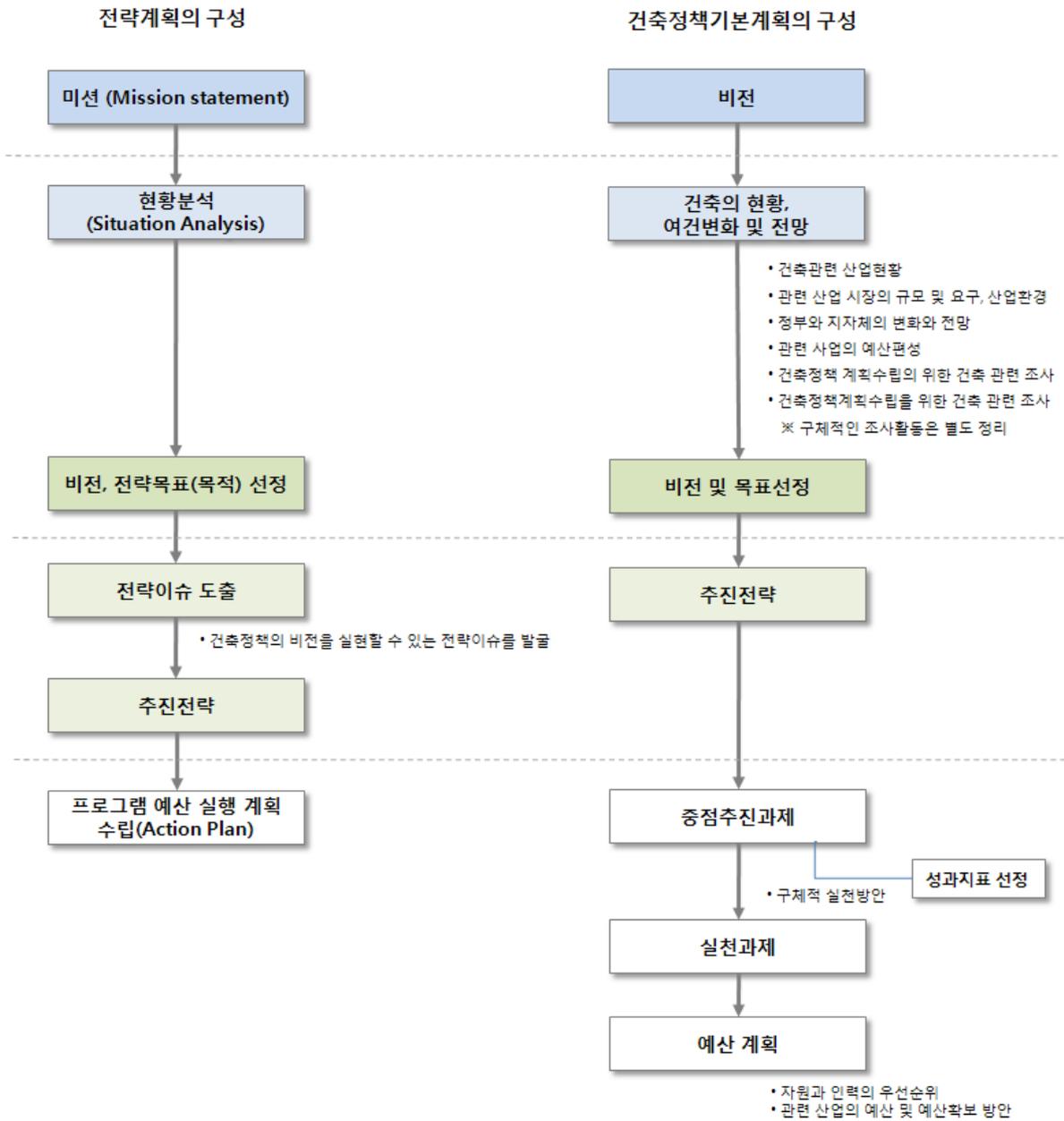
□ 후속단계 : 프로그램, 예산, 실행계획의 수립

목표와 전략과제를 도출하면 다음 단계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수립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액션(다년간의 프로그램 계획수립과 후속의 예산확보, 그리고 그 수단으로써의 프로그램)이란 전체 프로세스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전략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과 집행, 프로그램 평가와 같은 프로세스는 상호의존적이며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수행을 목적으로 작성된다. 전략계획의 수립이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고 미션을 완수하기 위한 방향을 정하는 일이라면 예산의 편성은 자원과 인력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이며, 예산의 실행은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일이다.

(3) 건축정책기본계획의 구성체계 설정

이상의 전략계획에 대한 검토와 계획의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건축정책기본계획의 구성체계도 미국의 정부성과평가법에 의해 수립되는 전략계획의 체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분야의 최상위 법정 중기계획으로 그 위상이 설정되어 있으며, 계획의 내용에 대해서는 미국의 전략계획에 근거하여 작성한 다음의 구성체계(안)을 따르는 것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그림 II-3〉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전략적 구성체계(안)

2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역할과 추진체계

1) 근거법령인 건축기본법에 대한 이해

건축의 공공성 실현을 목적으로 제정된 건축기본법은 총 5장, 2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은 건축정책의 기본이념과 용어정의 등, 2장은 건축정책의 기본방향, 3장은 건축정책의 수립, 4장은 건축정책위원회, 5장은 건축문화진흥에 관한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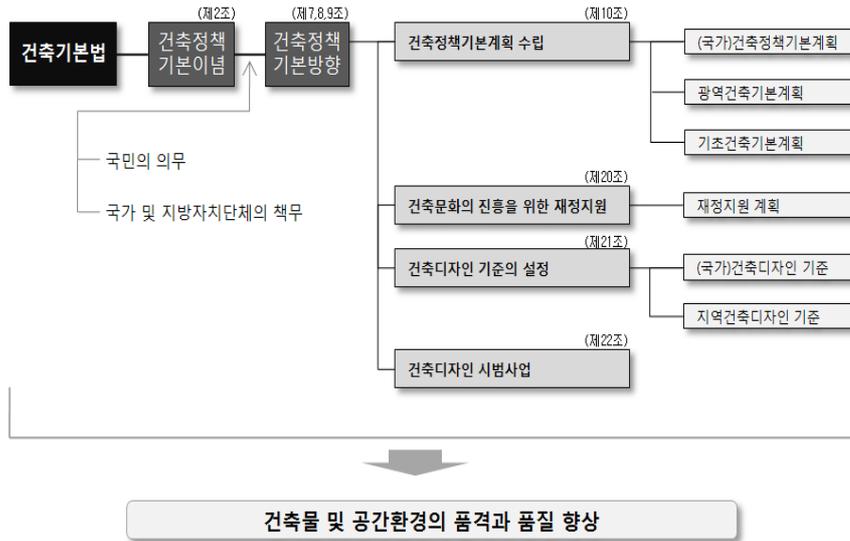
3장의 건축정책의 수립은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과 광역 및 기초의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다루며, 4장은 건축정책의 추진주체로서 건축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기능 등에 대해 다룬다.

5장의 건축문화진흥은 건축정책의 구체적인 실천수단으로서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과 건축디자인기준의 설정,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실시, 민간전문가의 참여 및 설계공모의 시행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특히 국가와 지역단위로 나누어 수립·시행되는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계획의 공간적·내용적 범주와 수립주체에 따라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 지역건축기본계획으로 구분하여 그 역할을 분명히 설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은 국가 전체의 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대하여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건축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기본계획 내용을 포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역건축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되는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에 부합하고, 각 지역의 건축적 특화를 위해 그 지역의 현황 및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수립주체, 공간적 범위에 따라 광역건축기본계획¹²⁾, 기초건축기본계획¹³⁾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12) 광역건축기본계획 : 건축기본법 제12조 제1항, 시도지사가 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13) 기초건축기본계획 :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광역건축기본계획에 따라 시·군·구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



〈그림 II-4〉 건축기본법의 구성체계

2)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역할

(1) 건축·도시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

□ 국정과제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정책수단 확보

글로벌 시대의 국가경쟁력은 다원적이고 개방적인 사회시스템을 바탕으로 정체성 있는 문화환경을 갖춘 건축·도시를 통해 얻어질 수 있다.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정책은 건축물의 품질과 공간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의 전과정에 관련된 것이다.

『선진일류국가』를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이명박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품격있고 존중받는 국가를 만들기 위한 세계적 국가브랜드 창출』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건축, 도시)디자인 정착』을 새로운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전략적 정책수단이 필요한 실정이다.

□ 도시의 환경개선을 통한 경쟁력 향상

지자체에서는 건축·도시 정책을 위해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간판, 가로시설물 등 단편적인 대상물 위주의 디자인개선

에 치중한 나머지 정작 '어떤 도시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러한 도시차원의 디자인 개선작업도 정책적 비전을 갖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개선과 피드백을 거쳐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건축정책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간파한 선진 외국에서는 문화와 역사가 어우러진 도시, 겉보다 속이 아름다운 도시, 지속 가능한(sustainable)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오래된 도시에 새로운 기능과 활력을 부여하면서 기존도시를 살리고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지속가능한 도시를 통해 계층문제, 사회갈등, 도시경제문제 등 사회·경제적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건축정책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그 힘을 얻고 그들이 창출한 지역성을 통해 세계적 가치를 지닌 도시로 거듭난다는 점에서 건축정책 추진의 출발점은 해당 지역 또는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시민에 대한 배려와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이 확보되어야 한다.

□ 지역 건축정책 추진을 통한 건축·도시 경쟁력 확보

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잣대로 인식되는 현시점에서 지역에 바탕을 둔 건축정책의 추진은 매우 큰 중요성을 지닌다. 전반적인 건축·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제공하고, 국가건축정책을 통한 지역건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건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역건축의 발전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다.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국가단위의 계획인 반면 이를 받아서 수립·시행되는 지역건축기본계획(광역 및 기초)은 지역중심의 건축정책계획으로 지역내에서 발주되는 공공청사, 문화시설 및 교육시설 등을 통해 지역의 건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미래세대를 위한 건축·도시 유산의 창출

우리의 건축·도시는 과거로부터 전해져 오는 문화적 토대에서 현 세대의 생활을 담는 그릇인 동시에 미래세대에게 넘겨줄 문화적 자산이 된다. 현재의 건축물과 공간환경이 미래세대의 문화적 자산으로서 그 가치를 충분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맥락에 바탕을 둔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한 문화적 정체성 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체계적인 건축정책의 추진을 통해 우리의 건축·도시가 문화적 정체성을 지니고 발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건축·도시 분야에서 미래 사회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언론을 통해 보는 세계적인 도시의 건축정책 성공사례〉

자료 : 조선일보 세계 디자인도시를 가다(2008.3.24~4.29 연재)

재생으로 도시를 성형하다 - 뉴욕 (2008.3.35)

수십 년 동안 과자 공장으로 쓰이던 건물이 테마가 있는 시장으로 바뀌어 첼시 마켓이 탄생되었다. 화물 운송으로 사용되던 고가 철도 하이라인(Highline)은 21세기의 생태 공원으로 개관한다. 새벽에 고기를 도매하던 시장은 상점과 레스토랑이 조화를 이루며 개발되었다. 오래된 시설을 새로운 기능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되 그 장소의 역사성을 보존하면서 이야기를 담았다. 겉으로 전혀 화려해 보이지 않지만 깊은 내용을 갖춘 성숙한 개념의 디자인이다.



디자인, 죽은 공장을 부활시키다 -독일 뒤스부르크 (2008.4.1)

환경도시 뒤스부르크(Duisburg)는 공업도시의 새로운 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뒤스부르크 환경공원은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200헥타르에 이르는 제철소 시설을 개조해 만든 공원 안으로 발을 내디디면 곳곳에서 신기한 광경이 펼쳐진다. 옛 공장의 광석 저장 벙커를 암벽훈련시설로 개조하고 옛 제철소의 가스저장탱크에 물을 채워 다이빙센터를 만들었으며 가스엔진이 있었던 공장을 개조해 컨벤션센터를 만들었다.

“사업의 상징이었던 곳에 문화를 이끄는 장소라는 새로운 인식을 심는데 시간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독일 전역에서 몰려드는 새로운 장소가 되었다.”: 디르크 뷔슈니히 뒤스부르크 환경공원 대표



걷고 싶은 도시디자인 - 프랑스 파리 (2008.4.7)

'레 알' 지구의 지하 쇼핑몰 주변을 4만㎡의 '환경 공원'으로, 와인 저장 창고를 녹색공간으로, 재개발 하여 걷고 싶은 도시를 지향한다. 또한 예술 문화 복합 건물을 투명한 채광창으로 만들어 지하 공간에도 지상의 '빛'이 쏘이도록 하였다. 철길을 재개발한 '프롬나드 플랑테(Promenade plantee·나무와 식물이 가득한 산책길)'는 지금은 폐쇄된 바스티유역에서 파리 동남쪽까지 4.5km에 이르는 철길을 산책로로 바꾼 것으로 미국 뉴욕 하이라인, 시카고 블루밍데일 트레일 등의 모델이 되었다.





'플뿌리 디자인'의 힘 - 일본 마나즈루·가와고에·요코하마 (2008.4.15)

주민이 디자인 전문가로서 그들이 이미지를 만들었다. 작은 어촌마을 마나즈루(眞鶴)와 전통도시 가와고에(川越) 이 지역의 디자인 파워는 바로 '주민'이다. 마나즈루 주민이 만든 '미의 기준'이라는 이름의 디자인 가이드북을 집집마다 가지고 있다. '미의 기준' 덕에 마나즈루에선 우리네 어촌에서 볼 수 있는 공해 수준의 횡집·모텔 간판을 찾아볼 수 없다. 카와고에시의 재탄생은 양질의 환경확보와 거리질서 만드는 일에 주력했다. 지역 주민 스스로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의 디자인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공공디자인이 단순한 도시 외관 디자인이 아니라 '삶의 디자인'으로 승화된다.



계층간·인종간 장벽 없애는 도시디자인 - 영국 런던·웨일스 (2008.4.22)

폐광을 식물원으로, 슬럼가를 문화 광장으로 탈바꿈시켰다. 일 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를 젊어지게 되었으며 흑인·이민자들의 쉼터로도 활용되고 있다. 낙후된 지역에 랜드 마크를 하나씩 세워 주변 지역까지 자연스럽게 발전되는 방식을 택했다 '디자인 포 런던(Design for London)이 발표한 '공공 공간 100대 개발 프로젝트'는 낙후지역에 도서관을 짓거나 광장, 공원을 단장하는 등 100군데의 공공 공간을 새롭게 바꾸는 계획이다.



소외계층 겨ான 도시디자인 -스페인 바르셀로나 (2008.4.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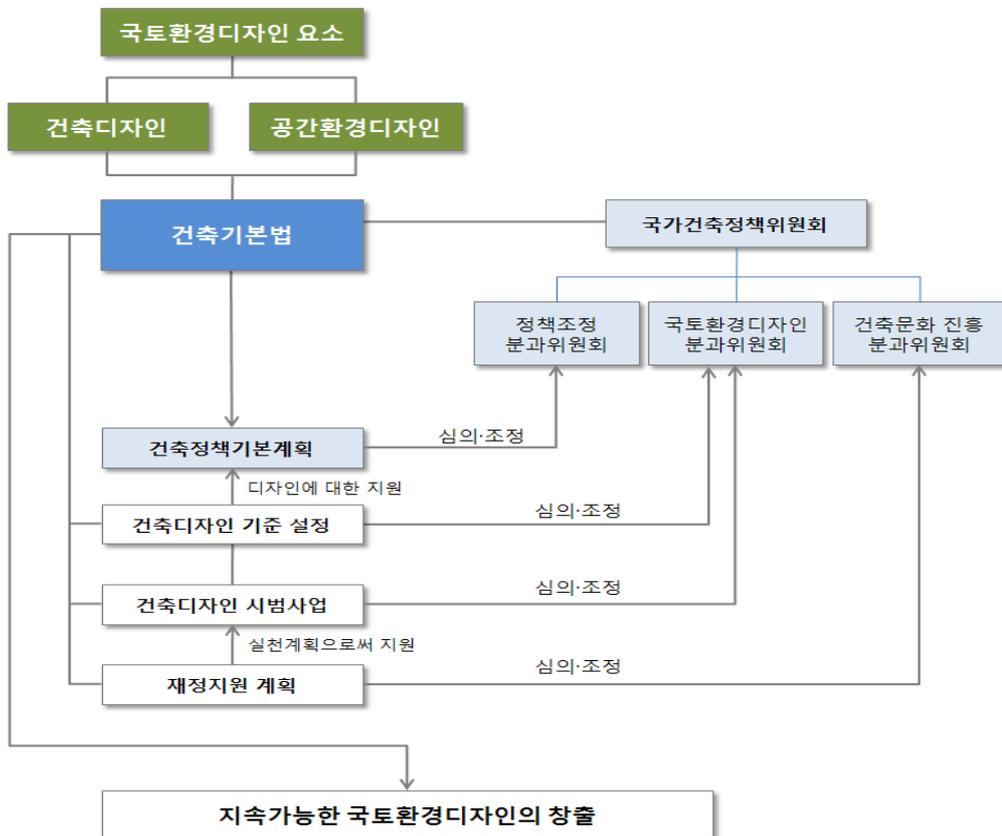
좁은 골목과 다닥다닥 붙은 작은 아파트에 이민자들이 모여 살던 지저분한 곳이 시가 주도한 '아름다운 라발 만들기' 운동과 디자이너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트렌디한 장소가 되었다. 예술적으로 도태돼 있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바르셀로나시가 직접 '예술적 수혈'을 실시하였다. 낮은 건물을 현대적 감각이 돋보이도록 새 단장 하였다. 또한 항구에서 포럼에 이르는 해안가를 개발하여 사람들이 바다도 도시의 일부로 끌어안기 시작하면서 지중해 최고의 해양도시로 발돋움하였다.



(2) 국토환경디자인 업그레이드를 위한 정책추진

□ 국토환경디자인 관리체계의 정비

건축정책은 전국토의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대상으로 하며, 지금까지 개발과 관리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어 온 국토환경에 대해 디자인의 개념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책분야이다. 국토환경디자인은 국토공간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건축, 도시, 조정, 경관 등 관련분야의 협업을 통해 국토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획, 설계, 조성,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국토환경디자인의 관리는 향후 수립될 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 전략적 과제를 도출하고 건축기본법에서 규정한 건축디자인기준의 설정과 건축디자인시범사업, 민간전문가 참여 등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심의·조정을 통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II-5〉 건축기본법의 국토환경디자인 FRAMEWORK

□ 지속가능한 국토환경디자인 정책의 추진

저탄소 녹색성장을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새로운 국가성장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현 정부의 효율적인 국정과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의 건축·도시 분야에서도 국토환경디자인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의 발전모델과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국가전체의 에너지소비와 이산화탄소의 배출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물부문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저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의 창출을 핵심적인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건축문화 진흥정책을 통한 국가의 품격 향상

□ 우수한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와 장려

잘 디자인된 건축물과 공간환경은 도시의 이미지를 결정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치르게 되는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대가는 지속적으로 시민의 생활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에서 프랑스 파리의 몽파르나스 타워는 도시맥락과 어울리지 않는 거대건축물로 인근 주민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후 도시경관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규제¹⁴⁾를 탄생시킨 예로 소개되고 있다.

좋은 디자인이 거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여러 가지 증거들¹⁵⁾로부터 확인이 가능한 부분인데 잘 디자인된 병원건물이 환자의 입원기간을 줄이고 회복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잘 디자인된 학교건물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무단결석이 줄어들고 교직원의 이직율도 줄어들고, 잘 디자인된 주택과 가로경관은 해당지역 공동체의 커뮤니티를 결속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여기서 좋은 디자인이란 단순히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대한 설계가 잘 되었다는 의미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모든 계층의 주민들이 동등하게 즐길

〈파리 몽파르나스 타워 전경〉



14) 휴조(Le Fuseaux) 규제 : 파리지 외곽지역에서 기존의 도시체계와 경관에 대한 고려 없이 세워진 거대건축물인 몽파르나스 타워가 파리 시민들에게 경관과괴의 원흉으로 인식되면서 이후 이러한 건축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파리 시내뿐만 아니라 배후지역에 대해서도 연장 25km에 걸쳐 도시경관을 규제하는 새로운 입체규제가 제안됨

15) 스코틀랜드 건축정책, "Building Our Legacy", Statement on Scotland's Architecture Policy 2007, (학교 설계 미래의 건축 : 스코틀랜드의 학교 자산 부문)

수 있고,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가치를 지향하는, 디자인의 사회적, 경제적 의미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는 공공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중심으로 특히 좋은 디자인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도시와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선도적인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하여야 한다.

□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시책의 추진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건축문화는 국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품격, 나아가 국가의 품격을 결정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며, 외국인들에게는 관광의 주요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산업적인 중요성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립, 출판·전시·축제 등 건축문화산업에 대한 지원, 국민의 건축에 대한 홍보와 이해증진, 우리 건축문화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등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는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미래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3) 건축정책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1) 건축·도시 관련사업의 통합조정자 역할

□ 부처별 건축·도시 관련사업의 통합관리

중앙부처의 사업영역에는 건축·도시 관련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술력의 축적이나 사업간 연계·조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건축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16개 관련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범부처 위원회로 부처간 사업의 조정이나 연계 등 통합관리가 가능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 부처간 유사사업의 통합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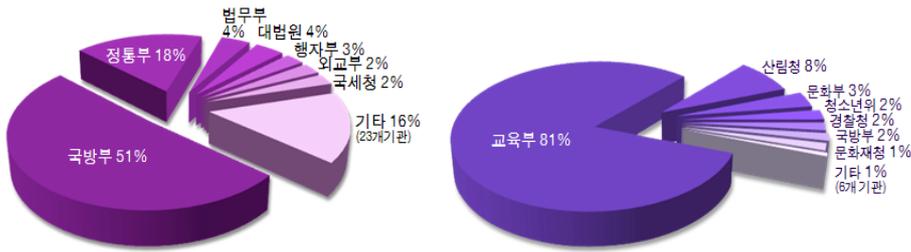
중앙부처에서 직접 추진하는 건축·도시 관련사업은 부처의 성격과 임무에 따라 특화된 분야에서 다양하게 추진되지만 중앙부처의 지원을 받아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그 성격이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관련부처의 대표적인 지역 지원사업인 마을만들기 관련사업을 예를 들어 살펴보면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문화관광부, 농림수산부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추진

하고 있으나 그 성격이 유사한 경우가 많아 지역별로 중복지원이나 지역편중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설립되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중앙부처의 사업에 대한 연계·조정을 담당하고, 지역에 설립되는 지역건축정책위원회가 지역내에서의 사업간 연계·조정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특히 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건축·도시 관련사업에 대해서는 건축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직될 민간전문가 그룹이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II-4〉 부처별 건축·도시 관련사업 현황

주무부처	포함범위
기획재정부	-
지식경제부	지방산업단지 지원 등
농림수산식품부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 박물관·도서관 등, 생활체육공원조성, 문화관광자원 개발, 관광지개발사업 등
국토해양부	공항터미널, 국가산단, 도시공원 등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학원시설, 개별 대학의 시설 건립, 과학관, 연구단지, 실험동, 기숙사, 강의동, 박물관(다양한 R&D 및 산학협력을 위한 시설물 건립사업)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청소년 복지시설 등
여성부	보육·보호시설 환경개선사업 등
행정안전부	청사, 패키지 지자체지원(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공원조성사업, 주거환경 개선, 거리 및 상가 조성 등)
외교통상부	대사관, 청사·관저 등
통일부	-
국방부	군 숙소·의무·교육시설, 국방시설본부 신축사업, 병영생활관 개선사업 등
법무부	교정·보호감찰 및 지검청사 시설 등
환경부	하천정화 및 상수원 등, 건축제한, 생태관 건립, 국립공원 내 건물 지원사업 등
노동부	-



정사시설 부처별 투자현황

교육시설 부처별 투자현황

〈그림 II-6〉 정사시설과 교육시설에 대한 부처별 투자현황('06년기준)

자료: 건설위 정책보고서, 2007년



〈그림 II-7〉 부처별로 개별적 사업추진에 따른 시너지효과 미흡 사례

자료: 건설위 정책보고서, 2007년

〈표 II-5〉 관련부처 지원사업의 유사성 : 마을만들기 관련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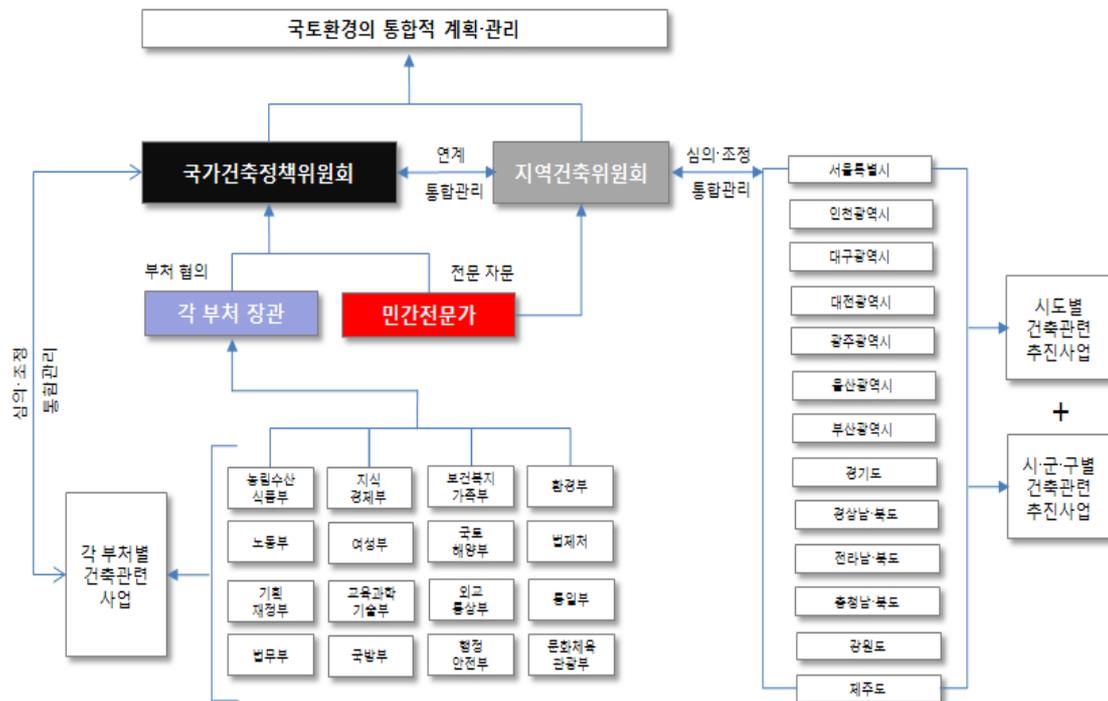
사업	목적 및 목표	부처
문화소외 지역 생활 친화적 문화환경 조성(05)	생활친화적 농어촌 문화환경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농어촌 생활공간환경 디자인 개선 공모(05~06)	공간의 심미적 쾌적감 및 주민 의식 제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역사 마을 가꾸기(04~09)	관광자원화를 통해 주민소득증대 등 정주민족도 제고	문화체육관광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07~)	공공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국토균형발전	국토해양부
소도읍 육성사업(04~06)	대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소도읍의 기능 회복	행정안전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02~)	국토균형발전	행정안전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04~14)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소득기반확충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03~)	마을공동시설과 농촌활동프로그램의 정비	농림수산식품부
전원마을조성사업(04~13)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	농림수산식품부
산촌생태마을조성(05~)	낙후된 산촌 진흥	농림수산식품부
어촌종합개발사업(94~07)	어촌의 환경개선, 소득기반 및 관광시설 개선	농림수산식품부
어촌관광체험마을조성사업(01~13)	관광기반시설 조성으로 소득증대 및 활성화 도모	농림수산식품부

자료 : 충남발전연구원(2007)

(2) 주요 건축·도시 관련정책에 대한 심의·조정

□ 건축정책기본계획에 관한 심의·조정

건축정책위원회는 국가 및 지역에서 5년 단위로 수립·시행되는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과 지역건축기본계획에 대한 심의·조정을 통해 바람직한 건축정책의 방향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11-8〉 건축정책위원회의 역할 : 건축·도시 관련사업의 통합조정

□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의 심의·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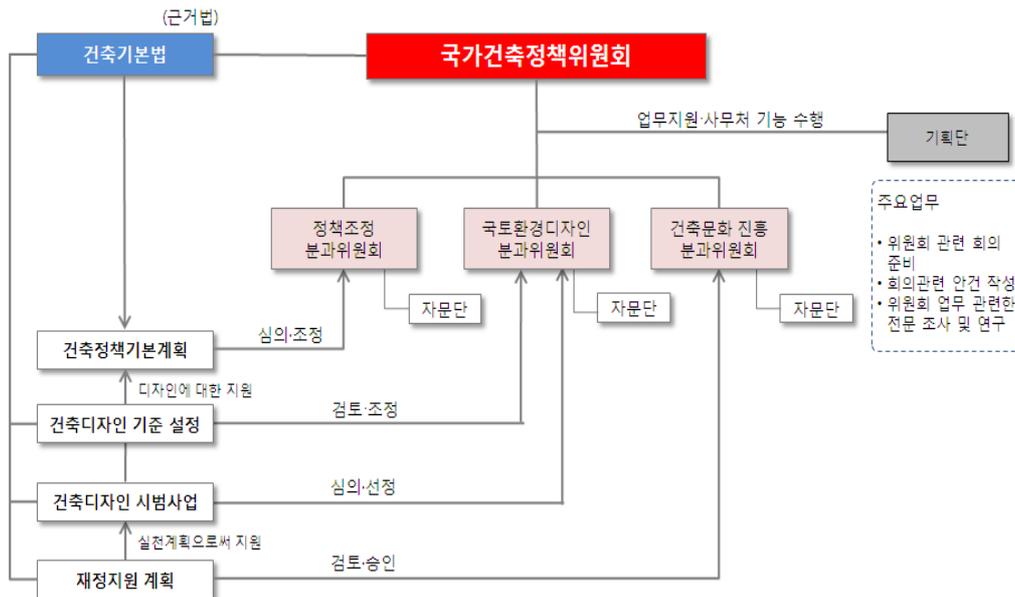
건축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건축기본법에서 명시한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제20조),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제21조),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제22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심의·조정을 담당한다.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은 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1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국고보조 등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규모와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정지

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이때 건축정책위원회가 해당 계획에 대해 심의·조정을 담당한다.

‘건축디자인 기준¹⁶⁾의 설정’은 건축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건축물 및 공간환경디자인에 대한 기본방향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구체적인 디자인기준의 설정시에는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은 건축정책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실천적인 공공프로젝트를 통해 국민의 건축정책에 대한 문화적 인식을 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며 시범사업의 지정, 절차, 대상사업 등에 관해 건축정책위원회가 심의를 담당한다.



〈그림 II-9〉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의한 건축정책의 심의·조정

16) 여기서 말하는 ‘건축디자인 기준’이라 함은 디자인의 물리적 요소로서의 기준 뿐만이 아닌 건축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본이념인 공간환경을 삶의 공간적 토대로서 안정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를 만드는 전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을 의미

시스템 디자인은 건축물 및 공간환경디자인을 통합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장소로서의 공간환경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디자인 전과정을 말하며, 이는 건축기본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사항임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조직구성

위원장 1인(대통령 임명)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관계장관 16명, 민간위원 13명¹⁷⁾)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업무지원과 사무처 기능을 수행하는 기획단을 별도로 구성하고 기획단의 단장은 국토환경비서관이 겸직하는 체계이다. 건축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와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에는 별도의 정책조정, 국토환경디자인, 건축문화진흥에 관한 3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할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 분과위원회의 역할 ¹⁸⁾

정책조정 분과위원회는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심의·조정, 중앙행정기관간 건축정책의 조정,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기획·설계 등에 대한 심의·조정, 건축제도의 개선, 기타 타 분과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담당한다.

국토환경디자인 분과위원회는 건축디자인 향상,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민간전문가의 추천, 지속가능한 경관조성 및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에 대해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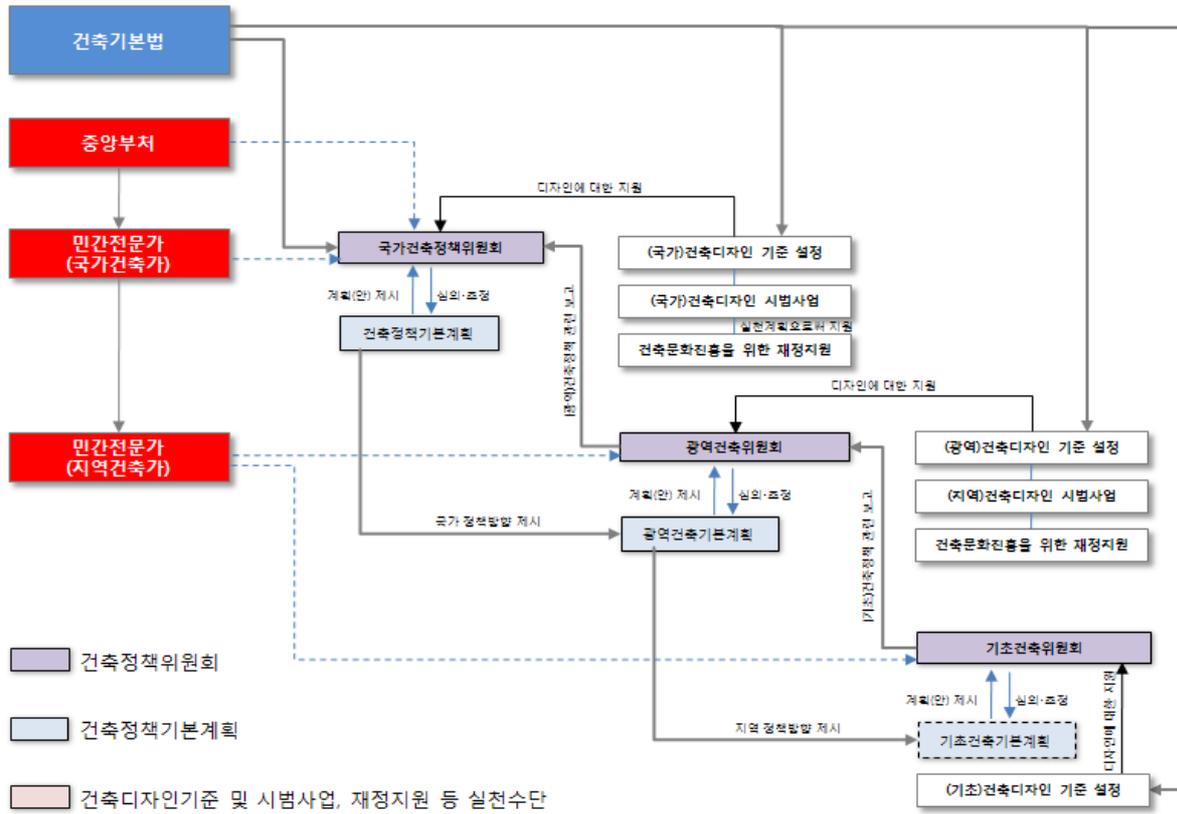
건축문화진흥 분과위원회는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 기초 및 전문 건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 건축교육정책, 건축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원, 우수 설계기법의 연구 지원 및 첨단기술의 개발 지원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3) 건축정책위원회와 건축정책기본계획의 관계설정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정책의 구체적인 실행수단인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심의·조정을 통해 국가적인 건축·도시 관련사업의 체계적인 수행과 통합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조정자의 역할을 지닌다. 또한, 건축기본법에 의해 건축정책기본계획과 함께 추진하는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등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심의·조정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실현을 모색하는 역할을 한다.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차원에서 수립되는 계획이지만 이를 근거로 광역과 기초 지자체에서 수립되는 지역건축기본계획은 각각 광역과 기초건축위원회가 그 심의·조정을 담당하여 국가와 지역의 건축정책에 관한 연계가 가능하다.

17) 건축기본법 제13조 제3항에 근거하여 민간위원은 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 자로 정함

18)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분과위원별 기능을 명시



〈그림 II-10〉 건축정책위원회와 건축정책기본계획의 관계

3

선진국의 건축정책 사례 분석

1) 선진국의 건축정책 추진 현황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건축정책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천수단 확보를 위한 운영체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먼저 건축정책을 국가 주요 정책으로 정착시킨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선진국의 건축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가 처한 현실과 역사적, 문화적 배경, 그리고 법적, 제도적 틀 속에서 건축정책의 위치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성공적인 건축정책을 통해 국가의 문화, 산업적 위상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국가들로는 영국과 네덜란드, 독일, 핀란드 등 유럽연합의 국가들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건축정책 수립을 위한 역할모델로써 네덜란드, 핀란드, 스코틀랜드, 영국(England) 등의 건축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유럽연합의 건축정책에 관한 개괄

□ 영국의 건축정책 추진사항

1999년부터 매년 건축정책 추진현황을 정리한 연간보고서를 발간하고, 2년에 한 번씩 전략서를 발행하고 있다. CABE¹⁹⁾는 정부의 건축정책에 관한 연간보고서를 발행하고 주요 정책에 관한 전략을 수립하여 보고하며 2005년에는 CABE에서 영국의 그간의 건축정책에 관한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정리한 위원회 활동 리부를 발행하였다. 2007년에는 공공을 포함한 발주자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지침서를 발행함으로써 건축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2000년에 발행된 ‘좀 더 나은 공공 건축물, 미래를 위한 자랑스러운 건축유산’을 시작으로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보고하고 있다.

19) the Commission for Architecture and the Built Environment, 현재 법령에 의해 공인된 정부자문 조직으로서 16명의 위원들과 이를 전담지원하는 100여명의 관리부서로 구성

〈표 II-6〉 영국의 건축정책 추진현황

수립연도	건축 정책현황
2000	연간보고서 1999-2000 (Annual report and accounts 1999-2000)
2000	좀 더 나은 공공 건축물, 미래를 위한 자랑스러운 건축 유산 (Better Public Buildings, a proud legacy for the future)
2001	연간보고서 2001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01)
2002	CABE 전략서 2002-2005 (CABE-corporate strategy 2002-2005)
2002	연간보고서 2002 : 장소의 감각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02: Sense of Place)
2003	기업 전략서 2003/04-2005/06 (Corporate Strategy 2003/04-2005/06)
2003	연간 보고서 2003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03)
2004	전략서 2004-2007 : 이웃으로의 변화 (Corporate strategy 2004-2007: transforming neighbourhoods)
2004	연간 보고서 2004 : 우리의 건축물, 우리의 장소, 우리의 삶 (ANNUAL REPORT & ACCOUNTS 2004 Our buildings, Our spaces, Our lives)
2005	CABE 연간 보고서 2005 : 누구의 장소인가? (CABE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05 Whose place is it anyway?)
2006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는 무엇을 하고 무엇이 문제인가? (Who we are, what we do, why it matter)
2006	CABE 전략서 2006-2008 (CABE Corporate strategy 2006 - 2008)
2006	CABE의 활동, 연간 리뷰 2005 (CABE Works, here's how Annual review 2005)
2006	더 나은 공공 건축물 - 진행 보고서 (Better Public Buildings - Progress Report)
2007	CABE 연간 리뷰 보고서 2006-2007 (CABE counts: Annual review 2006/07)
2007	CABE 연간 보고서 2006-2007 : 재정적인 보고 (CABE annual report 2006/07: financial statements and accounts)
2007	'공간을 만드는 사람' 사용 설명서 (Spaceshaper A user's guide)

□ 네덜란드의 건축정책

1997년 세계 최초로 국가 건축정책의 중장기적 비전과 목표를 담은 『공간의 건축』이라는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2000년 이후 공식적으로 『건축정책』이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정책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2020년을 장기적 목표연도로 설정하여 전 국토 대상의 공간환경 계획을 담은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전략과제를 담은 건축정책계획을 세계 최초로 수립하여 시행 중이다. 2005년~2008년의 기간중에는 공간계획과 문화정책을 통합하고, 건축정책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행동 프로그램을 작성하였으며, 2006년에는 VROM²⁰⁾의 정책아젠다를 발표하였다.

〈표 II-7〉 네덜란드의 건축정책 현황

수립연도	건축 정책현황
1996	공간의 건축 1997-2000 (Architecture of Space 1997-2000)
2000	건축 정책 2001-2004 ("OntwerpenaanNederland", Architectural Policy2001-2004)
2000	국가정책 문서 - 공간 계획 2000-2020 (Summary: Making space, sharing space 5th National Policy Document on Spatial Planning 2000/2020)
2001	국가정책 문서에 관한 권고 (summary: Recommendations on the Fifth Policy Document on Spatial Planning)
2005	공간 계획, 문화 건축 정책의 행동 프로그램 2005-2008 (Action Programme on Spatial Planning and Culture, Architecture and Belvedere Policy 2005-2008)
2005	공간 계획, 문화 건축 정책의 행동 프로그램 2005-2008 요약문 (Action Programme on Spatial Planning and Culture Architecture and Belvedere Policy 2005-2008 Summary)
2005	장소와 문화를 위한 행동 프로그램 (Actieprogramma Ruimte en Cultuur - brief)
2006	국제적인 VROM의 아젠다 (International VROM agenda)
2006	국가의 공간 전략 요약문 (NATIONAL SPATIAL STRATEGY summary)

20) The Ministry of Housing, Spatial Planning and the Environment (Dutch: Ministerie van Volkshuisvesting, Ruimtelijke Ordening en Milieu or VROM)

□ 스코틀랜드의 건축정책

1999년 『스코틀랜드의 건축정책 개발』이라는 정책문서 발행을 시작으로 2001년 국가차원의 디자인정책 성명서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구체적인 건축정책의 틀을 제시하였다. 2005년에는 그간의 건축정책 전개과정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후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새로운 건축정책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06년에는 다시 스코틀랜드의 건축정책을 문화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리뷰를 발행하였으며 2007년에는 스코틀랜드의 건축유산에 대한 가치의 재발견과 건축유산의 보호육성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표 II-8〉 스코틀랜드의 건축 정책 현황

수립연도	건축 정책현황
1999	스코틀랜드 건축정책의 발전 (The Development of a Policy on Architecture for Scotland)
2001	스코틀랜드의 디자인 정책서 (Designing Places A Policy Statement for Scotland)
2001	스코틀랜드의 건축정책 (A Policy on Architecture for Scotland - full document)
2005	스코틀랜드의 건축정책 발전 보고서 2005 (A Policy on Architecture for Scotland PROGRESS REPORT 2005)
2005	스코틀랜드의 계획정책 문서 (the Scottish Planning Policy document, SPP 20)
2006	스코틀랜드 계획결의서 (Planning etc. (Scotland) Act 2006)
2006	스코틀랜드의 문화 : 문화 리뷰에 대한 행정적인 반응 (Scotland's Culture: Scottish Executive Response on the Cultural Review)
2007	스코틀랜드 건축정책 건축유산 성명서 : 우리의 건축유산 (Building Our Legacy, Statement on Scotland's Architecture Policy 2)

□ 기타 여러 국가의 건축정책

2000년을 전후하여 선제적인 국가들의 건축정책 추진과 그 성공에 고무되어 세계적으로 건축에 관한 각종 정책서를 경쟁적으로 발간하기 시작하였는데 핀란드는 1998년에 정부차원의 건축정책 문서를 발간하고 건축정책의 국가의 주요정책으로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1977년에 건축 법령을 만들고, 1999년에는 공공건축의 품질향상을 위한 행정부처의 사명에 대한 논의를 통해 공공건축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2002년에는 공공건축에 대한 공공기관의 권한을 담은 문서를 발간하였다. 독일은 2001년에 건축문화의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만들고, 이듬해 주요 도시의 건축문화 관련프로젝트를 모은 자료집을 발간하였

으며, 이 후 연방정부보고서를 통해 정부차원에서 건축문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 2003년에는 건축문화에 관한 총회를 열고 그 내용을 정리한 문서를 발간하였다. 2003년부터는 이탈리아, 북아일랜드, 캐나다, 덴마크 등의 나라에서 건축의 품질 향상과 아름다운 도시만들기를 위한 정책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표 II-9〉 기타 국가들의 건축정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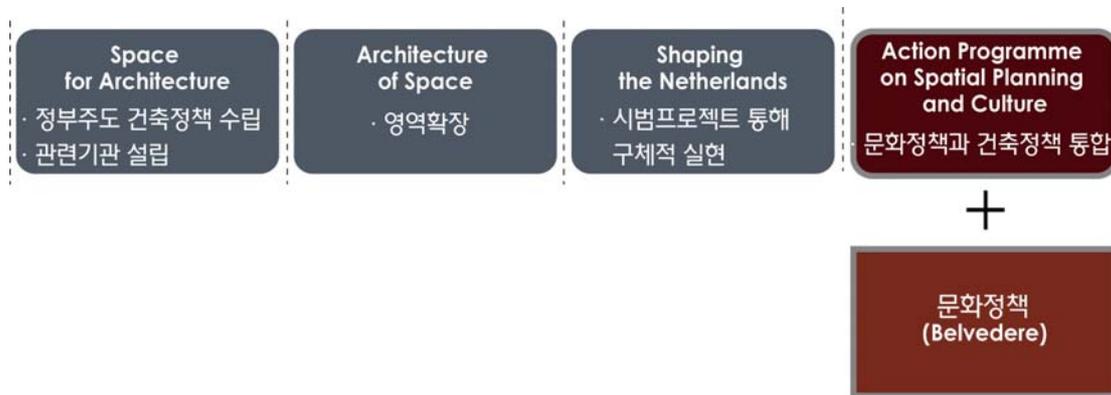
구분	건축 정책현황	수립연도
핀란드	핀란드 정부의 건축정책 (Finnish Government's Architectural Policy)	1998
	건축의 발견 (Discovering Architecture)	2001
프랑스	건축법령 (Loi n° 77-2 sur l'architecture)	1977
	공공건축의 질을 위한 행정부처의 사명 (Inter-ministerial Mission of Quality in Public Construction: Quality in Public Construction)	1999
	유럽에서 프로젝트자문의 공공적 권한 (The attribution of public contracts to project consultants in Europe)	2002
독일	첫 번째 상황보고서 - 건축문화 현황, 발전 (1st Status Report on Building Culture in Germany - Situation, development and recommendations)	2001
	'도시의 건축문화' 관련 프로젝트 모음집 (Project collection "building culture in cities and municipalities")	2002
	연방 정부 보고서 (Report of the Federal Government over the initiative Architektur and building culture)	2002
	핀란드의 건축 (Architektur und Baukultur in Finnland)	2003
	건축문화 총회 보고서 (Report on the 1. Convention of the building culture)	2003
이탈리아	건축적 질에 관한 법 (Law for Architectural Quality: "Legge-quadro Sulla Qualita Architettonica" 2003)	2003
북아일랜드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정책, 전략, 실행 (Architecture and the Built Environment - policies, strategies and actions 2003, Architecture and the Built Environment for Northern Ireland 2005)	2003
EU	건축과 삶의 질 (Architecture & Quality of life- EUROP 2004)	2004
캐나다	모범적인 건축 정책을 위한 자문 (A Consultation Paper on a Model Architecture Policy 2005)	2005
덴마크	정부의 건축 정책 2007 (THE GOVERNMENT'S ARCHITECTURAL POLICY 2007: "A NATION OF ARCHITECTURE - DENMARK")	2007

(2) 건축정책의 운영 및 추진체계

□ 네덜란드의 단계별 추진전략과 국가자문위원회

네덜란드의 건축정책은 20년 이상의 장기적 국가비전을 설정하고 단계별로 중기적 정책을 추진하는 전략적 틀을 구축한 것이 특징인데 1단계의 기반구축을 시작으로 2단계의 영역확장, 3단계의 시범프로젝트 운영을 거쳐 현재는 4단계 건축정책계획으로 건축정책과 문화정책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 1단계 : Space for Architecture(1991~) : 건축관련 인프라의 조성 및 관련기관 설립을 주도
- 2단계 : Architecture of Space(1996~) : 도시개발과 조경, 기반시설을 포함하는 영역으로 건축정책의 규모를 확장
- 3단계 : Shaping the Netherlands(2000~) : 9개의 대형 국가시범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그간의 건축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
- 4단계 : Action Programme on Spatial Planning and Culture(2005~) : 건축정책과 문화정책을 접목한 새로운 건축문화정책의 추진



〈그림 II-11〉 네덜란드 건축정책의 단계별 추진전략

현재 진행중인 4단계의 건축정책계획에서는 건축과 문화정책의 통합, 공간의 질적 향상, 설계발주방식의 개선, 시범프로젝트의 실천 등을 전략과제로 채택하고 시범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한 법적인 틀의 구축과 투자 프로그램, 관련 지식개발 등을 실천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내에서 주요 건축·도시 관련 사업과 문화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들²¹⁾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관한 정책자문을 수행하는 국가자문위원회와 국가건축가를 두고 있는데 국가자문위원회는 해당 부처의 건축·도시 관련 주요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진행방식에 대해 자문하며 건축에 관한 효율적인 계획 및 설계와 공간계획과 문화에 대한 실천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을 전담한다. 국가건축가는 정부에서 직접 임명하고, 주로 주택공간계획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건축설계 및 문화유산, 조형예술 관련업무에 대해 자문하며 국가건축물에 대한 관리, 인프라 확충, 조경분야의 확대, 법률제정과 규칙제정 등 건축도시공간의 질적 확보와 관련교육 증진 사항을 전담한다. 국가건축가의 활동을 지원하는 국가건축가사무실에는 건축 및 공간계획, 문화유산, 시각(공공)예술과 정책개발을 담당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업무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전문가들이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가 주요 건축정책 사업에 대한 방향 설정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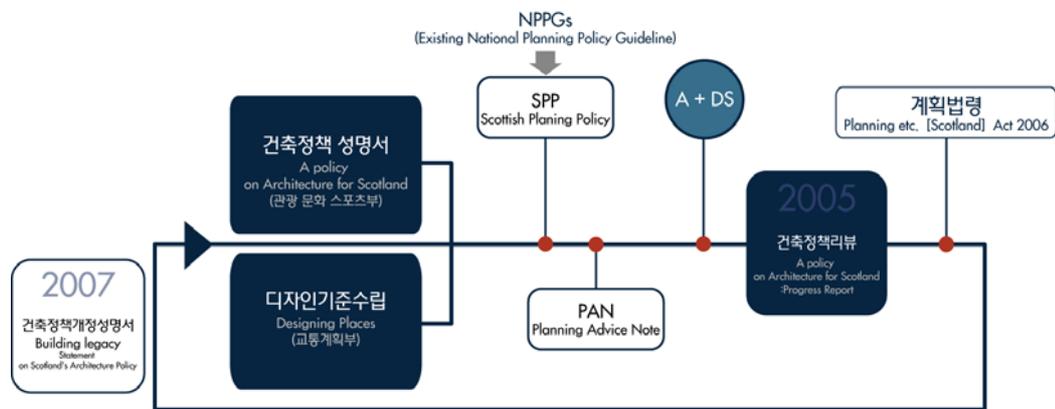


〈그림 II-12〉 네덜란드 국가건축가 조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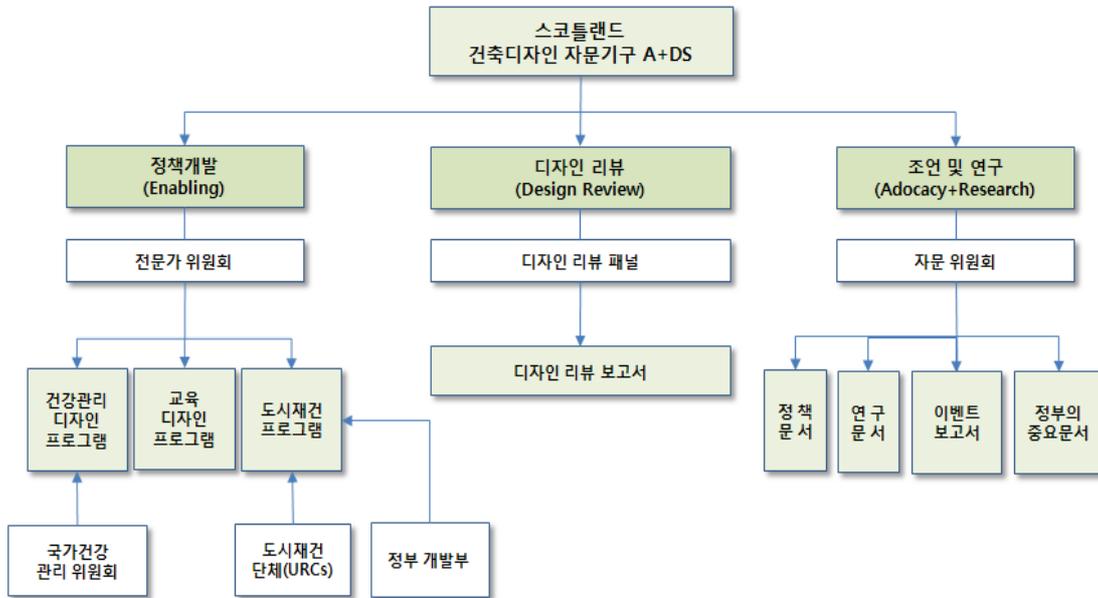
21) 교육문화과학부(OCW), 주택공간계획환경부(VROM), 농업자연식품부(LNV), 교통공공시설 수자원관리부(V&W), 경제부(EZ), 외교부(BuZa), 국방부(Defensie)의 7개 부처가 이에 해당

□ 스코틀랜드의 건축디자인위원회

국가차원에서 건축과 디자인 관련정책을 자문하는 A+DS(Architecture and Design Scotland, 건축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하고 건축정책과 디자인기준을 담은 디자인정책 문서(Designing Places)을 발간하였으며, 계획에 관한 법령(Planning Act 2006)을 입안하여 법적 효력을 확보하고 있다. 2005년에 설립된 A+DS는 건축 및 디자인정책에 대한 폭넓은 자문을 위해 기존의 왕립 순수예술위원회(Royal Fine Art Commission for Scotland [RFACS])를 대체하였으며 총 34의 위원과 산하에 12명의 자문위원 및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디자인리뷰패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A+DS는 공공사업의 계획 및 발주과정에 참여하며 개별 건축물뿐만 아니라 병원과 학교 등의 시설물과 도시 및 전원개발에 관한 디자인영역까지 관여하여 우수한 디자인을 장려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A+DS의 역할에 대해서는 스코틀랜드 디자인정책(Scottish Planning Policy) SPP 20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건축·도시 관련사업의 설계 질을 높이고 우수한 디자인 채택을 유도하며 계획전반에 관한 조언뿐만 아니라 디자인리뷰(Design Review)를 통한 지원과 관련연구 및 홍보활동 등에 대한 책임도 다하고 있다.



〈그림 II-13〉 스코틀랜드 건축정책의 추진체계



〈그림 II-14〉 스코틀랜드 건축디자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체계

□ 영국의 건축위원회(CABE)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지는 건축과 도시계획, 공공공간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은 1999년에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독립기관으로 설립된 건축위원회²²⁾(CABE, Commission for Architecture and the Built Environment)가 담당하며, 건축위원회는 16명의 위원으로 구성²³⁾되고, 위원회 산하에 40여명의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디자인리뷰패널과 100여명의 업무지원팀이 있다. 건축위원회는 디자인 리뷰를 통해 정부 및 지자체의 주요 건축물과 공공공간 프로젝트의 발주자, 개발업자, 건축가 등에 대한 조언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심의를 담당하는 주요 건축·도시계획 사업 등에 대한 직접적인 권고를 통한 공공건축의 디자인 개선과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전문 디자인기술 지원, 그리고 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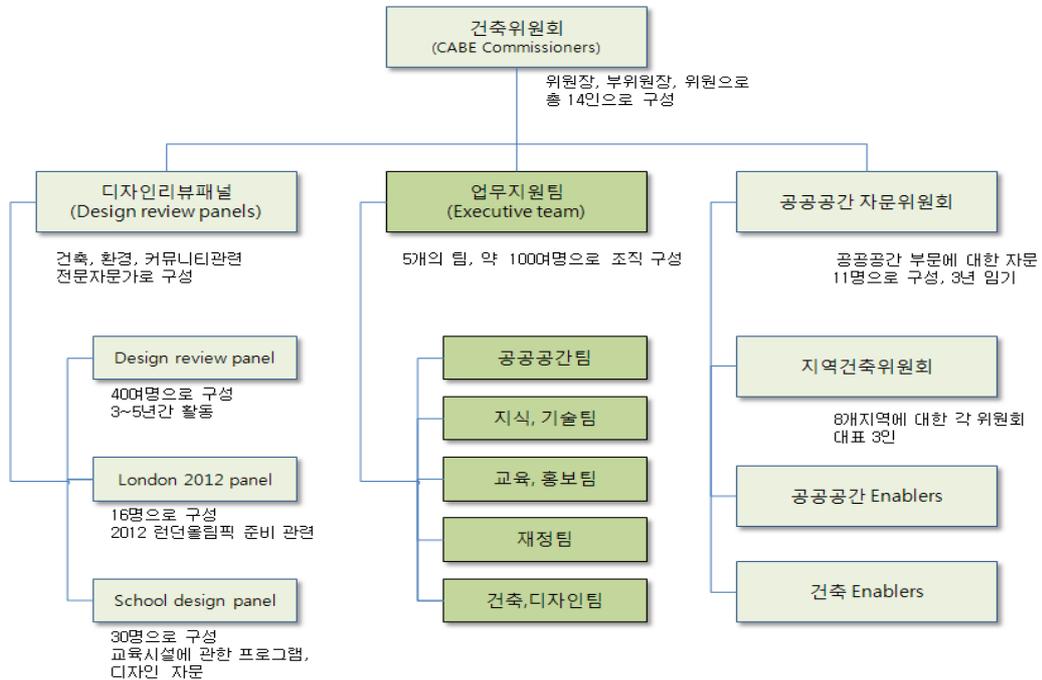
22) 영국의 CABE는 문화영상체육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커뮤니티·지방자치부(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운용

23) 16명의 위원은 건설경제, 공공공간 계획가, 건축설계가, 환경운동가 등 각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음 : <http://www.cabe.org.uk>

한 교육여건 개선과 기술개발 장려 및 건축과 디자인, 공공공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캠페인을 통해 공공분야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디자인리뷰 패널은 건축과 도시환경, 지역커뮤니티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며 리뷰를 담당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Design review panel', 'London 2012 panel', 'School design panel'로 세분화하여 운영하는데 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하는 'Design review panel'은 40여명으로 구성되어 3~5년간 활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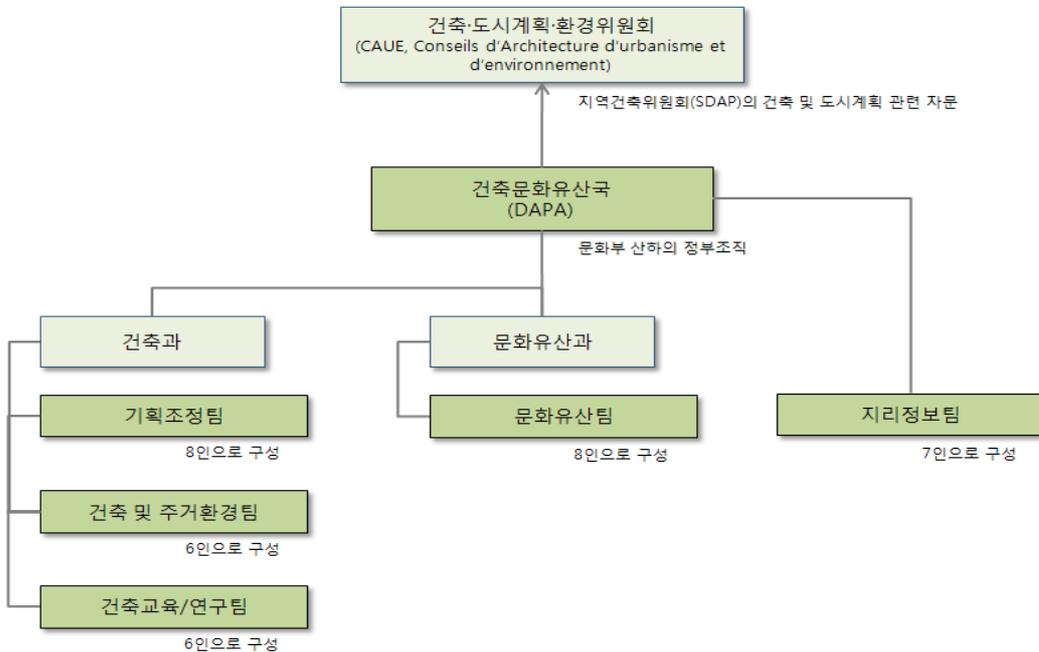
'London 2012 panel'은 런던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추진되는 건축관련 사업에 대해 전문적 자문을 수행하며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School design panel'은 교육시설에 대한 프로그램 및 디자인 자문을 수행하며 30명으로 구성, 교육시설에 대한 리뷰팀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교육시설에 대한 디자인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업무지원팀은 공공공간팀, 지식·기술팀, 교육·홍보팀, 재정팀, 건축·디자인팀으로 5개, 약 100여명으로 구성되어 위원회의 활동을 직접 지원한다.



〈그림 II-15〉 영국 국가건축위원회(CABE) 조직체계

□ 프랑스의 건축·도시계획·환경위원회(CAUE)

프랑스 정부의 건축과 도시계획, 환경분야에 대한 자문은 1977년에 건축법에 의해서 창설된 건축·도시계획·환경위원회(CAUE, Conseils d'Architecture d'urbanisme et d'environnement)가 담당한다. 건축·도시계획·환경위원회는 양질의 건축 및 도시계획을 장려하기 위한 자문과 보존지역에 계획되는 모든 건물 및 토지이용에 대한 심의·조정, 문화재로 지정된 모든 건물의 보존 및 그에 관련된 계획의 심의를 담당하며, 지자체 및 개별주체에 대한 컨설팅, 프로그램 및 의사결정에 대한 조언을 비롯한 설계경기조직, 교육자료 발간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구체적인 업무영역으로 광역계획 수립시에도 참여하며 국가 및 지역 도시계획방향에 대한 조언 및 도시기본계획 조정을 담당한다. 건축·도시계획·환경위원회와는 별도로 지역에서의 건축·도시분야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는 지역건축위원회(SDAP, Services Départementaux de l'architecture et du patrimoine)가 있으며 지역에 따라 5-20명의 인원으로 구성되고 프랑스 전역에서 100개의 SDAP, 790명의 인원이 활동 중이다.



〈그림 II-16〉 프랑스 건축·도시계획·환경위원회(CAUE) 조직체계

2) 선진국의 건축정책 내용분석

우리 실정에 적합한 건축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구성을 위한 논의의 출발점으로써 우리나라의 건축도시 관련 정책이슈를 도출하기에 앞서 선진국에서 추진중인 각종 건축정책의 내용을 파악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선진국 건축정책의 내용분석은 지금까지 발간된 각종 건축정책 관련문서들을 수집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몇가지 카테고리 묶어서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정리를 위해 도입한 정책분야별 카테고리는 편의상 국토환경디자인 강화, 건축경쟁력 향상, 건축문화 진흥의 3가지로 분류하여 내용을 정리하였다.

(1) 국토환경디자인 강화 정책

□ 공공 건축·도시 관련사업의 부처간 통합과 연계

핀란드에서는 1998년에 발간된 건축정책에 관한 법령²⁴⁾에서 중앙정부의 각 부처와 공공기관 및 지자체, 정부청사건설청 등이 힘을 합쳐 좋은 건축 환경을 증진할 책임이 있음을 명기하고 있다. 구체적 방안으로 각 지자체의 토지이용 계획이 상위 당국에 의해 승인을 받게 하는 조항을 폐지하여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였으며, 시민과 전문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의사결정과정에서 직접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²⁵⁾하였다.

스코틀랜드에서는 2003년 『더 나은 스코틀랜드를 위한 파트너십』 협정(A partnership for a Better Scotland)을 통해 노동당과 자유민주당이 건축 및 공간계획 분야에서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참여를 강화하고 빠른 의사결정과 신속한 투자결정 및 지역적인 관점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정치적으로 약속하였다. 이 협정에 따라 건축과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스코틀랜드의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건축정책을 수립하고 각 부

24) <제1조> 정부는 공공 기관 및 정부(중앙, 지방)가 지원한 건설과 환경 개발의 질적 측면에서 핀란드 모든 건설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한다. 정부청사건설청과 기타 정부 기구 및 공기업은 좋은 건축과 환경을 증진할 책임을 지고 있다.

<제2조> 공공건물의 품질과 비용을 계획함에 있어 국가 고정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유지보수 비용의 적정성을 갖출 수 있도록 생애주기 전반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 수많은 다른 법제들 역시 생활환경의 질을 결정하는데 있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한 법제들의 입안과 시행 과정에서 '건축의 품질'이라는 관점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주의깊게 고려해야 한다.

25) <제5조> 생활환경과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들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하여야 한다.

처의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는 코디네이터로서 A+DS²⁶⁾의 역할을 정립하였으며 건축에 관한 정책성명서로 'A policy on Architecture for Scotland' , 'Building Legacy'를 발간하였다.

네덜란드에서는 중앙부처에서 건축·도시분야의 발전을 위한 공동의 기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재정지출을 할당하고 있으며, 부처간 정책조정을 위한 별도의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건축기구 및 건축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재정으로 주택공간계획환경부(VROM)와 교육문화과학부(OCW)가 연간 1,050만유로를 출연하며, 문화정책을 위한 재정으로 주택공간계획환경부(VROM), 농업자연식품부(LNV), 교통공공시설수자원관리부(V&W)가 연간 750만유로를 출연하고 있다. 범부처 자문기구인 국가건축가(Chief Government Architect)와 정부자문위원회(Board Of Government Advisers)를 통해 건축정책과 문화정책을 우선으로 다른 정책을 조정하는 벨베데어 프로젝트청(Belvedere project department)를 두고 있다.

□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디자인의 실현

스코틀랜드는 지역공동체를 위한 공동의 목표로서 ‘디자인의 질’을 강조하고 그 정책적 실천전략을 구축하였는데 장소만들기(Designing Places) 성명서를 발표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통합적인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으며 건축정책과 연계한 디자인정책의 수립과 정책적 협력체계를 구축(PAN68 : Design Statement, Master Planning 등)하고, 공적인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건축물을 실현하기 위한 발주프로세스의 개선을 위해 정부청사건설청(The state real property authority) 도입하였다.

네덜란드에서는 4차 건축정책계획에서 건축과 문화정책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간계획과 문화에 대한 실천프로그램(Action Programme On Spatial Planning And Culture)을 통해 도시, 조경, 기반시설을 포함한 영역으로 건축정책의 규모를 확장하여 통합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디자인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 구축

핀란드는 건축정책을 통해 공공부문의 건축·도시 관련프로젝트에 대한 품질향상과 경제성 제고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의회(The Council Of State)에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축가 선임과정에 개입하여 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

26) Architecture and Design Scotland, 이 단체의 역할은 스코틀랜드 개발 정책 문서(Scottish Planning Policy) SPP 20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 단체의 목표는 새로운 개발의 질을 높여, 레이아웃과 디자인에서 높은 수준이 예외가 아니라 규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부분 발주자의 책임을 명기하도록 규정하여 공공건축물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심미적 영향을 고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자체적인 건축발주 매뉴얼을 작성하여 관리하며 이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업데이트한다.

네덜란드는 공공과 민간의 발주자들이 공간의 질을 창출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발주자가 사업목표를 보다 창조적으로 세우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담당 전문가 배치를 권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건축가는 정부가 발주하는 공간계획과 기반시설 및 조경계획 등에 관해 자문하며, 관련 법안의 타당성 검토와 교육의 활성화, 사회 전반에서 건축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국가건축가의 주요 임무중 하나는 담당 부처의 프로젝트에 직접 관여하여 디자인에 대해 토론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며 디자인품질에 관한 다양한 개선사항을 권고하는 일이다.

스코틀랜드는 공공건물의 품질강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는데 의료건물과 학교건물을 대상으로 디자인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의료건물의 디자인품질과 국가의료서비스(NHSScotland)²⁷⁾의 개선을 위한 디자인품질 정책²⁸⁾에 관한 정책문서를 발행하고, 관련단체들에 조달프로세스와 연계된 지침을 제공하였으며 학교건물의 디자인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 학교디자인(School Design)(2003)에 관한 지침을 발행, 여기에는 교육시스템의 발전사항과 학교를 통해 제공될 수 있는 다른 서비스, 그리고 기술의 발전 등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의 추진

네덜란드에서는 건축정책의 구체적인 실현과 이를 통한 성과 확산을 목표로 국가주도의 대규모 시범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시행한 바 있는데 3차 건축정책 계획 기간중에 추진된 9대 시범프로젝트는 암스테르담신국립박물관, 아메르스포르트 도시재개발, 공공공간 디자인 개선, 뉴홀랜드위트라인, 고속도로시설물 디자인개선, 암스텔담과 그로닝겐을 연결하는 자기부상고속철도망, 네덜란드 주요도시를 연결하여 환상형 도시 개발프로젝트인 델타메트로폴리스 등으로 개별 건축물의 디자인개선에 관한 프로젝트에서 도로시설물, 고속철도의 건설, 도시개발, 지역개발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음을 알 수 있다.

27) National Health Service (Scotland)

28) Policy on Design Quality for NHSScotland : 이 정책의 목적은 스코틀랜드 행정부의 의료 부서(Scottish Executive Health Department, SEHD)가 NHSScotland의 소유지에 기대하는 바와 서비스 제공의 일부로서 잘 디자인된 의료 환경의 필요성을 서로 연계하여 표명하는 것이다.



뉴홀랜드워트라인의 출발지점인 무이데슬랏의 수변공간 정비



뉴홀랜드워트라인의 주요 정비지점마다 설치된 안내표식과 주변환경 정비



아메르스포르트의 재개발 프로젝트에 따라 새로 건설된 단지내 학교시설물



아메르스포르트의 재개발 프로젝트에 따라단지내 노후주택에 대한 대수선공사 진행



국립미술관 리모델링계획에 따라 확장공사가 진행중인 현장



신국립미술관의 완공후 조감도

〈그림 II-17〉 네덜란드의 3차건축정책계획('00~'04)에서 추진된 대형 시범프로젝트 사례

(2) 건축경쟁력 향상 정책

□ 국제화를 통한 건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일본은 건축산업의 국제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국제교류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글로벌스탠더드의 인증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교육의 국제적 동등성 확보를 목적으로 일본기술자교육인증기구(JABEE)²⁹⁾가 만들어져 건축학 및 건축학 관련분야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이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UIA어코드, APEC엔지니어 자격의 상호인증 및 APEC 건축가 상호인증 프로젝트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외국과의 기술사 및 건축사 자격 동등성을 주장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CPD(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 기술자 등의 계속능력개발 사업)에 관련 단체와 학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국토교통성에서는 건설분야 국제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해외진출전략연구회를 운영하고, 당사국간 산업연계 관련 이벤트 개최, 해외의 법령관련 검색 사이트 시험운용, 해외현장에서 익힌 경험과 노하우 공유를 위한 건설산업노하우 이전세미나 등을 진행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주로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영향력 증대와 역할강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 분야에서의 국제적 통합과 국제 관계에서 네덜란드 건축문화의 우수성을 부각하기 위한 지침서 등을 발간한다.

□ 미래첨단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

미국은 건축·도시분야를 포함한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 저하요인을 분석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점과제를 제시하였는데 사회적 문제, 제도적 비효율성, 인력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부족 등을 대표적인 저하요인으로 도출한 바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IC, 대통령직속기구) 산하 민간산업기술분과에 건설소위원회가 별도로 설치(1994년)되었으며 범국가 차원의 건설분야 미래 비전인 국가건설목표를 제시하고, 건설산업의 고품질·고성능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EU에서는 미래 건설비전 『Europe 2030』을 수립하고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중점 연구개발 분야로 신재료 개발, 정보통신 기술 접목, 사회기반시설 네트워크화 등을 제안하였다.

일본은 건축·도시분야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중인데 신기술개발 및 국가경쟁력 증진을 위한 인재육성(1995년, 건설산업정책 대강령)에 힘쓰는 한편 기술개발 기본계획(국토교통성, 2002~2007)을 발표하였으

29) Accreditation System for Engineering Education in Japan

며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06-10년)을 통해 국제경쟁력 있는 건설기술 개발을 강조하고 중점 연구분야로 삶의 질, 이동성, 에너지, 환경 등을 제시하였다.

□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

핀란드는 건축정책 성명서³⁰⁾를 통해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책적 관점에서 지역건축가에 대해 지역의 건축과 문화에 관한 전문가로서의 역할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규정³¹⁾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기존의 소규모 지자체에 배치된 지역건축가의 역할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지역환경센터의 업무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지역 건축가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 필요한 자원확충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건축전문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건축가의 능력은 단순히 설계기술을 실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건축의 원칙과 건축물의 보존 및 건설기술의 원리에 관한 철저한 이해, 환경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건설과정 전반을 숙지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스코틀랜드는 건축정책 성명서³²⁾를 통해 건축전문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향으로 건축고등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정책추진방향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내 집 같은 도시(At Home in the City)’³³⁾와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건축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지역공동체와의 협업방법을 탐구하고 각 대학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신진건축가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학생들과 젊은 실무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RIAS³⁴⁾와 함께 학생을 지원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해마다 개최되는 ‘SIX’ 학생시상 사업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2008-09년의 ACCESS to Architecture 캠페인의 주요 주제는 떠오르는 인재들에 관한 것이다.

네덜란드는 전문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데 시각예술·디자인·건축재단에서 신진 건축가 및 예술가 지원제도³⁵⁾를 운영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신진 건축가 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새롭게 선정된 젊은 건축가, 조경설계자 앨범³⁶⁾을 통해 재능있는 건축가와 조경설계자의 수주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30) THE FINNISH ARCHITECTURAL POLICY 1998

31) 지역 건축가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제도는 건축가의 전문성을 강화해 왔으며, 특히 작고 외딴 지자체에서 효과가 컸다. ‘토지이용 및 건축법’ 개정을 준비하였던 위원회는 이 지원제도가 현재 30개 지자체에서 100개 지자체로 확대되어야 하고, 이 제도는 작은 지자체의 계획적 수요를 확실하게 충족시켜야 함을 제안

32) Statement on Scotland’s Architecture Policy 2007

33) 1년짜리 경쟁 프로젝트로, Strathclyde와 Mackintosh 건축 학교의 예비 졸업생들이 글래스고우의 Gallowgate 지역의 주택문제에 대한 제안을 할 기회를 제공

34) Royal Incorporation of Architects in Scotland

35) 시각예술·디자인·건축재단 Fonds BKVB이 신진 건축가 및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제도

36) Les Nouveaux Albums des jeunes Architectes et des Paysagistes : 문화공보부 ministe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관할

영국은 CABE³⁷⁾를 통해 민간전문가들이 공공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 중인데 민간위원들이 건축, 도시디자인, 공공공간에 대한 자문역할을 담당하고 건축가, 계획가, 디자이너, 개발업자 등이 진행하고 있는 공공 프로젝트에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계획가와 직접적으로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업무수행 중 축적된 연구결과와 정보 등을 네트워크를 통해 모두에게 개방함으로써 공공적 정보의 공유를 실천하고 있다.

(3) 건축문화 진흥 정책

□ 지역 건축문화 역량강화

유럽연합에서는 경관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문화유산의 보호를 통한 지역성 회복을 목표로 지속가능성과 안전성이 보장된 공간환경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질 낮은 주거, 부적절한 교통과 도시계획, 커뮤니티 여가공간의 부족이 시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쳐 사회적 참여를 약화시키고 건강과 일에서 생산성을 저하시킨다는 판단 아래 좋은 도시환경을 통해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스코틀랜드는 공간환경의 조성에 대한 지역 커뮤니티의 활발한 참여를 강조하고 지속가능성과 접근성, 통합성이 높은 디자인의 중요성을 집중 부각하고 있는데 A+DS와 행정부, 커뮤니티 스코틀랜드 등 관련단체간 연계를 통한 코디네이터 기능을 강조하고 있으며 theLighthouse, Scotland's centre for Architecture, Design and the City, Historic Scotland 등의 조직을 통해 다양한 지역 커뮤니티 참여프로그램과 교육·홍보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국토환경의 보전 및 건축문화유산의 유지에 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국가적 전략을 수립(Implementation of the Architectural Policy)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건축가의 역할을 확대하고 국가유산위원회(The National Board of Antiquities)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 박물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건축역사 전문가의 확충과 전문가의 박물관 배정을 위한 제안을 작성한 바 있다.

37) the Commission for Architecture and the Built Environment 1999 현재 법령에 의해 공인된 조직으로서 운영, 16명의 위원들과 이를 전담 지원하는 관리부서 구성

□ 건축문화자산의 발굴과 보전

핀란드는 건축문화자산의 수집 및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고 전통건축기술센터(Traditional Building Techniques)를 창설하여 전통건축기술·재료, 전통건축물의 복원·보수 등 관련정보 제공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를 중심으로 건축문화유산에 관한 데이터를 구축하여 지역적으로 가치 있는 건축문화유산의 목록화를 진행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유산위원회(The National Boards of Antiquities), 핀란드박물관(Museum of Finnish Architecture), 교육부가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건축문화자산의 발굴과 보전, 활용 등을 위해 스코틀랜드 계획법령(SPP), 스코틀랜드 역사환경법령(SHEP) 등을 정비하고 건축유산을 관리하는 HS³⁸⁾, A+DS³⁹⁾, The Lighthouse⁴⁰⁾, RCAHMS⁴¹⁾, RIAS 등을 통한 연계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국가 건축유산의 범위를 새로 선정된 우수한 건축물까지 확장하여 생활 속 건축문화유산에 대한 경험을 확대하고, The Lighthouse의 주도로 20세기 건축유산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장기적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38) Historic Scotland(HS)

- 국가의 역사적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리플렛과 실용문서, 연보, 가이드북, 문화유산 가이드, 연구보고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전통적 재료들의 성능, 세부사항, 보존전략 및 사용 등의 다양한 이슈들에 관한 연구를 진행

39) Architecture and Design Scotland(A+DS)

- 개발사안의 자문을 맡아온 스코틀랜드 왕립순수예술위원회(Royal Fine Art Commission for Scotland, RFACS)를 대체하여 설립되었으며(2005년), 계획 및 조달과정에 직접 관여하여 개별 건물, 병원, 학교 등의 시설과 도시 및 전원개발의 우수한 디자인을 장려·촉진(스코틀랜드 계획정책문서(Scottish Planning Policy, SPP) 20조)하는 역할을 수행
- 새로운 개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레이아웃과 디자인규칙을 규정하고, 유명한 건축물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건축의 질을 높여 국가경쟁력 향상을 유도

40) The Lighthouse

- 국가적 건축정책 관리와 ACCESS to Architecture(건축에의 접근)의 시도
- 풍부하고 다양한 전후 20세기 유산에 대한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이해를 돕기 위한 활동 지원

41) 왕립 스코틀랜드 역사적 기념물 위원회(Royal Commission on the Ancient and Historical Monuments of Scotland, RCAHMS)

- 건축유산에 관한 공적인 아카이브인 스코틀랜드의 국립기념물기록(National Monuments Record of Scotland, NMRS)을 작성 및 유지하여 대중에게 제공
-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 및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장소만들기와 재생프로젝트에 중요한 기여
- 건축정책, 관광·홍보 및 Historic Scotland의 업무를 지원

□ 건축문화산업에 대한 지원·육성

네덜란드는 건축정책을 통해 건축문화산업의 육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공간 계획과 문화에 대한 실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중이다.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는 웹 포털과 정보모델 구축, ArchiNed를 통한 정보축적 및 교환, Project Bank의 운영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 국토·도시·건축 기록정보 구축 및 활용

네덜란드는 정책적으로 건축관련 자료의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건축기구(NAi)를 설립하여 기록정보 구축과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스코틀랜드는 건축유산 관리를 위한 공동조직을 구성하고 문화법안(culture scotland bill)을 통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구체적인 실천을 추진하고 있는데 건축유산에 관한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건축문화·유산에 대한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전문가의 유기적인 연결을 강화하였다.

□ 국민에 대한 건축 교육홍보 강화

네덜란드는 건축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정책계획을 통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건축 전문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가지원 교육기관인 베를라헤건축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archiprix(대학간 협력체제)를 통해 건축교육 프로그램의 공동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스코틀랜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건축문화 인식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동체의 역량 개발을 건축교육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다양한 건축관련 국립연구단체를 설립하였다. 또한 학교교육 커리큘럼을 건축에 관한 중요한 인식확산의 수단으로 제시하고 다양한 수준의 교육매체를 개발 지원하고 있다. 나아가 A+DS 주도의 역량개발 프로그램(enabling programme)을 통해 클라이언트와 프로젝트팀의 자질향상 및 인식을 고취하고 있으며 웹기반의 교육프로그램인 ‘관계의 구축(Building Connections)’ 프로그램을 통해 공간환경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과 유대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지원기관인 The Lighthouse(center for architecture design and city)의 주도로 국가건축프로그램인 ‘건축으로의 접근(ACCESS to Architecture)’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내에서 공간환경의 쟁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이다.

핀란드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대한 전국민 인식고취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생활환경에 대한 정책결정에 시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정책결정자의 인식제고를 위한 건축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초·중·고등학교의

교과과정에 기본교육과정으로 건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교재개발과 건축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건축·도시분야의 정책이슈 발굴

4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방향설정과 구체적인 전략(과제)을 도출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선진국의 건축정책 추진현황에 대한 분석과 병행하여 우리의 건축·도시가 처한 현실과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건축·도시분야의 정책이슈 발굴은 우리의 건축·도시가 처한 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진하게 될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성하기 위한 논의의 출발점을 삼기 위한 작업으로 건축·도시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워크숍과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정책이슈를 정리한 것이다. 도출된 정책이슈는 후속되는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지침(안) 작성시 부문별 전문가TF팀의 구성 등에 직접 활용하며, 향후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논의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성격별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1) 건축기본법을 통한 정책 키워드의 도출

□ 건축기본법에 명시된 건축정책의 방향

법 제2조에는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의 안전·건강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공간의 조성,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며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공간환경의 조성, 지역의 고유한 생활양식과 역사를 반영하고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공간의 창조 및 육성을 기본이념으로 설정하고 있다.

법에서 규정한 건축정책의 기본방향은 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 구현, 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확보, 건축의 문화적 공공성 실현이며 각각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안전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하고,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 사용자의 건강과 장애인·노약자 등의 이용을 배려

-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다원적 문화에 부응하고 미래사회의 문화적 요구변화와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 건축물 및 공간환경이 미래세대에 계승되는 사회·경제적 자산으로 조성되고 그 가치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도록 관리
-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조성과 사용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재이용과 재생을 촉진하여 자연과의 조화를 도모
-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하고 사용하는 전 과정에서 건축의 문화적 가치가 형성되도록 배려
-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문화적·산업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가의 창의성 존중
- 지역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풍토나 역사 또는 환경에 적합하게 조성되도록 배려
-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유산을 보전하고 새로운 건축물 및 공간환경이 기존의 공간환경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조성되도록 배려

〈표 II -10〉 건축기본법에 명시된 건축정책의 방향

건축의 이념	건축정책 핵심 키워드
생활공간적 공공성 구현	- 재난에 대한 안전 확보 - 사용자의 건강과 약자에 대한 배려
사회적 공공성 확보	-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다원적 문화에 부응 - 미래사회의 문화적 요구와 기술변화에 능동적 대응 - 미래세대에 계승되는 사회·경제적 자산 확보 - 환경에 대한 영향의 최소화 - 자원의 재이용과 재생 촉진 - 자연과의 조화
문화적 공공성 실현	- 건축의 문화적 가치 향상 - 건축의 문화·산업적 경쟁력 제고 - 전문가의 창의성 존중 - 지역주민의 참여기회 확대 - 지역이 풍토나 역사, 환경에 대한 배려 -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유산의 발굴·보전 - 기존 공간환경과의 조화와 균형 - 국가와 지자체의 건축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 건축기본법에서 명시한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 포함하여야 할 정책의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건축의 품격 및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 지역의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대책
- 우수한 설계기법 및 첨단건축물 등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건축분야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 건축문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 건축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및 선도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 기타 건축진흥에 필요한 사항
 - 건축물에 대한 국민 교육과 홍보
 - 우수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자료의 구축
 - 건축문화진흥 관련 주민자치 기구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표 II-11〉 건축기본법에 명시된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11조의 건축정책 핵심 키워드	령 제3조의 건축정책 핵심 키워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건축의 품격 및 품질 향상 -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 건축디자인 - 지역의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대책 - 우수한 설계기법 및 첨단건축물 등 연구 개발 -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 -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 - 건축문화 기반구축 - 건축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 선도 시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에 대한 국민 교육과 홍보 - 우수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보존 - 한옥의 보전 및 진흥 - 국토·도시·건축 기록자료 구축 - 주민참여 방안

2) 전문가대상 워크숍을 통한 정책이슈 도출

(1) 워크숍의 개요

□ 참여대상 및 범위

- 건축·도시 관련 전문가 : 건축·도시분야에서 건축정책에 관한 연구 수행 경력이 있는 대학교수와 연구원, 건축사 등 전문가 9명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원 : 정책연구실을 중심으로 건축정책에 관한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15명

□ 진행방식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구성을 논의하기 위한 건축·도시분야의 현황과약에 초점을 맞춰 정책아젠다를 발굴하고 내용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다. 정책아젠다의 발굴 및 효과적인 내용정리를 위하여 참여 전문가를 전공분야별로 4개의 그룹으로 구분하고 팀장을 중심으로 해당분야에 대한 정책아젠다를 발굴·정리한 후 전체 회의를 통해 각각의 정책아젠다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 내용의 구성 및 분류

토론을 통해 도출된 정책아젠다에 대해서는 건축기본법에서 명시한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분류에 따라 법 제11조의 11개 항목을 중심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 진행일정

전체 전문가 워크숍은 2008년 3~6월까지 총 8차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정리하고 정책아젠다를 성격별로 분류하여 위계에 따라 정리하는 작업을 위해 내부연구진을 중심으로 13차례의 작업회의를 진행하였다.

(2) 발굴된 정책아젠다의 분류

□ 정책아젠다 분류기준 설정

수차례의 워크숍과 토론회 결과를 통해 채택된 정책아젠다에 대해서는 별도

의 분류기준을 설정하여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크게는 건축기본법 제 11조에 명시된 건축정책기본계획의 11가지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는 다시 구체적인 정책부문을 세분화하였다.

정책부문의 세분화 작업에서는 정책아젠다의 성격에 따라 행정, 산업, 연구·교육·홍보, 법·제도, 문화인식부문으로 구분하고,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특별히 전략적 연구개발분야의 육성,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지원제도 확립으로 구분하였다.

□ 정책아젠다의 부문별 내용 구성

- 산업부문은 건축설계·엔지니어링산업에서 사무소의 운영체계, 설계업무 종사자의 효율, 계약 체계 등 산업시스템에 관한 사항과 관련산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다룸
- 교육·연구·홍보부문은 건축·도시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및 교육, 국민이나 건축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등의 내용을 다룸
- 행정부문은 건축물이 만들어지고 도시를 이루기까지 거치게 되는 제반 행정적 절차에 관한 것을 다룸
- 법·제도부문은 정책적 목표달성을 위해 주요 실행수단이 되는 법·제도 등의 개선에 관한 내용을 다룸

(3)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정책이슈

□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건축·도시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정책의 추진배경과 향후 추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현황과약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슈를 발굴하였다.

- 우리의 건축·도시가 지닌 의미와 현재의 상황
- 건축물의 생산 및 재고(stock)관리 현황과 전망
- 건축물 생산주체로서 건축산업의 현황과 전망
- 건축물 생산주체로서 국민의 건축활동 참여와 건축에 대한 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의 현황과 전망
- 건축정책 수행주체로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관련기관의 다양한 건축활동 추진 현황

□ 건축의 품격 및 품질 향상

건축의 품격 및 품질 향상에 관한 정책은 많은 분야에서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는 사항으로 매우 많은 정책이슈들이 도출되었는데 여기서는 이러한 정책이슈를 산업, 연구·교육·홍보, 행정, 법·제도의 4가지 부문으로 구분하였다.

○ 행정부문 :

- 건축관련 행정체계의 통합화
- 중복·유사 심의제도 폐지
- 민간전문가 참여에 의한 디자인 심사제도 활성화
- 공공 도시·건축과정에서 민간전문가 참여를 위한 근거 마련
- 건축정책과 문화정책 통합을 통한 정책간 협력체계 구축

○ 법·제도부문 :

- 상징건축물, 기념건축물의 설계경기 세부기준 수립
- 우수건축가 지명설계경기, 수상건축가 지명설계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다양한 설계경기 활성화
- 설계경기 심사과정의 공개와 심사기준·절차의 국제화
- T/K, PF등의 발주방식 개선
- MA제도의 디자인 권한 확대
- 건축관련 법령의 문제점 도출 및 재정비 체계 구축
- 해외의 건축관련 법령 운영실태와 체계 검토

○ 산업부문 :

- 품질보장을 위한 건축디자인 설계대가 기준 합리화
-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용역발주 및 대가체계 개선
- 건축설계업무 인증시스템 체계 구축
- 좋은 도시 좋은 건축물 지정제도 시행 확대

○ 연구·교육·홍보부문 :

- SOC시설 등의 디자인경쟁 활성화
- 농촌지역의 경관 및 디자인 개선

- 전문가 계속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기술사에 대한 계속교육을 위한 「기술사법」 개정 추진
- 공공건축물의 품격 및 품질에 관한 기준 수립
- 도시건축 하모니 운동, 건축환경 걸작운동, 한국느낌 만들기 운동 등 시민인식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 개발주체 및 공공부문, 설계부문의 통합 교육프로그램 마련
- 좋은 건축과 도시환경에 대한 디자인 안내서 발간
- 시민참여 및 개발주체들간의 협상에 관한 기법개발 및 운용

□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

도시의 경관향상을 위한 건축디자인의 통합 및 연계·조정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대응과 법·제도 정비가 주를 이룬다.

○ 행정부문 :

- 민간전문가 활용 방안 마련
- 건축행정에 대한 시민 참여제도 마련
- 공간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물의 통합계획
- 도시 자연 및 역사문화 자원 활용을 통한 경관향상 전략 수립
- 역사문화자산 보존 및 종합적 관리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 법·제도부문 :

- MA, MP 제도 개선
- 건축도시디자인 커미셔너 및 공공건축사 제도 시행
- 건축물 설계경기 개선
- SOC시설 등의 설계심의제도 개선
- 근대 건축물 및 역사문화자산의 보전과 재생·활용을 장려하는 제도 마련

○ 연구·교육·홍보부문 :

- 건축도시디자인지원센터 구축

- 지자체의 총체적 도시경관 형성 및 관리지원 프로그램 마련

□ 지역의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대책

지역의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대책은 행정과 산업, 문화인식, 법·제도부
문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 행정부문 :

- 지역단위의 건축도시주민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 민간전문가 활용을 위한 정부주도의 인적교류 네트워크 구축
- 우수 행정가 및 전문가 육성, 발굴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지역의 건축도시행정가 국내외 전문교육기회 확대
- 마을건축가의 발굴 및 지원

○ 법·제도부문 :

- 공공사업의 MA, MP제도 개선을 통해 기획, 설계, 시공, 관리까지 민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
- 건축·도시 관련사업의 디자인리뷰 기능 확보

○ 산업부문 :

- 지역 대학의 건축·도시관련 학과에 대한 특성화 지원
- 지역성을 반영할 수 있는 건축·도시사업에 적용될 자재 발굴 및 생산, 유통시스템 지원
- 지역의 공공 건축사업에 신기술을 우선적용하고 R&D의 Mock up 으로서 지역 특성화 공간을 지원
- 지역에 근거를 둔 건축·도시산업 관련 자활기업 육성 및 지원

○ 문화인식부문 :

- 담장허물기 사업 등 민간과 지자체의 협력방식에 의한 건축도시문화 창출 성공사례 발굴 및 확산
- 지역건축 혁신 성공사례 발굴 및 확산
- 공공건축 복합화를 통한 지역생활 거점 만들기

- 역사보존 및 재생가로 지정 및 정비
- 지역소재 박물관,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의 랜드마크화 추진
- 지역 랜드마크 프로젝트의 집약적 클러스터화 계획
- 도농통합형 복합생활지원센터 건립

□ 우수한 설계기법 및 첨단건축물 등 연구개발

건축·도시분야의 연구개발 강화에 대해서는 전략적 연구개발 분야의 육성과 연구개발 인프라구축, 연구개발 지원제도 확립의 3가지 부문으로 구분하였다.

○ 전략적 연구개발 분야의 육성 :

- 기후협약에 대비한 Recycling City 개념도입
- 지속 가능한 사회구축을 위한 건축성능평가·대책기술 개발
-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ling) 기반의 통합설계 프로세스 개발
- 한옥의 활성화를 통한 <신한옥건축>시대 구현
-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의 합리적 재생·활용기술 개발

○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

- 건축도시설계·엔지니어링 산업 R&D 사업평가 및 성과 관리체계 강화
- 설계·엔지니어링 분야 R&D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 연구인력 사전등록제 활성화 및 연구인력 마일리지제도 도입

○ 연구개발 지원제도 확립 :

- 설계·엔지니어링 R&D 종합정보센터 설치
- 국제 설계·엔지니어링 R&D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제도 마련
- 설계·엔지니어링 R&D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 건축도시설계·엔지니어링 산업 R&D 성과확산 시스템 구축

□ 건축분야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대해서는 교육에 필요한 기관의 설립과 우수인재 발굴 육성 등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 연구·교육·홍보부문 :

- 세계적 건축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
- 5년제 건축학과 졸업생을 위한 처우개선
- 젊은 건축가 발굴과 육성 프로그램
- 국가적 건축상 시상제도 마련
- 국내건축가 육성 및 홍보
- 건축관련 인적능력 제고를 위한 적정 규모 조정
- 건축전문 공무원의 육성 및 관리

○ 문화인식부문 :

- 건축진흥재단 설립
- 건축의 공공성을 공동 인식하기 위한 포럼 결성

□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

건축분야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대해서는 산업적 측면에서의 해외시장의 개척과 국내시장 개방에 대비한 산업고도화 지원이 주를 이룬다.

○ 법·제도부문 :

- 가격중심에서 기술경쟁 중심으로 발주제도 전환
- 설계기준, 설계도서작성기준, 계약기준의 국제화
- 전문분야별 대가기준 제정
-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을 위한 표준 및 운영규정 마련

○ 산업부문 :

- 해외용역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전담 지원체계 구축
- 해외시장 개척비의 대폭적 확대 시행
- 국내외에서 축적된 건설분야 기술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 외국기술 인력 활용방안 강구
- 국내 건설 기술자력의 국제적 통용성 제고
- 국내관련 통계 및 정보체계 구축

- 해외시장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전문가 육성

○ 연구·교육·홍보부문 :

- 해외 설계 및 엔지니어링 참여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자 교육지원
- 우수 건축가의 해외 전시회 지원
- 우수 작품 및 한국적 건축도시공간 작품집 해외 발간
- 국제화 및 실무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강화
- 경력개발 프로그램 표준체계 개발
- 건축가의 해외 홍보 및 한국 건축의 우수성 홍보

□ 건축문화 기반구축

건축문화 기반구축에 대해서는 국민의 문화인식 전환에 바탕을 둔 프로그램과 기관의 설립, 건축문화 확산을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제도적 행정적 지원, 그리고 산업적 측면에서의 대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아젠다가 도출되었다.

○ 행정부문 :

- 중앙정부의 건축문화 정책 로드맵 수립
- 지방정부를 위한 정책로드맵 가이드라인 수립
- 지구단위계획 및 경관계획 적용체계 확립
- 현상공모 지침 수립방향 제시
- 설계공모의 다양화와 축제화

○ 법·제도부문 :

- 한옥진흥법 제정
- 건축문화 진흥 현장 제정

○ 산업부문 :

- 한국 고유의 건축도시설계기법의 해외진출 지원
- 국내 건축가 및 도시설계가의 해외전시 및 진출지원
- 건축도시분야 설계산업종사자의 권익과 지위향상 방안마련

○ 문화인식부문 :

- 지역 건축·도시 문화거점 조성
- 지역의 건축·도시 문화유산 보존 및 공간환경 정비
- 기반시설에 대한 디자인개선으로 공간환경 문화 진흥
- 건축도시박물관 조성
- 국가주도형 국책사업으로 건축·도시 문화 시범사업 추진
- 도시문화페스티벌 지원
- 건축문화 진흥재단설립
- 국책사업의 건축·도시 기록자료 구축
- 국가 선정 올해의 건축가, 도시설계자상 신설
- 건축·도시전문 케이블 방송 및 인터넷매체 개국 지원
- ‘올해의 건축가’ 상, ‘한국의 건축도시공간’ 상, 건축광고대상 등 건축도시의 문화적 가치고양에 대한 시상제도 도입

○ 연구·교육·홍보부문 :

- 건축·도시 북페어 개최
- 국내 건축도시관련 서적의 해외출판 및 교재채택 지원
- 건축 기초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 건축 전문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 건축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및 선도시범사업

건축관련 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부에서 R&D분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건축설계·엔지니어링산업의 연구개발에 초점을 맞춰 이슈를 도출하였으며 선도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책이슈를 도출하지 않고 각각의 정책주제별로 도출된 사업 가운데 정책적 필요에 따라 추후 선도시범사업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디자인 조정전문기구 설치
- 통합발주, 분리발주 시스템의 혁신적 개편
- 문화예술위원회의 건축분야 참여와 문화산업진흥법에 건축설계분야 포함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

- 건설엔지니어링 시장확대와 감리업역의 전문화
- 건설컨설턴트 비용 산정기준 수립 및 징구방식 제도화
- 표준계약서의 개정과 독소조항의 철폐
- 공공 도시건축사업 추진의 사업부서제 운영시스템 구축

3) 건축·도시분야 정책이슈의 분류 및 정리

이상과 같이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정책이슈에 대해서는 향후의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에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전략(과제)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위계에 따른 분류가 필요하다.

(1) 정책이슈의 분류를 위한 정책분야의 선정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건축정책의 위계와 추진주체, 추진방식 등에 대해 토론하고, 선진국의 건축정책 사례 등을 참조하여 정책분야를 국토환경디자인, 건축경쟁력, 건축문화의 3가지 분야로 구분하고 각각의 분야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정책이슈에 대해서는 정책적 위계에 따라 다시 추진전략과 중점과제, 세부과제의 형태로 분류하고, 정책분야별로 해당 정책이슈를 배열하여 정리하였다.

□ 국토환경디자인분야

- 건축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공간환경의 종합적, 입체적인 계획과 운영으로 새로운 국토의 이미지를 창출
- 건축적 자산의 보호, 기존 건축물의 보존, 자연 회복을 통한 지속가능한 공생의 공간환경 촉진
- 지역의 요구와 이념 및 개성에 따른 지역 독자의 개발 목표와 실천에 기반을 둔 건축과 국토환경의 통합적 조성

□ 건축경쟁력분야

- 창의적 건축디자인이 창출될 수 있는 문화적, 산업적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공공건축의 선도적 확산과 제도의 정비
- 건축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의 수립과 실천

- 우수한 건축물과 건축문화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는 전문가 위상제고, 관리 제도, 세계시장을 선도할 전문가 육성 및 건축문화 창달을 위한 기반 조성

□ 건축문화분야

- 다양한 사회 계층이 참여하고 향유하는 일상생활공간을 조성하여, 건축 및 국토 환경을 통한 국민의 공동체 의식을 고양
- 지역의 공간환경이 풍토와 문화, 역사, 생활양식 속에서 건축적 공유재산이 되도록 정비 촉진
- 공간환경에 대한 시민 윤리와, 건축과 국토환경의 주인은 미래의 후손이라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

(2) 정책분야별 정책이슈 배분기준 설정

위에서 설정된 정책분야에 따라 도출된 정책이슈를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건축기본법에서 규정한 건축정책의 내용을 정책분야별로 구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표Ⅱ-12〉 정책분야별 정책이슈의 배분

정책분야	건축기본법에 규정한 정책이슈 배분
국토환경디자인	- 건축의 품격 및 품질 향상 -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 - 건축문화진흥 관련 주민자치기구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 주민참여 방안
건축경쟁력	- 지역의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대책 - 우수한 설계기법 및 첨단건축물 등 연구개발 - 건축분야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 -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 경쟁력 향상
건축문화	- 건축문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 건축물에 대한 국민 교육과 홍보 - 우수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보존 - 한옥의 보전 및 진흥 -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자료의 구축

(3) 정책분야별 정책이슈의 정리

정책분야별로 정책이슈를 구분하는 작업에 앞서 건축정책에 관한 전략적 계

획수립을 위한 논의의 출발점으로 분야별 추진전략(안)을 작성하였다. 설정된 추진전략(안)에 따라 도출된 정책이슈를 중점과제와 실천과제의 형태로 위계를 정하고 각각 해당하는 추진전략(안)별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표 II-13〉 정책분야별 추진전략(안) 제시

정책분야	추진전략(안)
국토환경디자인	공공 건축물 및 공간환경디자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디자인 기반구축
	건축도시의 품질·품격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 진흥
	지속가능한 건축디자인 활성화 방안
※ 국토환경디자인 기반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	
건축경쟁력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건축문화 역량 강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축산업의 국제화 추진
	건축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첨단 연구개발 활성화
	건축도시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
※ 건축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	
건축문화	한국 건축문화자산의 창조적 계승
	지속가능한 건축문화산업 지원·육성
	국토·도시·건축 기록자료 구축 및 활용방안
	국민에 대한 건축교육 및 홍보의 강화
※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시범사업	

〈표 II -14〉 국토환경디자인분야의 정책이슈

추진전략	중점과제	실천과제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디자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	디자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	건축기본법, 국제법, 경관법 통합운영에 의한 합리적 법체계 적용
		건축디자인 기준을 활용한 디자인 사전협의시스템 도입
		DQI 시스템 도입에 의한 체계적인 디자인 프로세스 관리방안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디자인 거버넌스 체계구축	공공건축가를 중심으로 디자인 거버넌스 기반구축
		주민주도형 건축도시문화 창출을 위한 시민전문가 육성 및 프로그램 구축
		공공 건축도시사업의 주민제안 제도 실시
	민간기업·시민단체와 공무원 교류 근무제 도입 및 시행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디자인 기반구축	통합디자인 지원기반구축	통합디자인 향상을 위한 관련법 체계 정리 도시경관 형성 및 관리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도시경관 개선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국가 및 지역 상징거리·지구 조성을 통한 국가·지역 정체성 확립
		역사·문화·자연경관 보전 및 활용을 통한 지역경관 창출
		복합커뮤니티를 통한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
	기타	일상적 생활과 밀접한 공간환경(가로, 공원 등)에 대한 질적 개선
건축·도시의 품질과 품격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 진흥	건축도시의 품질·품격에 관한 사회적 인식확산	건축도시의 품질·품격향상을 위한 ‘디자인중심 사회전환’ 성명서 발간 “건축·환경·품질” 캠페인 전개
	건축도시관련 기초연구 인프라 구축	건축도시 설계·엔지니어링산업 R&D 로드맵 마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건축도시 R&D 협력 및 성과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핵심 건축도시 설계·엔지니어링 R&D 지원	품질보장을 위한 건축디자인 설계대가 기준 합리화
		지속가능한 건축도시 설계시스템 연구
		건축도시 정보화 설계시스템 정비를 위한 BIM시스템 도입
전통기술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건축도시 R&D 발굴 및 지원		
지속가능한 건축디자인 활성화 방안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친환경적 건축산업 발전 대책 방안	에너지효율 달성을 위한 관련법 체계 정비
		통합적인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 개발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한 건축시스템의 개발
	지속가능한 건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지속가능한 건축을 위한 설계, 시공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도입
	지속가능한 건축을 위한 지원 방안 구축	민간사업자의 지속가능한 건축 시범 프로젝트 지원 건축관련 중소기업체의 에너지관련 기술도입 지원

〈표 II-15〉 건축경쟁력분야의 정책이슈

추진전략	중점과제	실천과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건축문화 역량 강화	지역건축산업의 육성	지역기반 건축산업 활성화 방안
		지역의 건축도시전문인력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지역 명소화 사업지원
		지역대학의 건축, 도시관련 학과에 대한 특화 지원
		지역성을 반영할 수 있는 건축도시사업에 적용될 자재 발굴 및 생산, 유통시스템 지원
		지역의 건축도시산업 관련 자활기업 육성 및 지원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축산업의 국제화 추진	글로벌 스탠더드 제도 기반 구축	건축도시 관련 법규정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추진
		건축도시 설계·엔지니어링분야의 글로벌 스탠더드 계약제도 도입
		설계기준,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국제화
		기술경쟁에 주목하는 심사, 심의제도 마련
		국내외 관련 통계 및 정보시스템 구축
	건축도시설계·엔지니어링 분야의 해외진출 지원	건축도시 설계·엔지니어링분야의 국제경쟁력 확보 전략 수립
		민관 협업에 의한 건축도시 설계·엔지니어링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
		국내 유망 신진건축가의 발굴 및 해외 홍보 지원
	건축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글로벌 시장개방에 대비한 중소 건축자재 생산업체의 지원·육성
		서비스 시장개방에 대비한 건축설계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
건축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 연구개발 활성화	국제시장을 선도할 첨단 건축기술의 확보	초고층 건축물 설계 및 시공기술 개발
		친환경, 에너지절감 신건축자재 개발
		지속가능한 건축 도시설계 시스템 구축
	건축도시설계·엔지니어링 산업 R&D인프라 구축	건축도시설계, 엔지니어링 산업 R&D 사업평가 및 성과 관리체계 강화
		경쟁력있는 건축도시설계, 엔지니어링 산업 R&D 인력양성 및 관리
		건축도시설계, 엔지니어링 산업 R&D 협력체계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육성	건축도시설계, 엔지니어링 산업 R&D 성과확산 시스템 구축	
건축도시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	건축도시관련 교육제도 내실화	건축도시관련 교육기관의 역할재조정
		건축관련 인적자원의 효율적 수급관리를 위한 대책수립
		경쟁력 있는 건축도시설계·엔지니어링산업 R&D 인력양성 및 관리
	민간전문가의 양성 및 지원 네트워크 구축	민간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육성방안 구축
		민간전문가의 능력검증을 위한 평가시스템 개발
	세계적 건축교육시스템 구축	세계적인 건축교육 전문기관 설립·운영
		건축사의 자격유지 및 갱신을 위한 계속교육 제도의 시행

〈표 II -16〉 건축문화분야의 정책이슈

추진전략	중점과제	실천과제
한국 건축문화자산의 창조적 계승	건축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대한 제도적 기반 정비	한옥의 진흥을 위한 법·제도 정비
		근대건축물 및 우수한 건축물 지정·관리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
	건축문화 자산의 현대화 및 계승을 위한 R&D지원	한옥건축의 현대화를 통한 산업화 모델 개발 지원
		건축문화자산 보존을 위한 기술 연구 지원
	건축문화자산의 보존 및 보급 시범사업 추진	한옥마을 등 한옥 시범단지 조성
		우수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 선정 사업 추진
지속가능한 건축문화산업 지원·육성	건축문화산업 관련 국가 기반조성	건축도시박물관 조성
		국가주도형 건축도시문화 시범사업 추진
	건축도시관련 문화산업 활성화	도시문화페스티벌 등 건축관련 문화산업 지원
		설계공모 다양화
		건축도시 book affair 개최
	한국의 고유한 건축도시 산업 해외진출 지원	한국 고유의 건축도시설계기법의 해외진출 지원
국내 건축가 및 도시설계가의 해외전시 및 진출지원		
국토·도시건축 기록자료 구축 및 활용	체계적인 기록자료 기반구축	주제별 아카이브 구축
		건축도시공간 정보관리 표준형식 및 공유 기반 개발
		건축도시공간 정보관리 전담기관 확보
		대외협력 및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국민에 대한 건축교육 및 홍보의 강화	건축교육 기반조성	건축의 공공성 인식 포럼 결성 및 운영
		건축진흥재단의 설립 및 운영
	건축기초교육용 자료발간	초·중·고등학교교육 건축교육 교재 개발
		일반국민홍보용 교양건축 교재 개발
	건축도시문화에 관한 지속적 홍보 강화	민간주도의 전국단위 건축문화 축제 운영 지원
		이달의(올해의) 건축도시문화 시상
올해의 발주자(건축주)상 시상		

5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지침 방향 설정

1)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지침 방향

(1) 계획수립 전담팀의 구성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전담조직은 계획수립 주체인 국토해양부의 주무부서 담당관과 계획수립에 관한 용역을 진행하는 연구팀이 합동으로 팀을 구성하여 진행한다.

- 국토해양부 : 도시정책관과 건축문화팀내 담당자 3인
- 연구수행팀 : 연구책임자와 연구원 등 5~7명

국토해양부 주무부서(도시정책관과 건축문화팀)는 계획수립의 주체로서 건축정책기본계획의 기본방향과 비전 및 목표 설정에 관한 주요 정책결정 단계에서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하고 전체적인 계획의 방향을 결정한다.

연구수행팀은 계획수립을 위해 필요한 현황조사 및 분석,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 전문가 TF팀의 구성 및 운영, 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 보고서작성 등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의 전과정에 관여하며 원활한 계획수립 작업을 추진하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수행한다.

(2) 전문가 TF팀의 구성 및 운영

□ 전문가 TF팀의 구성방식

건축정책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추진전략과 실행과제의 도출을 담당할 전문가 TF팀을 구성한다.

계획수립에 참여할 전문가 풀은 건축·도시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로 대학교수, 국책연구소 연구원, 건축사, 도시계획가, 엔지니어링업체 종사자, 관련 학협회 종사자 등을 총망라하여 누락되는 분야가 없도록 충분한 인원으로 풀을 구성한다.

전문가 풀에 포함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공분야와 관심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0명 내외의 전문가를 선정한다. 선진국의 건축정책에 관한 사례조사 등을 목적으로 국외의 전문가로 별도의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필요한 경우 국제세미나 등을 통해 외국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도 있다. 건축·도시분야의 관련 학·협회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조요청을 통해 관련단체의 집단적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대표자를 TF팀에 참여시키거나 별도의 자문단을 구성하는 방법도 고려한다.

전문가 TF팀은 건축정책에 관한 추진전략과 실행과제의 도출이라는 실질적인 업무 이외에도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관련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된 내용들을 소속된 단체 또는 집단에 피드백해서 공론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과 자원을 배분한다.

전문가 TF팀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계획수립 전담팀에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나 선진국의 건축정책 추진내용과 사전조사를 통해 도출된 정책이슈 발굴결과를 토대로 국토환경디자인, 건축경쟁력, 건축문화의 3가지 부문별로 세분하고 별도로 정책비전 설정을 담당하는 팀을 포함하여 4개의 부문별 TF팀과 부문별 TF팀의 팀장 등으로 구성된 총괄TF팀을 두는 방식이 적합하다.



〈그림 II-18〉 전문가 TFT 구성 기본방향

□ 전문가 TF팀의 부문별 구성 및 역할

○ 비전부문 :

인력구성은 건축기본법에 관한 연구를 담당했던 연구원, 건축관련 전문가(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 건축관련 학계 교수, 관련부처 실무진 등으로 구성한다. 선진국의 건축정책 패러다임을 분석하고, 건축의 현황 및 여건전망을 통한 정책비전, 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는 등 정책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 국토환경디자인부문 :

인력구성은 건축관련협회 전문가(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도시관련협회 전문가(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관련학계 교수, 관련부처 실무진 등으로 구성한다.

건축기본법 제11조의 내용 중 건축관련 기초연구 진흥을 통한 품격 및 품질향상, 건축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합리적인 통합디자인 기반구축, 공공 건축물 및 공간환경 디자인 거버넌스 체계구축에 관한 내용을 논의·검토한다.

○ 건축경쟁력부문 :

인력구성은 지역건축전문가, 엔지니어링부문 전문가, 관련학계 교수, 관련부처 실무진 등으로 구성한다.

건축기본법 제11조의 내용 중 지역정체성 확보를 위한 지역건축문화 역량강화, 건축산업 국제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향상,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서 효율적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확대에 관한 내용을 논의·검토한다.

○ 건축문화부문 :

인력구성은 아카이브 관련 전문가, 건축관련 시민단체, 한옥관련 전문가, 관련학계 교수, 건축·도시관련 협회 등으로 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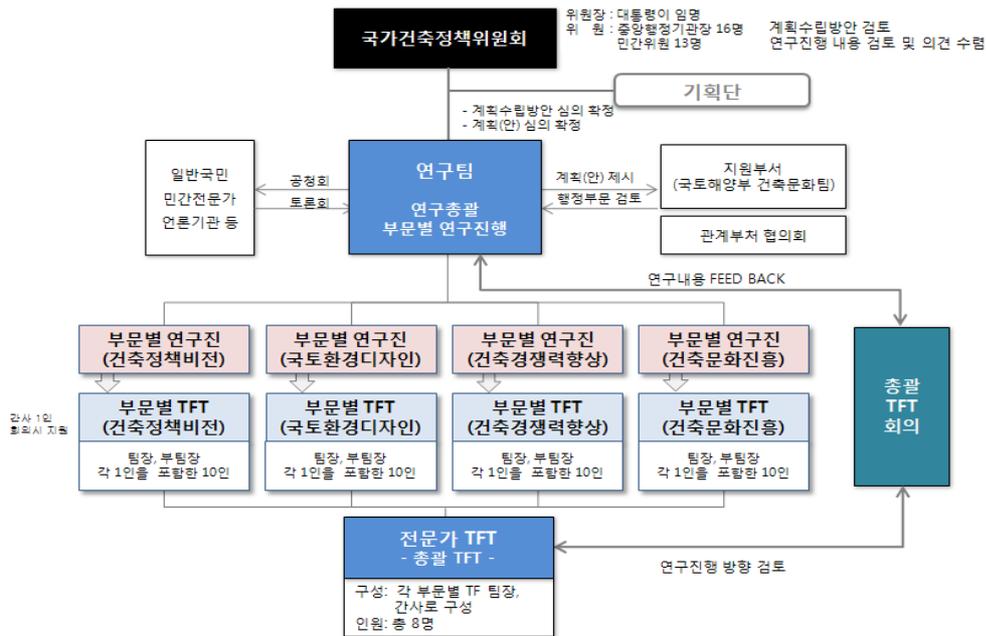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내용 중 국민을 위한 건축교육홍보, 한옥의 보전과 진흥을 비롯한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 보전,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국토·도시·건축 기록자료 구축에 관한 내용을 논의·검토한다.

□ 전문가 TF팀의 운영방식

부문별로 구성된 전문가TF팀은 계획수립 전담팀의 부문별 연구담당자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외부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한 건축정책 각 부문별 추진전략과 실행과제를 논의·도출한다.

선정된 실행과제에 대해서는 과제의 위계와 중요도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중점과제와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한다.

총괄TF팀은 부문별 TF팀의 팀장과 부팀장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연구책임자가 담당하며 전체 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각 부문별 TFF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인 의견조율을 담당한다.



〈그림 II-19〉 전문가 TFT의 운영체계

(3) 추진주체별 역할 분담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정책기본계획에 관한 최종 심의·조정을 담당하며 민간위원 13명과 정부위원(중앙행정기관의 장) 16명으로 구성된다. 계획수립 방안에 관한 심의와 계획안에 대한 심의·확정을 담당한다.

□ 지원부서 : 국토해양부 건축문화팀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주체인 국토해양부를 대표하여 계획수립 전 과정을 총괄 관리하며 건축정책기본계획(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나 의견청취, 지자체와의 협의 및 의견청취 등 행정적인 지원을 담당한다.

□ 연구팀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의 진행과 전문가 TF팀의 구성 및 운영, 보고서의 작성 등 실무적인 측면에서 계획수립을 진행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한다.

□ 관계부처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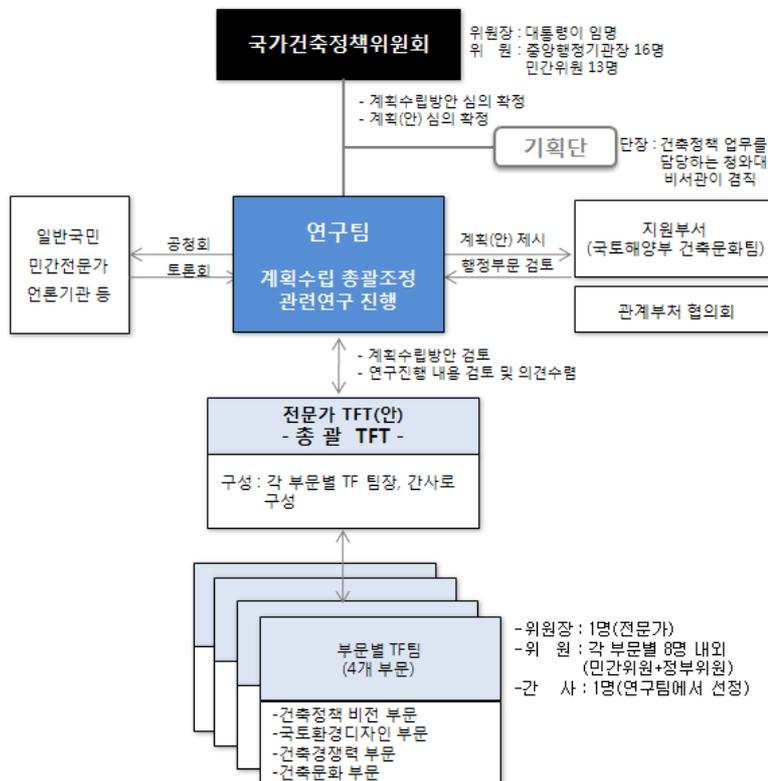
건축·도시분야의 정책사업을 시행·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부처내 사업담당자들로 구성되며 건축정책기본계획(안)에 대한 부처간 업무협의를 부처내 의견수렴 등을 담당한다.

□ 전문가 TF팀

건축·도시분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과 실행과제의 도출과 전문분야에서의 정책계획에 관한 공론화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 일반 국민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최종 수혜자로서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계획수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계획수립 전담팀에서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홍보와 의견청취를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그림 II-20〉 계획수립 추진주체별 역할분담

(4) 계획수립 범위 및 소요기간

□ 계획수립의 범위 설정

건축기본법 제10조에서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시행기간은 5년⁴²⁾ 주기로 명시하고 있으나 전략(과제)의 성격에 따라서는 단기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와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과제별로 추진일정을 별도로 설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적 범위는 건축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한 내용을 기초로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여 설정한다.

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목표연도는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등을 감안하여 2009~2014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계획수립 소요기간 산정

미국의 부처별 전략계획 수립에는 통상적으로 9~12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여타 기본계획 수립용역도 6~15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9~12개월을 소요기간으로 설정한다.

계획수립에 관한 연구용역은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등 사전조사의 성격으로 본격적인 계획내용에 관한 논의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전문가 TF팀의 구성에 앞서 최소 3개월 이전부터 시행한다.

계획의 수립과정에서는 건축정책의 필요성과 방향 등 공론을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토론회와 공청회, 심포지엄 등을 개최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사전검토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국제심포지움 등 해외 발제자가 참여하는 토론회의 경우에는 발제자 섭외와 발표자료 준비 등을 위해 최소 3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이전의 관련 통계자료의 미비 등으로 현황과약을 위한 조사 및 분석작업에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격적인 계획수립에 앞서 예비적인 연구용역을 별도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42) 미국의 전략계획은 통상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에너지성(DOE) 전략계획 수립 지침)

(5)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내용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절차는 선진국의 전략계획에 관한 분석내용과 우리나라의 유사 법정 기본계획의 구조에 관한 분석결과 도출한 건축정책기본계획의 구조적 틀을 중심으로 단계별 진행과정을 정리하였다.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건축정책기본계획의 구성체계 조사

- 근거법령인 건축기본법에 관한 조사와 분석
-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과 범위, 구조적 틀에 대한 분석
-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역할과 성격 규명

○ 국내 유사 법정 기본계획에 관한 조사

- 유사 법정 기본계획의 구성체계 조사
- 부처별 기본계획 수립현황 및 역할
- 유사 법정 기본계획과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역할분담 및 위계설정

○ 해외 선진국의 건축정책 사례조사

- 선진국의 건축정책 추진현황 및 배경에 관한 조사
- 선진국 건축정책의 내용과 구성체계 분석
- 미국식 전략계획의 수립현황 및 구조적 틀에 관한 분석

□ 건축정책 기본계획의 이해

- 기초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정책기본계획의 구조적 틀 완성
- 구조적 틀과 함께 계획의 내용에 대해 사전 검토

□ 건축산업 동향 등 건축현황 조사

- 건축생산 프로세스에 대한 조사
- 국내외 건축관련 산업구조 조사 및 분석
- 건축문화기반에 관한 현황조사

- 부처별 건축관련 정책 및 사업추진 현황 조사
- 건축정책의 수행주체별 현황 조사

□ 건축정책 비전 및 목표설정

- 계획수립 전담팀(지원부서와 연구진)을 중심으로 비전 및 목표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여 몇가지 초안을 작성
- 계획수립 전담팀에서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전문가TF팀의 비전부문 담당 TF팀에서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하며 비전과 목표의 대강을 결정
- 계획수립 전담팀과 비전부문 TF팀이 참석하는 합동 워크숍을 통해 최종 비전과 목표를 확정하고 총괄TF팀 회의를 통해 부문별 TF팀의 추진전략과 전략(과제) 도출 논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

□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지침 제공

- 본격적인 추진전략과 전략(과제)의 도출을 위한 논의에 앞서 연구팀에서는 계획수립의 절차와 내용 등을 담은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전문가 TF팀에 제공하고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함
- 수립지침과 함께 연구팀에서는 사전연구와 기초조사 등을 통해 도출된 예비 정책이슈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논의의 출발점이 되는 정책과제 초안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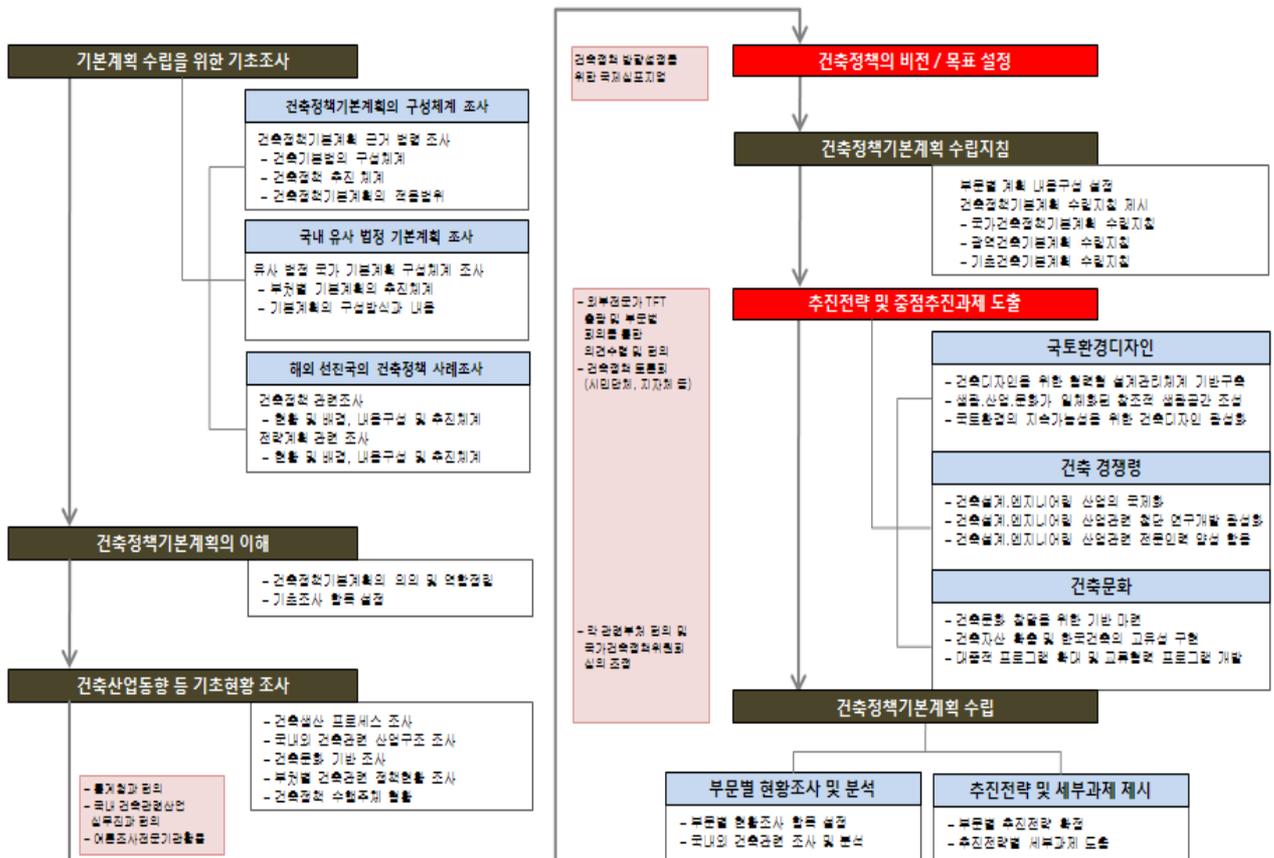
□ 분야별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 도출

- 분야별 전문가 TF팀에서는 연구팀에서 제공한 정책과제 초안을 바탕으로 건축정책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추진전략과 중점과제를 도출
- 도출된 추진전략과 중점과제에 대해서는 분야별 TF팀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총괄TF팀 회의를 소집하여 분야간 중복이나 누락 등을 검토하고 다시 분야별 TF팀에 검토내용을 피드백하여 재논의를 거치는 과정을 충분히 반복적으로 진행
- 도출된 추진전략과 중점과제에 대해서는 연구팀과 지원부서, 분야별 TF팀이 참석하는 합동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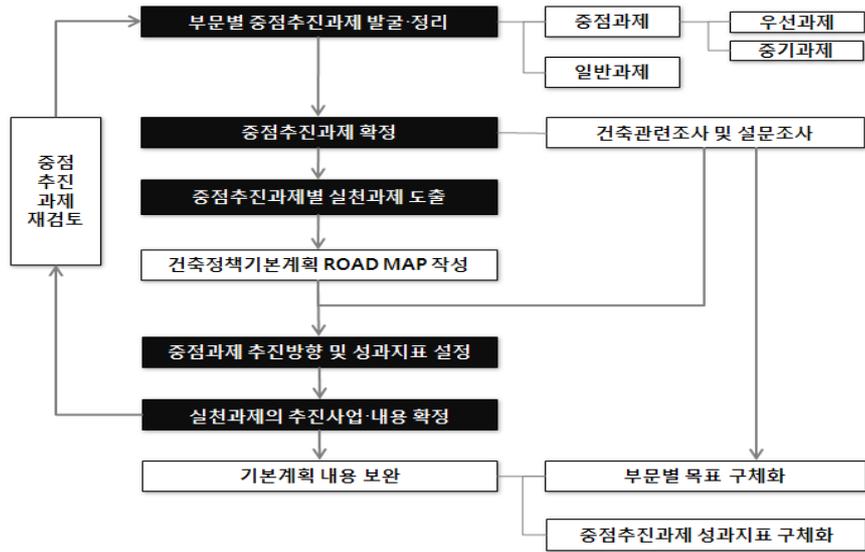
- 중점과제의 수준에서 연구팀과 지원부서를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도출하고, 중점과제별 실천과제 도출 및 투자계획, 일정계획 등을 논의

□ 건축정책기본계획(안) 작성

- 계획수립 전담팀에서는 도출된 중점과제별 실천과제를 확정하고 실천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
- 실천과제 수준에서 투자계획과 일정계획 등을 검토하고 중점과제의 성과지표와 연계한 투자계획 및 일정계획 확정
- 건축의 현황, 건축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과 중점과제, 실천과제가 패키지로 통합된 건축정책기본계획(안) 작성



(그림 II-21)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절차



〈그림 II-22〉 중점과제와 실천과제의 도출 흐름도

(6) 정책수립을 위한 건축현황 조사항목 설정

건축현황 조사는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추진배경과 수립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며 건축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항목은 건축기본법 제16조⁴³⁾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표 II-17〉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 건축기본조사

1. 건축허가·착공, 관련 산업 및 전문인력 등 건축에 관한 각종 통계
2. 해외 건축 선진국의 건축현황 및 건축정책에 관한 사항
3. 국민의 건축에 대한 수요, 인식도 및 기대수준에 관한 사항
4. 건축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전망
5. 건축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 양성, 활동현황 및 해외진출 현황
6. 국토·도시·건축 기록자료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
7. 건축문화유산의 유지·관리 및 보존현황
8.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지원사업 실태

43) 국토해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제1항의 조사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 이를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법적으로 명시, 건축기본법 제16조 내용

계획수립에 필요한 건축의 현황 및 여건전망을 위한 필요 통계지표를 도출한 후에는 관련부처인 통계청과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건축관련 통계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계획수립을 위한 전략 분석은 미래라는 시점 앞에 놓인 기회와 위협을 예측하는 것으로 그 정확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건축과 직접 관련된 사항 이외에도 사회·문화·산업적 측면 등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 분석이 필요⁴⁴⁾하다.

이하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 활용 가능한 현황조사 항목을 정리하였다.

□ 법·제도 현황

건축도시관련 법·제도 현황은 건축·도시관련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적용되는 모든 절차와 각종 법제에 대한 통계를 파악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진행방식을 제안함으로써 건축디자인의 품질과 품격을 향상시키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통계지표로 구성한다.

건축·도시관련 R&D정책 현황은 건축·도시분야에 관련된 R&D 기관수, 지원금액 등을 파악하여 건축관련 기초연구진흥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및 보완점을 찾기 위한 통계지표로 구성한다.

〈표 II-18〉 법·제도적 통계지표 현황

통계지표	주요항목	구분	확보방안
건축도시 관련 법·제도 현황	건축인허가 행정절차상 관련법률 항목	부처별 분야별 지역별 사업규모별 사업주체별	법무부, 국토해양부, 대한주택공사, 대한토지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등
	건축인허가 행정절차상 처리기간		
	건축인허가 행정절차 관련 담당부서		
건축도시 관련 R&D정책 현황	건축도시관련 R&D 기관 현황	분야별 지역별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재정경제부, 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 원, 국토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등
	건축도시관련 R&D 사업 현황		
	건축도시관련 R&D 지원 금액		
	건축도시관련 R&D 투자기간		

□ 교육·문화·홍보 현황

건축·도시관련 자료구축 현황은 건축도시 관련 기록자료, 인력자료의 현황

44) “어떠한 분석가도 전략적 계획 수립에 대한 사전분석에서 어떠한 요소들이 상호 작용하는 데 미치는 작용력을 정확하게 예측해 낼 수 없다.” Harry T. Dimitriou. “Strategic planning thought : lessons from elsewhere”. conclusion.

파악을 통해 자료구축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연구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통계지표로 구성한다.

건축·도시관련 문화재 현황은 건축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통해 건축문화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찾기 위해 필요한 통계지표로 구성한다.

건축·도시관련 교육 현황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일반 국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에 필요한 조사항목으로 구성한다.

건축·도시관련 문화행사 및 사업현황은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행사 및 일반인의 참여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항목으로 구성한다.

〈표 II-19〉 교육·문화·홍보관련 통계지표 현황

통계지표	주요항목	구분	확보방안
건축·도시관련 자료구축 현황	국토·도시·건축에 관한 기록자료 현황	유형별 지역별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국토연구원(국토정보연구센터), 한국건축가협회
건축·도시관련 문화재 현황	전통건축문화재 현황	지역별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관련지자체 관리대상
	근대건축유산 현황		
	건축문화재 보존 관련 인력 현황		
	건축문화재 보존 관련 지원예산 현황		
건축·도시관련 교육 현황	건축학과 관련 현황	분야별 지역별 성별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여성부, 노동부
	건축학과 관련 전문인력 배출현황		
	건축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일반인 대상 건축교육 프로그램 현황		
	교과과정(중등교육) 중 건축·도시관련 내용 노출 빈도수		
	전문인력 분야별 취업 현황		
	건축관련 자격증 교부자 관리 현황		
건축·도시관련 문화행사 및 사업현황	건축·도시관련 문화행사 현황	주체별 유형별 지역별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지자체별 담당부서
	건축·도시관련 문화사업 현황		
	일반인 참여 현황		

□ 산업체계 현황

건축관련 산업현황은 건축설계 부문을 지식기반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산업동향을 파악하고, 건축산업의 지역별 불균형 등을 해결하기 위한 통계지표로 구성한다.

건축물 발주 및 수주현황은 국내 건축관련 산업규모 및 실태를 파악하고, 건축관련 발주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지표로 구성한다.

건축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현황은 건축관련 산업의 국제화와 경쟁력을 진단하고, 해외진출 방안모색을 위한 조사항목으로 구성한다.

건축도시관련 문화산업 및 콘텐츠 현황은 건축문화의 산업적, 물리적 조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항목으로 구성한다.

건축도시관련 사업현황은 시범사업의 현황파악을 통해 효율적인 선도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건축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표 II-20〉 산업체계 관련 통계지표 현황

통계지표	주요항목		구분	확보방안
건축관련 산업 현황	건축산업 기초통계	사업체 현황	-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여성부, 건축관련협회
		종사자 현황	분야별 지역별 성별	
		사업체별 전문인력 현황		
		매출액 현황	분야별 지역별	
		사업체 임금 현황	분야별 지역별 직급별	
기초통계 항목에 대한 선진국 현황		-		
건축물 발주 및 수주 현황	민간 및 공공 발주 수량		유형별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한국건설산업연 구원,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 공사
	민간 및 공공 발주 금액			
	설계대가 현황			
건축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현황	국내활동 해외건축가 현황(등록업체)		-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건축관련협회
	해외활동 국내건축가 현황			
	국제공모 응모 및 당선 빈도수			
	외국 협동작업 현황			
	공간조성사업의 해외진출현황			
	국제건축행사 건축가참여현황			
해외언론사에 소개된 한국 건축도시관련 프로젝트 소개 빈도수				
건축도시 관련 문화산업 및 콘텐츠 현황	건축도시관련 문화사업 고용인원수		지역별 유형별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건축도시관련 문화사업 연간총생산액			
	건축도시관련 문화사업 유발이익			
건축도시 관련 사업 현황	사업현황		규모별 주체별 방식별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총사업비 및 건축비			
	사업기간			

□ 물리적 현황

건축물 현황 및 공간환경조성 현황은 건축정책 수립 대상의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한 사항으로 통계지표를 구성한다.

건축·도시문화 관련시설 현황은 지역별 건축문화 관련프로젝트 및 시설 현황을 조사하여 지역 건축진흥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한옥관련 현황은 한옥에 대해 보존과 재정지원, 거주자 만족도 등 전통 한옥의 보존과 산업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표 II-21〉 건축관련 물리적 통계지표 현황

통계지표	주요항목	구분	확보방안	
건축물 현황	건축물 인증 수량	제도별 등급별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지자체담당부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관련연구소	
	건축허가 · 심의 현황	지역별		
	매입가			
	보수비용			
	운영비용			
	건축물 년수 및 노후도			
	거주현황 기초통계			거주자
				세대수
				세대구성
				연령
	학력			
	소득수준			
	동일 항목의 해외 선진국 현황	-		
공간환경조성 현황	가로율	제도별 유형별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지자체 담당부서, 한국도로공사	
	녹지율			
	공원면적			
	1인당 공원면적			
	공공공간 사업현황			
	공공공간 사업 건설비용			
	공간환경 조성 예산			
공간환경 조성시 토지가격				
건축·도시문화 관련시설 현황	건축도시문화 관련시설 수	지역별 주체별 유형별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지자체담당부서	
	건설비용			
	건축비용			
	이용자 현황			
	건설기간			
한옥관련 현황	한옥가구 현황	지역별	국토해양부	
	한옥 거주자 현황			
	재정지원 및 예산 현황			
	한옥관련 산업체 현황			
	한옥관련 산업체 종사자 현황			
	한옥 보존년수			
	한옥 거주자 만족도			
동일 항목의 해외전통건축현황	-			

2) 광역(광역·기초)건축기본계획의 수립지침 방향

(1)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목적

□ 건축기본법 제12조에 의한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건축기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의 정책방향에 부합된 지역(광역·기초)건축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건축기본법 제12조 내용

- ▶ 시·도지사는 지역의 현황 및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위하여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광역건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 ▶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광역건축기본계획에 따라 시·군·구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초건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지역별 건축도시 관련사업의 전략적 관리

시·도별로는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내 건축도시 관련사업을 전략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해 광역차원의 정책목표와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구체화한 광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군·구별로는 “기초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초지자체 단위에서의 건축도시 관련사업의 통합과 연계운영⁴⁵⁾ 방안을 제시한다.

□ 지역성을 고려한 건축도시 정책사업의 추진

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도시 관련사업에 대해 지역적 특성을 계획에 반영하도록 유도하여 지역의 정체성 확보와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45) Peter Hall은 “지역정책(regional policy)은 영국의 계획수립 부문에서 서로 분리되어 있는 지역간의 정책에 있어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과 이와는 반대로 비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규제와 재정적 인센티브를 이용한 영국의 경제적 지형을 재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 함으로써 각 지자체 지역정책간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 : Peter Hall, "Evolution of strategic planning and regional development, p.25.

지역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건축도시디자인이 창출될 수 있는 문화적, 산업적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건축의 역할 강화와 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일상생활 공간을 조성하여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토대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지역건축기본계획의 범위 및 소요기간 산정

□ 지역건축기본계획의 범위

공간적 범위는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당해 지역의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을 대상으로 한다.

시간적 범위는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 연계하여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년도를 5년으로 설정한다.

건축기본법에서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정책목표를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선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후속으로 지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건축기본법 제12조에는 5년마다 지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는 성격에 따라 단기과제, 중·장기과제로 구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내용적 범위는 지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설정되어야 하므로 건축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내용에 기반을 둘 필요가 있다.

□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소요기간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은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지역내의 현안을 파악하고 정책방향에 대한 공론화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충분한 시간과 자원이 배분되어야 한다.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이 확정된 이후부터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이 시작되는 것이 통상적인 프로세스이지만, 지역의 현안에 대한 파악이나 계획수립의 당위성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을 얻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통상적인 계획수립 기간은 6~9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초자료 확보와 계획수립을 위한 주민홍보, 공감확산 등을 위해 3~6개월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 사전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계획의 수립과정에서는 지역 건축정책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등에 대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원과 시간을 배분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3)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항목

□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상위 계획 분석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시 상위 계획과의 연계를 위해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의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중점과제, 실천과제 등 세부 계획의 내용을 분석하여 지역계획의 방향과 범위를 설정한다.

□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지침 분석

해당 지역의 실정을 감안한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지침을 만들기 위해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분석하고 수립지침의 구성방식과 내용 등 세부항목을 도출한다.

지역계획을 전략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수립주체의 구성, 공론형성과정, 수립절차, 비전과 목표설정, 중점추진과제 및 실천과제, 구체적 성과지표 선정, 예산계획 등 기본계획의 요소를 갖출 수 있도록 구성한다.

□ 해당 지자체 및 주변지역의 도시계획 관련내용 검토

해당지역의 공간계획과 연계된 정책목표를 도출하기 위해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수도권 정비계획(수도권일 경우), 도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해당 지자체를 비롯한 인접한 지역의 도시계획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다.

또한 경관법에 의해 수립되는 경관계획, 공원 및 녹지 기본계획 등을 분석하여 지역건축기본계획이 기존의 도시관련 계획과 상호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지자체의 건축도시 관련사업에 대한 조사

시·도별, 시·군·구별로 추진되는 정책사업 가운데 건축·도시관련 사업을 조사·분석하여 유사사업 및 중복사업의 유무와 인접 지역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가능하도록 전략적 접근을 모색하여야 한다.

건축·도시 관련사업에 대해서는 건축의 공공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건축관련 제도와 디자인 프로세스의 개선, 지자체 차원에서의 건축·도시관련 육성·지원 방안을 도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의 전략(과제) 가운데 지자체에서 적용되는 사항으로 새롭게 추진해야 할 과제의 유무와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검토하여 지역건축 기본계획에 충분히 반영토록 고려한다.

그 밖에 지역의 건축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과제나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 건축·도시 분야의 정책이슈를 발굴하고, 시범사업 선정과 재정지원 등 건축기본법에 기반한 지원책을 활용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한다.

〈표 II-22〉 지역의 건축관련 사업현황 : 경기도의 사례(4대 분야 25개 과제)

(단위 : 억 원)

4대 분야	관련 과제	개별 사업	예산	사업 기간
앞서가는 경기도	남한강·북한강 글로벌 에코벨트 조성	▫ 강변천리길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95	'07~09
		▫ 경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699	'07~10
		▫ 연인산 도립공원 조성	1,200	'05~14
		▫ 가평 Art Valley 사업	미정	미정
		▫ 양평 두물머리 생태공원 사업	미정	미정
		▫ 명품전원주거단지 시범 추진	미정	미정
	경기북부 한반도 평화·통일벨트 조성	▫ 문화·생태·관광 인프라 구축	34,011	'05~14
중소기업 육성 및 서민경제 활성화	▫ 재래시장 활성화	미정	'06~10	
	문화·관광산업 육성	▫ 테마형 관광자원 및 체험관광 상품 개발	미정	~'08
편리한 경기도	-	-	-	-
잘사는 경기도	뉴타운 사업과 명품도시 개발	▫ 뉴타운 사업 추진	120	'06~20
		▫ 고덕 국제신도시 개발	11	'08~13
		▫ 광고 신도시 개발	94,000	'04~11
		▫ 대형 복합 신도시 건설(통탄2)	140,000	'07~12
	살기 좋은 농촌	▫ 농어촌 관광 산업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100	'07~10
	저출산·고령화 및 장애인 대책 추진	▫ 치매 중풍 노인 종합 지원 ▫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이자 문화 조성	미정	미정
매력있는 경기도	좋은 학교·우수한 인재 육성	▫ 학교 중심의 지역 공동체 구축	미정	미정
		▫ 공공도서관확충 및 활성화	미정	'06~10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체육 활성화	▫ 경기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계승 발전	124	'04~08
		▫ 역사·문화 유적 보전 및 정비	6,078	'99~20
		▫ 문화 인프라의 확충	514	'01~08
		▫ 다양한 계층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	미정	'06~10
	맑은 물·공기, 친환경 생태하천 가꾸기	▫ 시화 반월 등 산업단지내 환경 개선	미정	'06~08
		▫ 생태하천 복원 사업 추진	미정	'06~10
숲과 공원이 어우러지는 푸른 경기도	▫ 도·농 상생 숲 체험 쉼터 구성 ▫ 생활 주변의 녹지 공간 및 공원 확충	1,403	'06~10	
		608	'06~10	

□ 지역의 건축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을 위한 기초조사

지역내의 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관한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 분석한다.

- 건축물에 대한 정량적 조사(건축·도시계획적 자료)
- 건축허가·건축심의 현황
- 현상설계, 사업자공모(PF, BTL) 추진현황, 규모
- 공공건축에 대한 각종 통계(규모, 비용, 공급) 등

〈표Ⅱ-23〉 지역의 건축현황에 관한 통계 : 주택종류별 보급률(예)

- 주택의 종류 및 보급률(세대수, 보급률, 종류별 주택)(2005년 기준)
- 용어정의
 - ▶ 세대수(가구수) : 총가구-(단독가구+비혈연가구+집단가구+외국인가구) 주민등록상가구에서 비혈연가구와 1인가구를 제외한 보통가구를 말함
 - ▶ 주택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빈집 포함

〈주택의 종류 및 보급률 현황〉

지자체명	세대수 (가구)	합계	보급률 (%)	종류별 주택 (호수)			
				단독 주택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충청남도	491,784	634,949	129.1	347,185	245,882	23,659	18,223
강원도	416,266	501,072	120.4	258,563	213,991	21,401	7,117
충청북도	381,784	457,419	119.8	217,158	216,263	16,677	7,321
경상남도	814,619	943,211	115.8	438,457	455,419	25,789	23,546
제주	138,055	153,406	111.1	85,724	37,222	12,164	18,296
인천광역시	672,492	723,601	107.6	122,028	396,480	21,508	183,585
경상북도	895,829	943,647	105.3	555,202	331,235	32,429	24,781
대전광역시	372,544	379,897	102	94,470	242,475	15,974	26,978
부산광역시	953,922	967,138	101.4	277,545	555,033	41,069	93,491
경기도	2,715,715	2,736,201	100.8	554,265	1,707,868	153,943	320,125
전라남도	750,933	751,240	100	521,140	210,819	12,932	6,349
울산광역시	277,368	276,578	99.7	72,921	177,182	8,506	17,969
광주광역시	481,935	462,030	95.9	124,306	324,150	7,933	5,641
전라북도	621,735	589,001	94.7	299,497	271,062	14,709	3,733
서울특별시	2,712,189	2,439,483	89.9	673,324	1,212,961	131,784	421,414
대구광역시	826,114	720,493	87.2	218,005	379,528	8,757	114,203

주) 출처 : 지방자치단체 통계연보
 측정시기 : 연별(1회) 12월말 기준

○ 지역내 건축·도시관련 기초조사 항목 결정

〈표 II-24〉 지역의 건축관련 기초조사 항목

구분	조사항목
일반 현황	인구관련현황 : 자치단체별 세대 및 인구, 인구이동, 주요 국적별 외국인등록 현황, 장애 유형별 장애인 수 등
	지역일반현황 : 행정구역면적 등
교육 현황	유치원, 초·중·고·대학교 현황 등
문화 현황	문화재, 문화공간, 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수, 공공도서관, 공립 문화예술단체 행사개최 실적, 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착수실적 비율, 관광지 방문객 증감률 등
도시·건축 일반 현황	토지거래현황, 개발제한구역, 주택의 종류 및 보급률, 건축허가 증감률 등
지역경제·산업 현황	산업대분류별 사업체 현황, 사업체별 매출액 등 규모, 지역 건축관련업체의 현황 등
환경 현황	도시공원면적 등 현황, 시가화면적 비율, 주차장 확보율, 도로포장률, 자전거도로 증감률 등
사회복지 현황	가구당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장애인 복지시설 수용능력 및 편의시설 설치율,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수용능력, 지역사회복지관 등
행·재정 현황	예산결산액, 공유재산 현황, 재정자립도, 자체수입대 인건비비교, 예비비 확보율, 주민1인당 자체수입액, 행정기구 및 인력 현황 등

○ 건축·도시 관련제도, 기준, 정책사업 등에 대한 각종 자료 조사·분석

- 건축·도시 관련법·제도 및 정부 작성 지침·기준 수립 현황
- 대규모 국책 사업에 대한 해당지역 추진현황 및 관련내용 통계
- 주요 건축물(공공, 민간) 및 관련사업에 대한 현황과 통계 등

○ 건축·도시공간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조사

- 근대건축물, 문화재 건축물, 비문화재급 전통건축물 현황(규모, 현황)
- 문화적 가치가 있는 현대건축
- 장소적 가치가 있는 도시공간구조와 도시조직 현황 등

(4)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주체 선정 및 공론 형성

□ 계획수립 주체 선정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은 해당 지자체의 건축정책 추진부서가 주체가 되며 계획수립 전 과정에서 기초자료의 수집 및 조사, 계획수립 지침의 작성, 전문가 TF팀의 구성 및 운영, 보고서의 작성 등을 담당할 연구팀으로 구성된다.

지자체의 건축정책 추진부서에서는 계획수립 전담조직으로 부서장과 담당자 등 3명 내외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역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등의 논의과정을 주도한다.

연구팀은 해당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제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4~5명으로 구성하며, 지역의 건축현황 및 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작성 등 본격적인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에 앞서 사전연구를 통해 기초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획수립시 해당 지역의 건축정책에 관한 추진전략과 중점과제 등을 논의할 전문가 TF팀은 지역의 건축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토론회와 워크숍 등을 통해 전략(과제)를 도출한다.

□ 공론형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 및 주민제안 청취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당위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역의 현안을 중심으로 지역계획에 답아야 할 내용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제안을 받아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정책목표 설정

□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과의 관계정립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추진체계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면서 지역적 특성과 정체성을 살린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지역건축정책의 비전과 목표에 대해 논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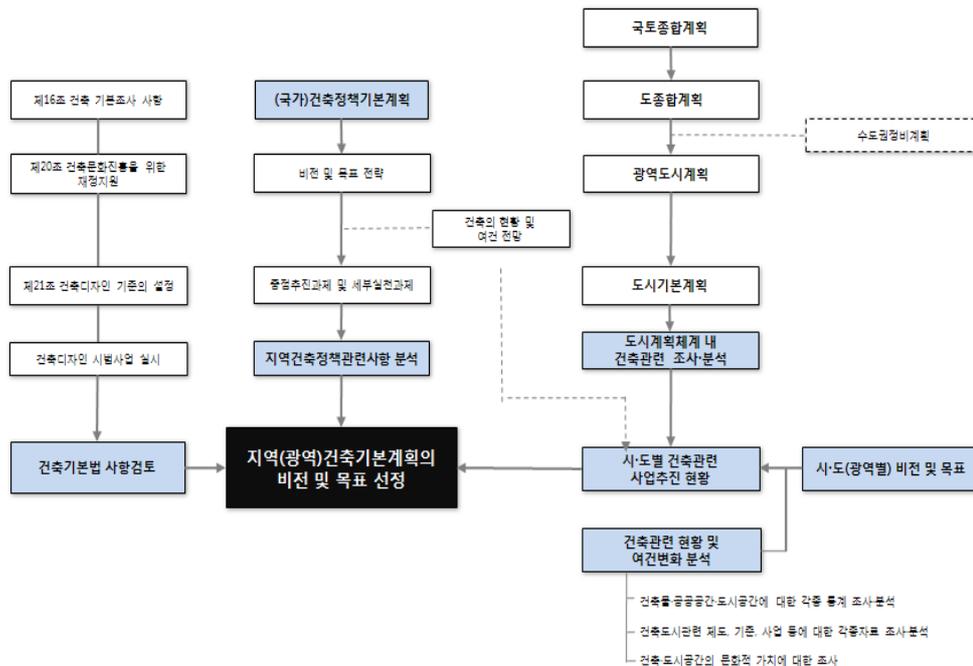
□ 도시계획 체계에서 지역 건축정책의 방향 검토

국토·도시차원의 공간계획인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수도권일 경우),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도시계획 체계내에서 지역의 건축관련 정책현안을 도출하고 해당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방향을 도출한다.

□ 지역의 건축현황 및 여건, 전망을 고려한 정책목표 설정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과의 연계성과 도시계획 체계내에서의 건축정책 추진 방향을 검토한 후 연구팀에 의해 분석 정리된 지역의 건축현황과 여건변화, 미래전망 등을 토대로 비전 및 목표의 초안을 작성하고 전문가 TF팀과 지자체의 계획수립 전담부서, 연구팀의 합동 워크숍을 통해 비전과 목표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다.



〈그림 II-23〉 지역건축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설정을 위한 고려사항

(6) 지역건축기본계획의 내용 및 구성체계

□ 지역 건축정책의 특화를 위한 자율성 부여

지역건축기본계획에 포함해야하는 정책과제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별

도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4조 내용

- ▶ 지역(광역·기초)건축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을 바탕으로 서로 연계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건축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한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을 기본으로 지역의 건축·도시 관련 정책사업 추진현황 등을 고려하여 항목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 건축·도시관련 프로세스의 전반적인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지역건축기본계획에서는 지역의 현실을 감안하여 보다 실행력이 높은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자체별로 추진중인 건축·도시관련 정책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특성을 부각할 수 있는 전략적 개선책 및 방향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며 지역의 건축 디자인 기준이나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민간전문가의 참여 등 구체적인 정책 실행수단을 충분히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III.

결론

(a u r i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국가단위의 건축정책기본계획과 지역단위의 건축기본계획에 대한 방향과 구성체계를 설정하고, 계획수립을 위한 지침(안)을 제안하기 위해 이루어진 연구이다.

건축정책기본계획은 2008년 6월 건축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에서 수립·시행하는 5년 단위의 법정 기본계획으로 국토기본법에 의해 수립되는 국토종합계획과 함께 건축·도시분야의 최상위 정책계획의 위상을 지닌다.

국토환경에 관한 각종 사업이 부처별,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진행되는 사항에서 부처간 칸막이식 예산 집행과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예산의 중복이나 유사사업의 추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건축정책기본계획은 다양한 건축·도시관련 정책사업의 조정과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건축정책기본계획이 건축·도시 관련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유도하는 정책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단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전략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함을 밝히고 전략계획의 내용과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여 건축정책기본계획의 구성체계를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건축기본법 등 관련 법규정에 관한 분석을 토대로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행 주체로서 건축정책의 총괄적인 심의·조정을 담당하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역할과 계획과의 관계를 밝히고, 국가의 건축정책과 지역단위 건축정책의 연계를 통한 성공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과 지역(광역 및 기초)건축기본계획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이러한 계획간 위계의 설정과 함께 전략계획으로서 건축정책기본계획이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의 건축·도시분야가 추구해야 할 미래의 비전과 정책목표, 추진전략,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에 해당하는 중점추진과제 및 그 세부실천과제와 예산 배분, 일정 계획 등을 담아야 함을 제안하였다.

최초로 시도되는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선진국의 건축정책에 관한 추진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여 계획수립을 위한 초기의 논의방향을 설정하였다.

선진국에 대한 건축정책 사례분석과는 별도로 우리나라의 건축정책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외부전문가와 내부연구진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수차례에 걸친 워크숍을 통해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이슈를 발굴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최종적인 목표인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 및 지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계획수립 지침(안)을 작성하기 위해 검토사항과 구체적인 내용구성 방식, 추진체계 등 계획수립 지침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모두 정리하여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안)을 별책의 형태로 제시하였다.

· 참고문헌

· summary

· 부록

유사 법정기본계획 현황

(a u r i

참고문헌

1. 건설교통부, 품격 높은 문화인프라 구축 및 도시문화 조성방안, 2006
2.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네덜란드 NAI-Berlage Institute에 대한 연구, 2007
3.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도시공간에 관한 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2007
4. 건설위,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 실천전략 수립연구, 2006.12.
5. 건설위,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백서, 2007.
6. 건설위,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고부가 건설용역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2007.
7. 건설위, 건축도시환경 공공사업 정책실태 조사 연구, 2007.
8. 건설위, 좋은건축 좋은도시를 만드는 건축정책, 2007.
9. 대한건축학회, 건축기본법 연구, 2006.
10. 서울특별시 주택국 도시디자인과, 서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2006
11. 김광현, 건축제도와 건축의 공공성, 건축, 49(3). 2005.3
12. 김광현, 건축문화정책은 왜 필요한가, 월간 건축문화, 2006.3.
13. 김광현, 건축설계의 미래를 위한 6개의 주제, 건축, 50(7). 2006.7,
14. 김상호, 한국의 건축정책 비전, 건축과사회, 2007년 여름호
15. 김상호, 건축기본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 건축과사회, 2007년 겨울호
16. 김상호,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위상과 역할, 건축과사회, 2008년 여름호
17. 김상호, 공공건축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정책적 제언, 한국주거학회지, 2008.6

18. 김용용, 도시재생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대응과제, 월간국토, 315
19. 문홍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건축정책방향, 건축, 47(3). 2003.3
20. 이정만, 건축정책과 경제 간담회, 건축, 45(1). 2001.2
21. Dimitriou, H. T. 2005. Globalization, mega transport projects and the making of mega places. Paper presented to session on Social and Economic Factors of Transportation, 84th Annual Meeting of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Washington, DC, January
22. Courtney, H., J. Kirkland and P. Viguerie 1999. Strategy under uncertainty. In Harvard Business Review on managing uncertainty. Cambridge, MA: Harvard Business School
23. Quinn, J. B. 1995. Strategies for change: some useful definitions. In The strategy process, H. Mintzberg, J. B. Quinn and S. Ghoshal. London: Prentice Hall
24. Steiner, G. A. 1997. Strategic planning: a step-by-step guide. New York: Free Press Paperbacks.
25. Geus, A.P. de 1999. Planning as learning. In Harvard Business Review on managing uncertainty. Cambridge, MA: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26. Kurtz, C. F. and D. J. Snowden 2003. The new dynamics of strategy: sense-making in a complex-complicated world. IBM Systems Journal, Fall.

해외 건축정책 자료집

1) Netherland

27. Action Programme on Spatial Planning and Culture Architecture and belvedere Policy 2005-2008 Summary, Netherland, 2005.
28. ARCHITECTURAL POLICY 2001-2004 : SHAPING THE NETHERLANDS SUMMARY, January 2001.

2) Finland

29. The Finnish Architectural Policy : The Government's architectural policy programme, December 1998.

3) Scotland

30. A Policy on Architecture for Scotland, 2001.
31. BUILDING OUR LEGACY : STATEMENT ON SCOTLAND'S ARCHITECTURE POLICY 2007.
32. Designing places A Policy Statement for Scotland, November 2000.
33. Planning etc.(Scotland) Act 2006.

4) England

34. CABE Corporate Strategy 2002-2005
35. CABE Corporate Strategy 2003/04-2005/06.
36. CABE Corporate Strategy 2006/07-2008/09.
37. CABE Works, here's how Annual review 2005-2006.
38. cabe annual report 2006 07 financial statements and accounts.
39. Who we are What we do Why it matters an introduction to CABE.
40. Spaceshaper A user's guide.

5) Germany

41. 1st Status Report on Building Culture in Germany - Situation, development and recommendations.
42. Quality in public construction.

6) 기타

43. A Consultation Paper on a Model Architecture Policy, October 2005.
44. Architecture&Quality of Life. A Policy Book by the Architects' Council of

Europe 2004.

45. Architecture and the built environment policies, strategies and actions. ARTS COUNCIL of Northern Ireland.
46. 建築基本法制定準備會, 建築基本法の提案, 日本, 2006. 7

summary

Study on Establishment of Directions to Architectural and Urban Spatial Policy in Consideration of Qualitative Features

Kim, Sang Ho
Kim, Jin Wook
Kim, Young Hyun
Lee, Min Woo

Introduction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Framework Act on Architecture, which went into effect in June 2008, has laid an institutional foundation to actualize a sustainable policy based on public values of architecture that is to replace existing supply-oriented development policies. Coupled with this, in order to create a mature social infrastructure propped up by high economic growth, it is imperative to shift from individual-oriented to public-centered values. To achieve this, it is urgent to meet the qualitative requirements of the public living environment, which has emerged as an urgent policy task in the domestic architectural and urban field.

In this transitional period, both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newly develop systems and laws, and restructure existing systems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buildings and spatial environments. In addition, they should establish and implement effective architectural policies so as to create a pleasant living environment for the people and enhance the cultural and technological levels of buildings and spatial environments.

This study aims to provide basic data required to establish the Master Plan for Architectural Policy which is expected to play the role as a steering gear for national architectural policies, and present guidelines to the Master Plan establishment which can be employed for the actual Master Plan formulation.

Master Plan for Architectural Policy as Strategic Plan

In the architectural and urban field, it takes a long time to verify the effect of innovation through policy implementation while stakeholders involved are diverse and the impact on people's daily life is extensiv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promote policies from a mid- to long-range perspective.

To date, the budget for the nation's architectural policies has been divided among government departments and agencies and spent separately, due to which the nation has been failing to achieve integrated project promotion. As a result, the synergistic effect such as linkage among public facilities has been insufficient. For example, several stakeholders separately promote projects within the same or neighboring districts, causing insufficient linkage among facilities. Furthermore, often, the nature of the projects promoted by separate departments and agencies in support of local governments is not clear, and support is concentrated in certain local governments and frequently overlaps with each other.

The Master Plan for Architectural Policy is a legal document which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nd implement pursuant to the Framework Act on Architecture over the next five years (2009–2014). In addition, the Master Plan is a cross-governmental action plan used to deliberate, coordinate, integrate and streamline architectural policies of agencies concerned through the National Commission on Architectural Policy, which is to be constituted pursuant to the Framework Act on Architecture. The plan should assume the nature of a strategic plan to promote a systematic budget operation and address regional disparity in regard of existing architecture-related projects randomly promoted by separate local governments.

Roles and Promotion System

The Framework Act on Architecture, the parent law of the Master Plan for Architectural Policy, divides the plan into the National Master Plan for Architectural Policy and Regional Master Plan for Architectural Policy according to the spatial and content categories and the main actor for the establishment, and accordingly sets the role of the Master Plan. Apart from this, the Framework Act stipulates the following three as the roles the plan should undertake:

First, the plan is intended to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architectural and urban field. In other words, a strategic policy tool is required to scientifically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Sustainable Territorial and Environmental[Architectural and Urban] Design,' one of the 100–national policy agendas of the incumbent government.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present specific directions to protect cultural assets for future generation and develop while maintaining cultural identity, as well as for the current competitive edge.

Second, the plan is designed to refurbish the system for territorial and environmental design management. Architectural policies target buildings and spatial environment across the territory. They constitute a new policy area to effectively manage and promote sustainable develop by introducing the concept of design to the territory and environment, which have simply remained as a target of development and management until today.

Third, the plan is aimed to improve the standard of the nation based on policies for architectural and cultural promotion. The Master Plan stipulates that efforts should be made to explore institutional measures to select good designs primarily for public

buildings and spatial environment. Through these efforts, it is essential to consistently explore and support leading projects for a better urban and national standard.

To this end, the Framework Act on Architecture stipulates the constitution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Commission on Architectural Policy. The major roles are as follows:

First, as the coordinator, the Commission should address the difficulties in the linkage and coordination among projects when individual agencies separately promote architectural and urban projects. Second, the Commission should review the directions of the architectural policies by deliberating and revising the Master Plan for Architectural Policy and the Master Plan for Regional Architectural Policy, which ar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every five years. In addition, by clearly setting up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al Commission on Architectural Policy and the Master Plan for Architectural Policy, the Commission should serve the role of a coordinator to explore and comprehensively manage specific implementation tools for architectural policies.

Case Study of Architectural Policies Overseas

The UK, the Netherlands, Germany and Finland are some of the examples of those who have significantly enhanced the nation's cultural and industrial status based on successful architectural policies.

The UK has been publishing annual reports summarizing the architectural policy promotion status along with biennial strategic reports since 1999. In addition,

beginning with the 'Better Public Buildings, a Proud Legacy for the Future' in 2000, the UK has been consistently exploring and reporting on related policy issues which have potential impact on the society. The Netherlands is the world's first nation to implement national architectural policies in 1997, which are characterized by a long-term national vision of more than 20 years and a strategic framework for a step-by-step promotion of mid-term policies.

Scotland has installed the Architecture and Design Scotland (A+DS), an advisory board at the national level for policies involving architecture and design, thus engaging itself in public project planning and encouraging distinguished designs. In addition, the nation is carrying out vigorous activities including support, relevant research and publicity activities based on annual design reviews. Efforts by other countries for improvement in architectural quality include publication of diverse reports on architectural policies, which has been inspired by a national architectural policy promotion and the following success around 2000.

The study presents major contents of architectural policies in advanced countries by dividing them into three categories of 'territorial and environmental design strengthening,' 'architectural competitiveness improvement' and 'architectural culture promotion.'

Policy Issues in Architectural and Urban Field

In order to set directions and derive specific strategies for the Master Plan for Architectural Policy, it is necessary to precisely diagnose the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the nation is confronted in the architectural and urban field, along with the analysis on the current state of architectural policy promotion in advanced countries.

This chapter presents the sectoral policy issues derived through a number of workshops among internal and external researchers, focusing on the pending issues.

First of all, the study classifies the policy agendas derived at workshops among experts in the architectural and urban field into eleven items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under the Master Plan for Architectural Policy, which is stipulated in the Framework Act on Architecture. Based on this, the study presents promotion strategies, major tasks for promotion and specific tasks for practice.

Directions to Guidelines for Establishment of Master Plan for Architectural Policy

In order to establish the Master Plan for Architectural Policy, a specialized body for the plan establishment should be organized. The specialized body formulation should be jointly promoted by the department concerned from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the main body for the plan establishment, and by the research team to conduct the study on the plan establishment. The task force which will be in charge of deriving promotion strategies and tasks for practice,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Master Plan, should be formulated from a sufficient pool of experts among professors, researchers from state-run research institutes, architects, urban planners, those from engineering companies and those from academic circles concerned.

The study presents the step-by-step procedures of the Master Plan establishment focusing on the structural framework of the Master Plan for Architectural Policy, derived from the analysis of the strategic plans of advanced countries, and of the structure of domestic legal master plans of a similar kind.

The survey on the architectural status required for the plan establishment is carried out to secure the ground for the background and establishment of the Master Plan for Architectural Policy. The basic survey items on architecture are specifically stipulated in the Article 16 of the Framework Act on Architecture and in the Article 15 of the Enforcement Act of the Framework Act on Architecture. However,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o build statistical data on architecture through consultations with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is chapter presents specific assessment indicators for the current status survey items which can be used upon establishing the Master Plan for Architectural Policy, including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tatus,' 'The Educational, Cultural and Publicity Status,' 'The Industrial Structure Status,' and 'The Physical Status.'

The procedures for Master Plan for Regional Architectural Policy establishment are almost the same as those for the Master Plan for Architectural Policy. However, since existing planning systems, scope of the target and main establishment bodies are different,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with the Master Plan for National Architectural Policy when setting up the policy goals. Also, it is crucial to review the architectural policy direc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regional urban system.

Lastly, the study presents the proposal of the guidelines to Master Plan for Architectural Policy establishment in the form of a separate book, which can be used for the ultimate goal of the study, the establishment of the Master Plan for National and Regional Architectural Policy.

Key words: architectural policy, Framework Act on Architecture, Master Plan for Architectural Policy, National Commission on Architectural Policy, Master Plan for Regional Architectural Policy

부록

유사 법정기본계획 현황

1) 기본법에 의한 계획 현황

소관 부처	연 번	기본법	기본계획	수립 기간	위원회	특징	기타 실천계획
국무 총리 (1건)	1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일부개정 2006.10.4 법률 8050호]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	3	정부업무 평가위원회	2006년 시행	성과관리 전략계획 중앙 행정기관의 자체평가계획
공정 거래 위원회 (1건)	2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8852호]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3	소비자정책 위원회	2007년 시행	소비자정책에 관한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별시행계획)
국가 보훈처 (1건)	3	국가보훈기본법 [제정 2005.5.31 법률 7572호]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제1차 : 2006~2010)	5	국가보훈 위원회		연도별 소관 실천계획 (매년 11월 30일까지)
교육 과학 기술 (4건)	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8852호]	과학기술기본 계획 (제2차 : 2008~2013)	5	국가과학 기술위원회		
			지방과학기술 진흥종합계획	5	국가과학 기술위원회		연도별 시행계획
	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8852호]	-	-	-		
	6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일부개정2007.4.27 법률8389호]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제2차 : 2006~2010)	5	국가인적 자원위원회	인적자원개발 평가센터	연도별 시행계획
	7	자격기본법 [일부개정2008.2.29 법률8852호]	자격 관리·운영 기본계획	-	(자격정책 심의회)	2007년 시행	
국방부 (2건)	8	군인복지기본법 [제정 2007.12.21 법률 8731호]	군인복지 기본계획	5	군인복지 위원회	2008.3. 시행	
	9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8855호]	민방위 기본계획	1	(중앙민방위 협의회)		기본계획, 집행계획, 시·도계획, 시·군·구계획 으로 구분

소관 부처	연 번	기본법	기본계획	수립 기간	위원회	특징	기타 실천계획
국토 해양부 (8건)	1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8863호]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 (제3차 : 2008~2012)	5	건설산업발 전 심의위원회		연차별 계획
	11	건축기본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8852호]	건축정책 기본계획	5	국가건축 정책위원회 (지역건축 정책위원회)	2008.6. 시행	지역건축 기본계획
	12	국토기본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8870호]	국토종합계획 (제4차 : 2000~2020)	20		수정계획 (06-20)	도종합계획 지역계획(수도권 발전계획, 광역권 개발계획, 특정지역 개발계획, 개발촉진지구개 발계획 등) 부문별계획 소관별 실천계획
	13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8852호]	국가물류 기본계획 (2001~2020)	10 (5)	물류정책 위원회	수정계획 (2006~2020) 중기계획(2차) (2006~2010)	연도별 시행계획 지역물류기본계 획
	14	지속가능발전기본 법 [제정 2007.8.3 법률 8612호]	국가지속가능 발전 기본전략	20	국가지속 가능발전 위원회 (지방지속 가능발전 위원회)	5년마다 국가이행계획	국가이행계획
	15	철도산업발전기본 법 [일부개정 2006.12.30 법률 8135호]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제1차 : 2006~2010)	5	철도산업 위원회		철도산업구조개 혁기본계획
	16	토지이용규제기본 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8852호]	-	-	토지이용 규제심의 위원회	-	-
	17	해양수산발전기본 법 [제정 2002.5.13 법률 6700호]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	10	해양수산 발전위원회	(04.4.14) 매년해양수산 발전시행계획 확정	-

소관 부처	연 번	기본법	기본계획	수립 기간	위원회	특징	기타 실천계획
기획 재정부 (2건)	18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8852호]	-	-	부담금운용 심의위원회	-	-
	1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2007.5.11 법률 8423호]	기금운용계획	1	기금운용심 의위원회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 으로 구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제출)
기획 재정부 (국세청) (1건)	2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8870호]	-	-	-	-	-
노동부 (2건)	21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 2007.12.27 법률 8813호]	고용정책기본 계획 (중기계획:200 4~2008)	-	고용정책심 의회	중장기기본계 획	-
	22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개정 2007.8.3 법률 8635호]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5	근로자복지 정책위원회	-	-
농림 수산 식품부 (1건)	23	농업·농촌기본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8852호]	농업농촌발전 기본계획 (2004년 수립)	-	농정심의회	매년 농업·농촌동향 과 농정시책등에 관한 보고서 작성 (평가포함)->국 회제출	광역시·도농업· 농촌발전계획 (시·도계획), 시군·구농업농 촌발전계획 (시군·구계획)
농림 수산 식품부 (산림청) (1건)	24	산림기본법 [제정 2001.5.24 법률 6477호]	산림기본계획 (2008-2017)	10	-	연차보고작성-)국회제출	-
문화 체육 관광부 (4건)	25	관광기본법 [일부개정2007.12. 21법률8741호]	관광진흥계획	-	-	연차보고작성-)국회제출	-관광진흥 장기계획 -연도별 계획
	26	국어기본법 [제정 2005.1.27 법률 7368호]	국어발전기본 계획 (제1차 : 2007~2011)	5	국어심의회	2년마다 시행결과보고 서->국회제출	시행계획
	27	문화산업진흥기본 법 [일부개정 2007.8.3 법률 8635호]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기본계획		한국문화산 업진흥위원 회	매년 연차보고작성-)국회제출	세부시행계획 (문화산업 각 분야별 및 기간별로 계획수립)

소관 부처	연 번	기본법	기본계획	수립 기간	위원회	특징	기타 실천계획
	28	영상진흥기본법 [일부개정2007.12.21법률8744호]	-	-	-	-	-
법제처	2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 2007.5.17 법률 8442호]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5	외국인정책 위원회	외국인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연도별시행계획
보건 복지 가족부 (4건)	30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2003.5.29 법률 6909호]	보건의료발전 계획 (2004~2008)	5	보건의료 정책심의 위원회	소관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시행	지역보건의료계획
	31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8852호]	사회보장장기 발전방향 (제1차 : 1999~2003)	5	사회보장 심의위원회	소관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시행	
	32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8868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제1차 : 2006~2010)	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연도별시행계획
	33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8852호]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제3차 : 2003~2007)	5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연도별시행계획
여성부 (2건)	34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8852호]	건강가정기본 계획 (제1차)	5	중앙건강 가정정책 위원회 (사·도 건강가정 위원회)		연도별 시도별 건강가정시행계획
	35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 2007.10.17 법률 8655호]	여성정책기본 계획 (제3차 : 2008~2012)	5	-	-	연도별시행계획
지식 경제부 (5건)	36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 2004.9.23 법률 7219호]	국가표준기본 계획 (제2차 : 2006~2010)	5	국가표준 심의회	-	매년 국가표준시행계획

소관 부처	연 번	기본법	기본계획	수립 기간	위원회	특징	기타 실천계획
지식 경제부 (5건)	37	에너지기본법 [제정 2006.3.3 법률 7860호]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03~2012)	5	국가에너지위원회	5년마다 20년이상 계획 수립 (2007~2030) 수립중	지역에너지계획 (사·도지역에너지계획은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수립·시행)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 (비상계획) 수립
			에너지기술개발계획 (2006-2015)	5		5년마다 20년이상 계획 수립 '에너지자원 기술개발계획' 으로 통용	연차별 실행계획
	38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 2007.5.25 법률 8486호]	전기통신기본 계획	-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정책 심의위원회 통신재난관리 위원회		기술진흥 시행계획 (지식경제부장 관)
	39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8852호]	전자거래촉진 계획	-	전자거래정책 위원회 전자거래분쟁 조정위원회		소비자보호시책 의 수립·시행
지식 경제부 (중소기업청) (1건)	40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8852호]	-	-	-	-	-
행정 안전부 (5건)	41	자원봉사활동기본 법 [제정 2005.8.4 법률 7669호]	자원봉사활동 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제1차 : 2008~2012)	5	자원봉사진흥 위원회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42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 2006.10.4 법률 8031호]	정보화촉진기 본계획 (제3차 : 2002~2006)	5	정보화추진위 원회	매년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보고	정보화촉진시행 계획 수립·시행
	4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8856호]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제1차 : 2005~2009)	5	중앙안전관리 위원회 지역안전관리 위원회(사·도 및 시·군·구)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	사·도안전관리 계획 시·군·구안전관 리계획 5년마다 시·군·구 재난예·경보체 계구축 종합계획

소관 부처	연 번	기본법	기본계획	수립 기간	위원회	특징	기타 실천계획
	4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정 2005.5.31 법률 7542호]	-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소위원회, 징계위원회)	-
	45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2005.12.29법률7797호]	규제정비종합 계획	1	규제개혁위원회	분과위원회	-
	46	행정조사기본법 [제정 2007.5.17 법률 8482호]	행정조사운영 계획	1	-	-	개별조사계획
행정 안전부 (소방방 재청) (1건)	4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8852호]	소방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5	-	2008년 시행예정	-
환경부 (1건)	48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2007.5.17 법률 8471호]	국가환경종합 계획 (2006~2015)	10	중앙환경보 전자문위원회	(05.7.4)환경 보전장기종합 계획 (96-05) 代	
			환경보전중기 종합계획 (3차:2003~2007)	5	시도 및 시군구 환경보전자 문위원회	국가환경종합 계획의 종합적, 체계적 추진을 위해	시·도환경보전계획 시·군·구환경보전 계획 특별종합대책
15부, 2처, 18청							

2) 부처별 일반 법률에 의한 계획 현황 및 주요내용

국가 중장기 정책기본 계획	소관 부처	수립 기간	관계법령	주요내용	특 징
친환경농업육성 계획 (2006-2010)	농림 수산 식품	5	친환경 농업육성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농업의 환경오염실태 및 개선대책 3.농약,비료,가축 사료첨가제 기타화학자재의 적절한 사용 및 감축 방안 4.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 5.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 방안 6.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7.농업의 공익적 기능증대 방안 8.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 9.육성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원의 조달 방안 10.기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부 령이 정하는 사항 	(2001-2005)
환경친화적산업 구조종합시책 (2003-2007)	지식 경제	5	환경친화적 산업 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산업구조의 현황과 전망 2.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을 위 한 목표의 설정 3.생산공정 개선·청정생산기술개발 등 환경 친화적 산업구조의 구축 방안 4.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을 위 한 환경설비산업의 육성 방안 5.환경경영의 촉진 방안 6.기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차 (1997-2002)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2004-2008)	지식 경제	5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대통령령이 정하는 성장유망산업의 지역별 집적 및 특화와 그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2.지역별 산업집적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입 지 및 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3.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4.산업이 낙후되거나 쇠퇴한 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산업집적 및 지역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에너지 이용합리화 기본계획 (2004-2008)	지식 경제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2.에너지이용 효율의 증대 3.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4.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에너지의 대체 계획 6.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7.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가격에서 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 7의2.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 	(04.9.21) 제3차 에너지이용 합리화기본계 획

국가 중장기 정책기본 계획	소관 부처	수립 기간	관계법령	주요내용	특 징
				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시행일 2004.07.01.]] 8.기타 에너지이용 합리화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2003-2012)	지식 경제	10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1.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간 2.신·재생 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목표 3.총 전력생산량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 3의2. 「에너지기본법」 제2조제10호의 규정 에 의한 온실가스의 배출저감 목표 4.기본계획의 추진방법 5.신·재생 에너지기술수준의 평가와 보급전망 및 기대효과 6.신·재생 에너지기술개발과 이용·보급에 관한 지원방안 7.신·재생 에너지분야 전문인력 양성계획 8.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산 업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력수급 기본계획 (2004-2017)	지식 경제	14	전기사업법	1.전력수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전력수급의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3.전기설비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4.전력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5.기타 전력수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04.12.23) 제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광역개발 사업계획	국토 해양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산업입지, 주거단지, 위락·휴식공간 등 광역개발권역 안의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2.교통시설, 용수공급시설, 하수도시설 등 광역적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배치에 관한 사항 3.광역쓰레기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4.문화·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5.자연경관보호, 생태계보전 및 녹지공간 확보 등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제1호내지 제5호의 사업시행을 위한 투자 소요 규모에 관한 사항 7.기타 광역개발권역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05.8.11) 중부내륙광역 권
수도권정비계획 (1997-2011)	국토 해양	15	수도권 정비 계획법	1.수도권 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인구 및 산업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 3.권역의 구분 및 권역별 정비에 관한 사항 4.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에	(05.12.9) 제2차 계획 (97~11) 조기종료,

국가 중장기 정책기본 계획	소관 부처	수립 기간	관계법령	주요내용	특 징
				관한 사항 5.광역적 교통시설, 상·하수도시설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6.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수도권 정비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제1호 내지 제7호의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수도권정비에 관한 사항	수립
광역도시계획	국토해양	2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 2.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설치에 관한 사항 4.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상호간의 기능연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2020 수도권, 부산권, 대전권, 대구권, 광주권
수도정비기본계획 (2004-2013)	국토해양	10	수도법	1.수도(전용수도는 제외한다)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수돗물의 중장기 수급에 관한 사항 3.광역상수원 개발에 관한 사항 4.수도공급구역에 관한 사항 5.상수원의 확보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 6.수도(전용수도는 제외한다)시설의 배치·구조 및 공급능력 7.수도사업의 재원조달 및 실시 순위 8.수도관의 현황조사 및 개량·교체에 관한 사항 9.중수도(中水道)의 개발·보급 10.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통합급수구역에 관한 사항 11.수돗물의 수질개선에 관한 사항 12.수도시설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3.제74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결과에 따라 수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	(04.6.30) 광역 상수공업용 수도정비 기본계획
주택종합계획 (2003-2012)	국토해양	10	주택법	1.주택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국민주택·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주택·택지의 수요·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주택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주거복지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택지원에 관한 사항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국가 중장기 정책기본 계획	소관 부처	수립 기간	관계법령	주요내용	특 징
				6.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의 조성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도로정비기본계획 (1998-2011) 수정 (2006-2010)	국토 해양	10	도로법	1.도로정비의 목표 및 방향 2.도로의 정비·관리계획 3.환경친화적 도로의 건설방안 4.소요재원의 조달 방안 5.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나 도로의 관리청이 체계적인 도로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05.4.26) 도로 정비기본계획 변경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2002-2011)	국토 해양	10	지하수법	1.지하수의 부존 특성 및 개발 가능량 2.지하수의 이용실태 3.지하수의 이용계획 4.지하수의 보전계획 4의2.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 5.기타 지하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	5년마다 필요시 수정 가능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국토 해양	5	철도산업발전기 본법	1.철도산업 육성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철도산업의 여건 및 동향전망에 관한 사항 3.철도시설의 투자·건설·유지보수 및 이를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4.각종 철도간의 연계수송 및 사업조정에 관한 사항 5.철도운영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철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철도기술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철도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차 (2005-2009)
제주국제자유 도시종합계획 (2002-2011)	국토 해양	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및국제자유 도시조성을위한 특별법	1.제주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세계평화의 섬지정 등 국제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 3.관광산업육성 및 관광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4.교육의 진흥 및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5.의료·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6.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7.첨단지식산업, 물류산업, 금융산업 등 지역 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8.토지·물 그 밖의 천연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9.해양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10.자연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1.지역사회의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	14일 이상 일반인 열람 규정

국가 중장기 정책기본 계획	소관 부처	수립 기간	관계법령	주요내용	특 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 사항 12. 향토문화의 보존과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13. 외국인의 생활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14. 도로·항만·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관한 사항 15. 수자원·전력 그 밖의 에너지개발에 관한 사항 16. 지역정보화의 기반구축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7. 개발사업(종합계획에의하여시행되는개발사업을말한다.이하같다)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업입지공급계획	국토해양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입지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입지 공급규모의 산정 방법 3. 시·도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공급전망 4.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각종지원에 관한 사항[[시행일2001·7·1]] 5. 그 밖에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수도권정비계획 등과 연동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 (2000-2019)	국토해양	20	교통체계효율화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통여건의 전망과 교통수요의 예측 2. 국가기간교통망구축의 목표와 단계별 추진 전략 3. 국가기간교통시설의 신설·확장 또는 정비사업(이하"국가기간교통시설개발사업"이라한다) 및 연계수송체계 4. 국가기간교통시설개발사업에 필요한 자원 확보의 기본방향과 투자의 개략적인 우선 순위 5. 교통수단의 개발·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술과 교통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술(이하"교통기술"이라한다)의 활용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2004-2008)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2001-2011)	국토해양	10	공유수면 매립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립예정지의 위치와 규모 2.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 3. 매립의 필요성과 매립방법에 관한 사항 4. 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 중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과 그 대책에 관한 사항 5.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 전·후의 경제성 비교에 관한 사항 6.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차 계획 시행 중
해양환경	국토	5	해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시책방향 	해양

국가 중장기 정책기본 계획	소관 부처	수립 기간	관계법령	주요내용	특 징
보전 종합대책 (2006-2010)	해양		오염 방지법	2.해양오염의 현황 및 장래예측 3.해양오염의 방지대책 4.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기술개발 5.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6.기타 해양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환경관리(법) 종합계획
연안 정비계획 (2000-2009)	국토 해양	10	연안 정비법	1.연안육역의 범위 2.계획수립대상지역 3.연안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방향 4.연안환경의 보전,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 등 연안의 바람직한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 연안에서의 행위제한 또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관계 행정기관간에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정책 등이 상충될 경우 그 조정에 관한 사항 7.연안정비사업의 기본방향 8.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광개발 기본계획 (2002-2011)	문화 체육 관광	10	관광 진흥법	1.전국의 관광여건과 관광동향(動向)에 관한 사항 2.전국의 관광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3.관광자원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4.관광권역(觀光圈域)의 설정에 관한 사항 5.관광권역별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제4차 울산권 관광개발 계획 (2007-2011)
환경기술 개발 종합계획 (2003-2007)	환경	5	환경 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을 위한 장기종합계획에 기초한 환경규제수준의 현황과 장기전망[시행일 2006.7.1] 2.환경기술의 단계별 개발목표와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 3.환경기술의 경쟁력강화 등 환경산업의 고도화 촉진 4.환경기술의 보급 및 실용화 촉진 5.정부가 추진하는 환경기술개발에 관한 사업의 연도별 투자 및 추진계획 6.환경기술의 도입 및 이전 7.학교·학술단체·연구기관 등에 대한 환경기술의 연구지원 8.환경기술정보의 수집·분류·가공 및 보급 9.기타 환경기술의 개발 및 환경산업의 육성	
자연환경 보전	환경	10	환경 보전법	1.자연환경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보전목	미협의 진행

국가 중장기 정책기본 계획	소관 부처	수립 기간	관계법령	주요내용	특 징
기본계획 (2006-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 설정에 관한 사항 3.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4.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할 주요자연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5.자연경관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6.생태축의 구축·추진에 관한 사항 7.생태통로설치, 훼손지복원 등 생태계복원을 위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8.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종합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9.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토양보전 기본계획 (2006-2015)	환경	10	토양환경보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토양보전에 관한 시책 방향 2.토양오염의 현황·진행상황 및 장래 예측 3.토양오염의 방지에 관한 사항 4.오염토양의 정화 및 복원에 관한 사항 5.기타 토양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유해 화학물질 관리 기본계획 (2001-2005)	환경	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유해화학물질 관리정책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2.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3.유해화학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 4.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시행에 드는 재원조달 방안 5.유해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계획 6.그 밖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폐기물관리 종합계획 (2002-2011)	환경	10	폐기물 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관할구역의 인구, 주거형태, 산업구조·분포 및 지리적환경 등에 관한 개황(概況) 2.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과 장래의 발생 예상량 3.폐기물의 처리현황과 향후 처리계획 4.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 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 5.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현황과 향후 설치계획 6.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그 장비·용기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7.재원의 확보 계획 	제2차 (02-11)
자원재활용 기본계획 (2003-2007)	환경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산업현황 등 자원재활용 여건에 관한 사항 2.자원재활용 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제3차 (03-07)

국가 중장기 정책기본 계획	소관 부처	수립 기간	관계법령	주요내용	특 징
				3.자원재활용 목표를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4.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 하는 사항	
국가균형 발전계획 (2004-2008)	정부	5	국가균형발전특 별법	1.국가균형발전의 목표에 관한 사항 2.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 항 3.지역전략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지방대학의 육성 및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에 관한 사항 5.지역의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6.지역의 정보화촉진 및 정보통신진흥에 관 한 사항 7.지역의 문화·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 8.지역금융활성화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관한 사항 9.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촉진에 관한 사항 10.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11.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9.낙후지역개 발 10.공공기관 지방이전
국가기간 교통망계획	국토 해양	20	교통 체계 효율화법	1.교통여건의 전망과 교통수요의 예측 2.국가기간교통망구축의 목표와 단계별 추진 전략 3.국가기간교통시설의 신설·확장 또는 정비 사업(이하 "국가기간교통시설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연계수송체계 4.국가기간교통시설개발사업에 필요한 자원 확보의 기본방향과 투자의 개략적인 우선 순위 5.교통수단의 개발·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 술과 교통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 술(이하 "교통기술"이라 한다)의 활용 6.종합적인 교통정책방향 7.기타 교통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광역교통 기본계획 (20년), 시행계획 (5년)
댐건설 장기계획 (2001-2011)	국토 해양	10	댐건설및주변지 역지원등에관한 법률	1.댐건설의 기본방침 2.각종 용수의 수급 전망 3.수계별 댐건설계획(농업용수댐은 저수량이 1천만 톤 이상인 것에 한한다) 4.재원조달계획 5.입지선정기준 6.댐건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 기 위한 방안 7.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5년마다 타당성여부 검토

국가 중장기 정책기본 계획	소관 부처	수립 기간	관계법령	주요내용	특 징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006-2015)	국토 해양	10	철도 건설법	1.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2.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3.소요재원의 조달방안 4.환경친화적인 철도의 건설방안 5.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체계적인 철도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철도 산업발전 기본계획 (2006~2010)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종합계획 (매년1031)	행정 안전	1	농어촌 주택 개량 촉진법	1.마을 토지의 이용에 관한 사항 2.주택개량 및 부엌·화장실의 개량에 관한 사항 3.도로·상하수도·하수처리시설 등 공공기반시설, 복지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생산물 집하시설 등 소득증대 기여시설, 녹지공간의 설치 및 마을조경계획 등 마을정비에 관한 사항 4.개선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추산액 및 그 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5.개선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자에 관한 사항	매년 수립
원자력진흥 종합계획 (2007-2011)	교육 과학 기술	5	원자력법	1.원자력이용 및 안전관리에 관한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2.원자력이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부문별 과제 및 그 추진에 관한 사항 4.소요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5.기타 원자력이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차 (2002~2006)

3) 계획 부문별 목차구성

(1) 국토·환경·도시 부문

- 국가환경종합계획
-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 제5차 산림기본계획
- 친환경농업 육성5개년 계획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구분	목차	
국가환경 종합계획 (2006~2015) 환경부	제1편 총론 - 제1장 계획수립의 배경과 위상 - 제2장 환경비전 21 성과 평가 - 제3장 21세기 향후 전망 - 제4장 계획의 기조와 추진전략	제2편 환경관리 핵심전략과 추진방안 - 제1장 지속가능하고 활력있는 자연생태 보전 - 제2장 자연자원 보전과 효율적 이용 - 제3장 안전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 - 제4장 환경을 지키는 경제, 경제를 살리는 환경 - 제5장 환경 형평성 구현기반 구축 - 제6장 동북아 환경보전 및 환경협력 강화 - 제7장 지구적 지속가능한 발전의 선도
	제3편 국토환경관리의 기본구상과 추진방안 - 제1장 국토환경 실태평가와 기본방향 - 제2장 3대 국토생태축 : 한반도 통합생태 망 보존·관리 - 제3장 한강수도권 - 제4장 금강충청권 - 제5장 영산강호남권 - 제6장 낙동강영남권 - 제7장 태백강원권	제4편 계획의 추진기반 강화방안 - 제1장 환경정책의 조정 및 집행체계의 강화 - 제2장 정책 및 사업의 환경·경제성 평가체계 정 비 - 제3장 환경예산제도의 효율화와 투자재원의 안정 화 - 제4장 환경 거버넌스 체계의 강화 - 제5장 환경교육과 환경정보관리의 강화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2006~2015) 환경부	제1장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의의 및 평가 I. 계획의 수립 배경 II. 계획의 성격과 역할 III. 계획의 체계와 주요내용 IV.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 및 평가	제2장 자연환경보전의 여건과 전망 I. 우리나라 자연환경 현황 II. 자연환경의 여건 및 전망
	제3장 자연환경보전정책의 추진방향 I. 정책방향의 기조 및 목표 II. 실천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III. 중점추진과제별 추진방안	제4장 계획의 실현방안 I. 주요 투자계획안 II. 투자자원 조달방안 III. 시행성과 평가
제5차 산림기본계획 (2008~2017) 산림청	제1부 산림기본계획의 개요 - 제1장 산림기본계획의 근거와 내용 - 제2장 제4차 산림기본계획의 성과와 반성 제2부 여건변화와 전망 제3부 비전과 전략	제4부 전략별 세부계획 - 제1장 다기능 산림자원의 육성과 통합관리 - 제2장 자원순환형 산림산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 - 제3장 국토환경자원으로서 산림의 보전·관리 - 제4장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녹색공간 및 서비스 확충 - 제5장 자원확보와 지구산림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 제5부 지원 및 실행체계 강화 제6부 투융자 방향 및 소요 판단

구분	목차	
친환경농업 육성 5년계획 (2006~2010) 농림부 / 친환경 농업정책과	제 I 편 총론 - 제1장 계획 수립의 배경과 근거 - 제2장 농업·농촌 여건과 농업환경 변화 - 제3장 친환경농업의 국내외 추진 현황 - 제4장 1차 육성 5개년('01~'05)계획 평가 제 II 편 친환경농업 육성 비전과 추진전략 - 제1장 친환경농업 비전 - 제2장 친환경농업 육성 목표와 방향 - 제3장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 전략 - 제4장 2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추진체계	제III편 친환경농업 육성 세부추진계획 제IV편 친환경농업 육성 지표 - 제1장 면적과 농가 수 전망 - 제2장 분야별 육성 지표 - 제3장 2010 친환경농업 전망 제 V 편 투자 소요 및 추진 평가 계획 - 제1장 투융자 계획 - 제2장 분야별 투융자 계획 - 제3장 계획 추진 및 평가체계
제주국제 자유도시 종합계획 (2002~2011) 제주도	제 1편 계획의 기초 - 제1장 계획의 개요 - 제2장 지역 현황 및 여건 분석 - 제3장 관련계획 검토 및 평가	제 2편 기본 구상 - 제1장 발전 잠재력과 도민인식 - 제2장 계획지표의 설정과 전망 - 제3장 발전 목표와 기본전략
	제 3편 국제자유도시 추진전략 - 제1장 세계를 포용하는 국제교류도시 - 제2장 일류를 지향하는 문화관광도시 - 제3장 미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도시 - 제4장 경제를 선도하는 청정산업도시 - 제5장 사람을 존중하는 복지중심도시 - 제6장 환경을 개선하는 녹색정주도시 - 제7장 자연을 중시하는 환경생태도시	제 4편 계획의 집행·관리 - 제1장 계획의 추진 체계 - 제2장 재정 및 투자계획 - 제3장 개발사업의 주민참여 - 제4장 지방행정 체계 정비

(2) 기술-정보-건설 부문

-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안)
- 제3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 2006 건설기술진흥시행계획
- 2007년도 주택종합계획
-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안)
-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안)

구분	목차	
제2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안) (2007. 10) 과학기술부 / 한국과학기술기 획평가원	제1부 국가과학기술 비전 I.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의 배경과 의의 II. 국내외 과학기술 환경변화와 과제 III. 국가과학기술 비전, 목표 및 정책 방향 IV. 중점 추진 과제 제2부 국가전략 과학기술 개발	제3부 과학기술기반 강화 I. 창의적 지식과 과학기술 역량제고를 위한 기초 연구 진흥 II. 혁신주도형 사회를 선도하는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 III. 연구개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 하부구조 고도화 제4부 과학기술혁신 시스템 선진화 제5부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기술 제6부 기본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고려사항
제3차 건설기술 진흥기본계획 (2003. 1) 건설교통부	I. 계획의 개요 - 1. 계획의 성격 - 2. 계획 기간 - 3. 주요 내용 - 4. 추진 경위 II. 건설기술 동향 및 당면문제	III. 제3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목표 - 1. 건설기술 비전 및 목표 - 2. 7대 분야별 중점추진과제 IV. 부문별 추진계획 V. 계획의 집행 및 추진전략 - 1. 투자재원의 확보 - 2.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2006 건설기술진흥 시행계획 (제3차 건설기술진흥기 본계획) (2006. 4) 건설교통부	I. 수립배경 - 1. 법적 근거 및 성격 - 2. 추진 경위 - 3. 제3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II. 제3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세부추진계획 - 1. 건설생산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 2.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경쟁력 강화 - 3. 건설기술인력의 전문화 - 4. 건설정보화 확산 - 5. 친환경 건설기술 정착 - 6. 건설안전체계 강화 - 7. 건설교통 R&D 투자확대 및 효율성 제고	III. 2006년 중점 추진 방향 - 1. 건설생산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 2.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경쟁력 강화 - 3. 건설기술인력의 전문화 - 4. 건설정보화 확산 - 5. 친환경 건설기술 정착 - 6. 건설안전체계 강화 - 7. 건설교통 R&D 투자확대 및 효율성 제고 IV. 계획 추진의 모니터링 및 관리
2007년도 주택종합계획 (2007. 3) 건설교통부	I. 전년도 주요정책 및 성과 II. 금년도 주택시장 전망 III. 주택건설 및 지원계획 IV. 주거복지 지원계획 V. 주거환경 지원계획 VI. 금년도 중점추진과제	

구분	목차	
제3차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안) (2002~2006) 2004. 6 정보통신부	I. 수립배경 - 1. 정보화 추진의 성과와 반성 - 2. 대내외 환경변화와 새로운 도전 II. 비전 - 1. 목표 - 2. 기본방향 - 3. 우리나라 지식정보사회의 미래상 III. 국가사회 정보화촉진 - 1. 국민의 정보활용능력 제고 - 2. 산업부문 정보화 촉진 - 3. 공공부문 정보화 촉진	IV. 정보인프라의 지속적 고도화 - 1. 지식정보사회형 법체제로의 전환 - 2. 사이버 공간의 안전성·신뢰성 보장 - 3.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 4. IT산업의 전략적 육성 V. 글로벌 정보사회를 향한 국제협력 강화 - 1.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도약 - 2. 국제협력의 주도적 추진 - 3. IT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강화 VI. 추진전략
제2차 국가표준 기본계획(안) (2006~2010) 산업자원부장관	I.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배경 II. 우리나라 표준제도의 현 좌표 - 1. 국가표준제도 운영체계 - 2. 제1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운영 성과 평가 III. 국가표준정책의 목표 및 추진전략 - 1. 기본방향 - 2. 정책목표 체계 - 3. 추진전략	IV. 중점 추진과제 - 1. 국가표준체계의 선진화 - 2. 표준기술 하부구조 강화 - 3. 국제표준화 대응역량 강화 - 4. 민간표준화 활성화 V. 기대효과 VI.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실천 및 관리

(3) 물류-SOC 부문

- 제1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
- 국가물류기본계획
-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 제1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구분	목차	
제1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2006~2010) 건설교통부	I. 계획의 개요 II.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III. 철도산업의 여건변화와 전망 IV. 계획의 목표 및 추진과제 V. 부문별 추진계획 VI.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방안 VII. 계획의 집행 및 관리 VIII. 철도산업의 미래상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006~2015) 건설교통부	I. 계획의 개요 - 1. 계획의 배경 - 2. 계획의 성격 - 3. 계획의 주요내용 - 4. 계획의 범위 및 수립경위 II. 현황 및 문제점 III. 철도투자 여건 변화 및 전망 - 1.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및 전망 - 2. 교통여건의 변화 및 전망 - 3. 외국의 교통정책 동향 - 4. 교통 수요 전망	IV. 계획의 목표 및 추진과제 V.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 1. 투자계획 수립의 기본 방향 - 2. 투자우선순위 선정방법 - 3. 투자계획 조정 - 4. 부문별 사업계획 VI. 투자규모산정 및 재원확보방안 VII. 계획의 사후관리 VIII. 철도의 미래상
국가기간 교통망계획 (2000~2019) 2007. 11 (제1차 수정) 건설교통부	I. 수정계획 수립의 개요 II.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추진성과 ('00~' 06 년) III. 우리의 교통현황 및 문제점 IV. 교통여건 변화 및 전망 V.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VI. 과제별 추진계획 VII. 투자규모 산정 및 재원확보 방안 VIII. 계획의 집행 및 관리 IX. 21세기 교통의 미래상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정계획 (2006~2010) 2005. 12 건설교통부	- 제1장 수정계획 수립 개요 - 제2장 기존 도로정비기본계획(1998~2004) - 제3장 도로시설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 제4장 도로정비기본계획의 목표 및 세부추 진전략	- 제5장 도로정비기본계획의 세부 추진계획 - 제6장 환경과 인간이 조화된 국민참여형 도 로건설 - 제7장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 제8장 도로정비기본계획의 효과
국가물류 기본계획 (2001~2020) 건설교통부	I. 국가물류기본계획의 개요 II. 국내·외 물류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III. 물류환경의 여건변화 및 전망 IV. 21세기 물류의 비전과 전망 V.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전략	

구분	목차	
	VI. 제1차 중기 국가물류기본계획 (2001년~2005년) VII. 국가물류기본계획의 관리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2002~2011) 대한민국정부	제 I 편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기본방향 - 제1장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개요 - 제2장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의 평가 - 제3장 에너지부문의 여건 변화 및 전망 - 제4장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방향	VI. 과제별 추진계획 VII. 투자규모 산정 및 재원확보 방안 VIII. 계획의 집행 및 관리 IX. 21세기 교통의 미래상
제2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2002~2011) 대한민국정부	제 II 편 정책목표별 기본계획 제1장 지속가능형 제2장 시장주도형 제3장 기술주도형 제4장 대외개방형 제 III 편 에너지원별 기본계획	
제1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2005~2009) 자연·인적재난 중앙안전관리 위원회	제1편 총 칙 - 제1장 21세기 재난환경 여건변화와 전망 ● 제1절 국제적 여건변화와 전망 ● 제2절 우리나라의 여건변화와 전망 - 제2장 재난의 정의 및 책무 - 제3장 안전관리계획의 개요 ● 제1절 계획의 의의 ● 제2절 계획수립 절차 및 분야 - 제4장 국가재난관리체제	- 제5장 제1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추진계 획 ● 제1절 계획의 기초 ● 제2절 계획의 기본방향 ● 제3절 재난관리 기반구축 ● 제4절 계획의 추진전략 ● 제5절 재난관리대책 제2편 유형별 재난관리대책 제3편 해외 재난관리대책 제4편 기타 중요재난관리대책 제5편 행 정 사 항

(4) 인적자원·문화 등 인문학 부문

-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 중기 고용정책기본계획
-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
-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자원봉사활동진흥을 위한 제1차 국가기본계획
-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
- 국어발전기본계획

구분	목차	
제2차 국가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2006~2010)	I. 인적자원개발 성과와 반성 II. 인적자원개발 현주소 III. 미래 환경 전망과 시사점	IV. 국가인적자원개발 비전과 정책기조 V. 제2차 기본계획의 정책과제 VI. 재정 투자 및 법령 정비계획 VII. 향후 추진일정
중기 고용정책 기본계획(안) (2004~2008) 2003. 10 노동부	I. 노동시장 분석 - 1.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 - 2. 노동시장의 주요특징 II. 노동시장 전망 및 정책과제	III. 계획의 체제 및 추진계획 - 1. 계획의 체제 - 2. 추진계획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 (2006~2010)	I. 추진배경 II. 여성인력 활용 및 정책 현황	III. 기본방향 IV. 정책과제 V. 추진전략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2008~2012) 2007. 12	I. 추진배경 - 1.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의의 - 2. 제1,2차 기본계획 기간의 성과 II. 여성정책의 새로운 환경과 대응 - 1. 여성정책의 새로운 환경 - 2. 주요 정책 과제 - 3. 정책 추진 체계 III. 정책 과제 IV. 정책과제 소관부처	
제1차 건강가정 기본계획 (2006~2010) 함께가는가족 2010 관계부처 합동	I. 가족정책 추진배경 - 1. 가족의 변화 - 2. 가족정책의 새로운 요구 - 3. 기존정책에 대한 평가 II.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 1. 가족정책의 방향 - 2. 정책비전·목표	

구분	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 주요 지표 전망 III. 주요 정책 과제 	
제1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2006. 7) 새로마지플랜 2010 관계부처 합동	I. 기본계획 수립배경 및 그간의 정책평가 - 1.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 2. 저출산·고령화 현황 및 파급영향 - 3. 저출산 원인 및 그간의 정책평가 II. 정책 추진방향 및 외국사례	III. 분야별 계획 - 1.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2.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 3.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 - 4.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회분위기 조성 및 정책효과성 제고 IV.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1차 국가기본계획 (2008~2012)	I. 자원봉사 활동 여건 및 성과 - 1. 국내외 자원봉사의 동향 - 2. 그간의 추진성과 II. 자원봉사활동의 현 주소 - 1. SWOT 분석 - 2.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	III. 자원봉사활동 비전과 기초 - 1. 비전 및 목표 - 2. 정책기초 - 3. 추진전략 IV. 기본계획의 정책과제 V. 미래전망과 시사점
국가보훈 발전기본계획 (2006. 10) 국가보훈처	I. 계획수립의 의의 - 1. 계획수립 배경 - 2. 계획의 성격 II. 국가보훈의 그간 추진성과와 전망 - 1. 성과와 평가 - 2. 보훈의 여건변화와 보훈정책 방향 III. 보훈정책 추진과제	
국어발전 기본계획 (2006. 12) 국립국어원	I. 국어발전 기본계획의 의의와 구성 내용 II. 국어 환경의 분석과 진단 III. 국어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IV. 3대 중점 추진 과제 V. 10대 추진 과제 VI. 추진 조직 체계 VII. 연차별 재정 투자 계획	